

2022 서울특별시의회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서울시 한강공원 체육시설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 연구

2022. 9.



서울특별시의회
Seoul Metropolitan Council

제출문

서울특별시의회 귀하

이 보고서를 「서울시 한강공원 체육시설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2.09.23

- 연구기관 : 한국산업경제연구소
- 책임연구원 : 곽원규 (한국산업경제연구소, 부소장)
- 연구원 : 이세구 (한국산업경제연구소, 소장)
장재웅 (한국산업경제연구소, 책임연구원)
- 보조연구원 : 장현철 (한국산업경제연구소, 이사)
이성민 (한국산업경제연구소, 주임연구원)
- 보조원 : 박재준 (한국산업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
- 자문위원 : 김현철 (강남대학교, 교수)
안석수 (서울시 녹색시민위원)
정수봉 (명지대학교, 교수)
최진우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전문위원)

(요약문)

서울시 한강공원 체육시설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 연구

곽 원 규

요 약

한강공원은 축구, 야구, 배구, 농구, 족구, 수영, 테니스, 인라인스케이트, 수상레저스포츠, 파크골프 등 다양한 체육시설이 구비되어 시민의 스포츠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한강 변 특색을 살린 습지생태공원으로 운영되거나 시민의 여가활동 공간인 문화시설로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 중 한강공원 내 체육시설의 경우 여타 공공 전문·생활체육시설과는 달리 공원 내 시설로 구분되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운영됨에 따라 체육시설로서의 전문적인 관리 감독 범위 안에 있지 않다. 그래서 서울시 관내 체육시설과 공원 내 체육시설간 관리 운영 주체가 상이함에 따라 효율적인 시예산분배, 시민의 체육시설 이용만족도 향상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체육시설 운영 기본방향 등을 위한 정책의 어려움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11개 한강공원 지구 내 체육시설 운영실태를 분석하고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효율적인 공원 내 체육시설 운영을 위한 활성화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방법은 문헌연구와 전문가 F.G.I로 구성하여, 문헌연구는 서울시 한강공원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현황 등을 조사 분석하고 해외 선진사례와 우수 국내사례의 체육시설에 대하여 시사점을 도출하며 관련 통계자료는 2022년 현재 발표된 자료에 한정하여 조사 분석한다. 그리고 전문가 F.G.I 조사는 학계, 산업계, 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강공원 내 체육시설 활성화 정책 수립을 구체화하고자 한다.

먼저, 한강공원 내 체육시설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한강공원은 총 11개 공원으로 강북이 뚝섬, 이촌, 망원, 난지지구로 4개 지구이며 강남은 광나루, 잠실, 잠원, 반포, 여의도, 양화, 강서의 7개 지구로 관리되고 있으며, 축구장 12곳, 테니스장 5곳, 배구장 11곳, 농구장 28곳, 족구장 13곳, 수영장 4곳, 야구장 5곳, 게이트볼장 11곳, 인라인스케이트광장 4곳, 스케이트보드장 1곳, 배드민턴장 15곳, 파크골프장 1곳, 씨름장 2곳, 기타 12곳 포함 전체 124곳의 체육시설이 있다. 최근 5개년(2016년~2020년) 동안 11개 한강공원 내 체육시설을 이용한 시민은 연평균 843만여명으로 2019년 코로나 사태로 감소하였다가 규제 완화 시점부터 다시 증가하여 연평균 0.01%가 증가하였으며 서울시민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은 뚝섬공원으로 연평균

216만여명이 이용하고 있고, 광나루공원은 연평균 119만여명이 찾아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반면, 난지공원은 가장 적은 인원인 연평균 21만여명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근린공원 내 체육시설과 비교 분석한 결과, 근린공원 내 설치된 체육시설은 거주 주민들의 접근 편리성과 기본 운동을 수행할 수 있는 필수 공원시설물로 체육시설 유치 거리가 짧고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규격이 정해져 있는 체육시설의 설치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간단한 운동기구인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야외운동기구는 개인 운동과 훈련시설로 도심의 많은 근린공원에 조성되어 지자체별로 관리·운영되고 있으나 전문적인 형태의 야외운동기구의 수는 미미한 실정이다. 최근 건강에 관한 국민적 관심과 정책으로 생활체육이 중요시되고 있어 근린공원 내의 야외운동기구와 한강공원 내의 야외운동기구를 차별화 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내외 선진사례분석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싱가폴의 리버파크는 업무·문화·관광시설을 활용한 지역 랜드마크로 조성하고 스페인의 빌바오는 역사·문화환경을 활용한 경관 랜드마크로 조성하였다. 구미시의 낙동강체육공원은 자연·생태환경을 활용한 친수공간 조성하였으며 부산시의 온천천시민공원은 도심속 자연환경을 활용한 친수공간 조성하고 삼락강변체육공원 도심속 여가·체육·생태환경의 조화를 이룬 친수공간으로 조성하였다. 시사점으로는 수변을 편하게 걸을 수 있는 산책로와 자연 친화적인 공간을 조성함으로 문화 보행과 친화 거리 및 친환경 체육시설로 구성함으로 시민들에게는 쉼터를 제공하고 관광객에게는 좋은 볼거리를 제공토록 하고 계획단계부터 주민과 기업, 행정이 함께하는 거버넌스체계를 도입하여 미래 지향적인 실제적 공간활용을 검토하며 구체적으로는 활용가능한 체육시설의 도입과 배치, 안전과 관리 및 운영의 실행계획을 구상하였다는 것과 수경녹지축과 연결되는 생태거점 및 각종 문화·체육시설과 여가시설로 어루러지는 친환경 복합체육여가공간으로 구성하였다는 것이다.

셋째, 한강공원관련 빅데이터분석 내용은 다음과 같다.

언론에 비취진 한강공원 뉴스기사를 공공뉴스 아카이브인 빅카인즈를 통해 빅데이터 기법으로 분석한 결과, 장소 개체명중 전 기간에 걸쳐 '여의도'가 한강공원에서 가장 중심적인 위상과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관 중에서는 '서울시'의 가중치가 높게 나타났고, 연관 키워드로는 '코로나 19', '공무원' 등이 분석되었다.

넷째, 전문가F.G.I조사와 분석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강공원 내 체육시설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설관리 분야의 '사용요금의 적정성'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도출되었으며 다음으로 교통 접근성 개선, 한강공원별 프로그램 구성, 체육단체를 통한 프로그램 개발, 아동·청소년 바우처 사업과 연계도 중요 요인으로 평가되었다. 이외에 시설관리분야에서는 시설이용의 형평성, 시설의 전문화, 시설의 질적 개

선, 인력 및 행정체계 관리 효율화, 시설운영에 대한 행정지원, 편의시설, 시설관리상태가 중요하다고 인식되었다. 프로그램 분야에서는 고령자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과 시설 및 기구별 건강·체력측정평가 시스템 도입, 웨어러블 장비를 통한 프로그램도입, 노인바우처 맞춤형 운동서비스 도입, 스포츠바우처 사업과 연계 등이 중요 요인으로 평가되었다. 체육시설의 올바른 이용과 운동방법을 위한 체육지도 분야에서는 체육지도자의 운동관리, 전문성, 리더십이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한강공원 내 체육시설 활성화를 위해 ‘한강공원 체육시설 활성화를 통한 건강의 시작, 활력 중심 한강’으로 미션을 설정하고 비전은 ‘건강한 체육복지시설 한강공원’으로 ‘자연과 건강, 치유와 행복’, ‘참여와 실천, 체계적 운동’, ‘지역연계 고도화’는 비전목표로 하여 ‘체육복지 강화’, ‘한강공원 지구별 체육시설의 연계활용 강화’, ‘체육활동 저변확대’, ‘스포츠 시스템 정착’, ‘효율적 관리·운영방안’ 등을 전략방향으로 수립하였다.

다섯째, 한강공원 내 체육시설 활성화 방안은 다음과 같다.

권역별 활성화를 위해 7개 체육시설권역을 설정하였다. 친환경 생태·휴식권역인 ‘강서~난지권’은 생태환경 개선과 맑은 물 회복, 친환경 이용에 맞게 ‘친환경체육 활성화 권역’으로 설정하고, 수변 창조문화권역인 ‘합정~당산권’은 녹색교통 접근성 강화와 보행 접근성 개선, 주변과의 녹지연계가 강화되는 권역으로 ‘스포츠바우처, 체육지도자 활성화 권역’으로, 국제적 수변업무 활동권역인 ‘여의도~용산권’은 다양한 수변 활동 특화와 역사·문화자원의 복원과 연계되는 ‘스포츠클럽, IoT 체육시설 활성화 권역’으로, 국가적 문화·여가권역인 ‘반포~한남권’은 녹색교통 접근성 강화와 보행 접근성 개선, 주변과의 녹지연계가 강화되는 권역으로 ‘스포츠바우처, 체육지도자 활성화 권역’으로, 수변조망 활동권역인 ‘압구정~성수권’은 ‘스포츠바우처, 체육지도자 활성화 권역’으로, 국제교류 및 스포츠 관광권역인 ‘잠실·청담~자양권’은 ‘스포츠클럽, IoT 체육시설 활성화 권역’으로, 한강 역사문화·생태권역인 ‘암사~광장권’은 ‘친환경체육 활성화 권역’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 초고령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해 신체적 약자인 고령층의 운동생활 습관화가 지속될 수 있도록 도보권 내로의 야외운동기구 재배치와 맞춤형 돌봄형 운동서비스 도입과 계절별, 지구별 국가가 지정한 공인인증기관과의 출장소를 설치하여 체력측정과 체력평가, 운동처방, 체력인증을 병행하는 장소로 활용한 빅데이터를 구축 한다.

또한, 사물인터넷(IoT)적용 체육시설 도입을 통해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친절한 안내, 작동 및 사용법 등에 대한 정보를 QR코드나 NFC 태그(근거리 무선통신)를 활용 한다. 특히, 육상 및 수상 안전예보 시스템을 도입하여 건강환 생활체육장소 구축하고 직장인 및 청소년 방과 후 수업(체육)등 지원을 위한 건강 생활체조교실, 맞춤형운동 프로그램 도입을 도입하여 활성화 한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강공원 내 체육시설 활성화방안의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강공원 내 체육시설은 그 자체가 시민의 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준비된 공원시설이 아니라는 것이다. 현재 한강공원 체육시설은 연간 수백만이 이용하는 시설이 되었다. 이제는 국가나 서울시 중심에서의 체육복지 차원이 아닌 개인중심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체육활동은 서울시민 누구나가 행복하게 누려야 하는 보편적 권리이기 때문이다. 한강공원 내 체육시설이 도시공원의 체육시설이 아닌 전문체육시설로서 선진 생활체육 환경조성을 위한 시설, 프로그램, 생활체육 지도자의 육성이 되는 공간이 되어야 함으로 심도있는 체육시설 재배치 등 논의가 필요하다.

둘째, 65세 이상의 고령인구 증가와 청년 일자리 감소, 소득불균형으로 인한 세대 간의 갈등 해소를 위한 생활권 중심의 체육활동 장소로 특화시켜야 한다.

셋째, 야외운동기구의 설치기준은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의 안전확인 대상 제품을 의미하고 있다. 야외운동기구는 토지에 부착하여 설치되는 건물 이외의 구조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에 대하여 명확하게 그 기준을 제시하고 야외운동기구의 안전문제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안전점검과 관련해서도 야외운동기구 설치장소가 어디가에 따라 소관부서가 달라진다. 한강공원과 지자체가 관리하는 장소 모두 관련 법에서 야외운동기구를 따로 체육시설로 하여 관리할 수 없는 법의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이다. 전문적인 시설을 전문적으로 관리하지 못하면 노후되고 낙후되어 방치될 수 있으므로 관련 조례의 개정으로 인해 명확한 관리 주체를 구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넷째, 한강공원 내 체육시설은 규격시설과 야외운동기구로 구분하여 총괄 운영·관리 할 수 있는 기본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 11개 한강공원은 지구별 특성에 따라 계획되어 체육시설이 설치·관리되고 있다. 그러나 계획 및 관리측면에서는 전체적인 구상의 부재속에서 지구별로 관리되고 있어 지구별, 지역특성 및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시설이 분류되고 각 지구별 특성이 유기적으로 결합되는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한강공원 내 체육시설물에 대한 다양한 계층의 유인화를 위해 스포츠바우처사업과 연계될 필요가 있으며 IT강국에 걸맞는 운동기구의 사물인터넷(IoT) 적용으로 관련 산업 육성에 이바지하며 나아가 수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도 병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한강공원 내 체육시설 활성화를 위해서 서울시의회는 거버넌스체계 구축과 체육시설 안전관리 등을 위한 설치 및 운영관리를 위한 체육시설 및 야외운동기구 설치 심의위원회의 구성에 대해 조례로 입법화해야하는 필요성이 제기된다.

서울시의회는 다각적인 노력으로 한강공원 내 체육시설이 질적으로 향상되어 '건강의 시작, 활력 중심 한강'을 만들어 가야 한다.

목 차

I. 서론	1
1. 연구배경 및 목적	1
가. 연구배경	1
나. 연구목적	3
2. 연구범위	4
가. 연구범위	4
3. 연구방법	6
가. 문헌연구	6
나. 서울시 한강공원 체육시설 활성화 방안 F.G.I조사	6
4. 연구 추진전략과 중점과제	7
II. 현황 및 여건분석	9
1. 한강의 특성	9
가. 역사적 특성	9
나. 문화적 특성	13
2. 한강공원 체육시설의 특성	14
가. 발전적 특성	14
나. 구성적 특성	16
3. 관련계획 및 법규검토	19
가. 관련계획 검토	19
나. 관련법규 검토	32
4. 유사사례 검토	59
가. 해외사례	59

나. 국내사례 62

III. 한강공원 체육시설 현황 73

1. 운영 및 관리현황 73

가. 운영현황 73

나. 관리현황 77

2. 사업추진체계 84

가. 한강사업본부 84

나. 서울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87

다. 한강공원 도입가능 체육시설 89

3. 한강공원 내 체육시설 이용현황 및 만족도 조사 90

가. 이용현황 90

나. 만족도 조사 91

4. 근린공원 내 체육시설과의 비교분석 97

5. SWOT 분석 98

가. 강점(Strength)을 이용하여 기회(Opportunity)를 살리는 전략 99

나. 위협(Threat)을 피해 강점(Strength)을 부각할 수 있는 전략 99

다. 약점(Weakness)을 보완하여 위협(Threat)을 최소화하는 전략 100

라. 약점(Weakness)을 보완하여 기회(Opportunity)를 찾는 전략 100

IV. 한강공원 내 체육시설 활성화 전략 및 방안 101

1. 전문가 F.G.I 조사 101

가. 분석 프로세스 101

나. 조사내용 101

2. 활성화 기본구상 및 전략설정 102

가. 미션 102

나. 비전 103

다. 비전목표	103
라. 전략방향	103
3. 활성화 방안	104
가. 권역별 활성화 구상	104
나. 초고령화 적극적 대응	106
다. 체력측정을 통한 빅데이터 구축	109
라. 사물인터넷(IoT)적용 체육시설 도입	110
마. 육상 및 수상 안전예보 시스템도입	111
바. 야간체육활동 프로그램 도입	112
V. 연구종합과 시사점	113
1. 연구종합	113
가. 한강의 특성	113
나. 한강공원 체육시설의 특성	113
다. 유사사례 검토	114
라. 한강공원관련 빅데이터 분석	115
마. 체육시설현황	115
바. 체육시설 활성화 전략 및 방향설정	117
사. 활성화 방안	117
2. 관련규정 및 제도정비방안	118
가. 공원관리와 체육시설관리의 일원화	118
나. 일상생활 밀착형 시설 공급으로 체육시설 이용자 사각지대 해소	119
다. 초고령화시대를 준비하는 적극적 대응	119
라. 스포츠바우처사업을 통한 체육지도자의 체력측정 시스템 도입	119
마. 체육시설 활용정보, 사물인터넷(IoT)연계 강화를 통한 이용접근성 향상	120
바. 사물인터넷(IoT) 야외운동기구 보급위한 시설확충방안 마련	120
사. 야간체육활동 및 체육시설 이용 프로그램 도입	120
아. 뚝섬공원 수상스포츠 시설 민간이용 전환	121
자. 관련 법 및 제도에 따른 조례 제·개정으로 통합 관리운영	121
3. 시사점 및 향후과제	123

가. 한강공원 내 체육시설 현황	123
나. 근린공원 생활체육시설과의 비교	124
다. 한강공원 내 체육시설 활성화방안	125

4. 서울시의회의 역할	126
--------------------	-----

〈표 차례〉

〈표 2-1〉 한강공원 관련 주요 정책과 사업연표	16
〈표 2-2〉 관련계획 검토 항목	19
〈표 2-3〉 2030 스포츠비전의 10대 핵심과제	25
〈표 2-4〉 관련계획 검토 항목	27
〈표 2-5〉 한강변 7대 수변활동권역 특화방향	30
〈표 2-6〉 한강공원별 세부 추진전략	31
〈표 2-7〉 관련 법률 검토	33
〈표 2-8〉 공통분야_하천법	34
〈표 2-9〉 공원운영_청원경찰법	35
〈표 2-10〉 공원운영수상레저_선박법	36
〈표 2-11〉 공원운영수상레저_선박안전법	37
〈표 2-12〉 유선 및 도선 사업법	38
〈표 2-13〉 수상레저안전법	39
〈표 2-14〉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40
〈표 2-1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41
〈표 2-1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42
〈표 2-17〉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43
〈표 2-18〉 전기사업법	44
〈표 2-19〉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45
〈표 2-20〉 주차장법	45
〈표 2-21〉 물환경보전법	46
〈표 2-22〉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47
〈표 2-23〉 야생동식물보호법	48
〈표 2-24〉 자연환경보전법	49
〈표 2-2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50
〈표 2-26〉 자연공원법 관련 내용	51

〈표 2-27〉 스포츠클럽법	52
〈표 2-28〉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53
〈표 2-29〉 서울특별시 야외운동기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54
〈표 2-30〉 국토기본법	55
〈표 2-3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6
〈표 2-32〉 건축법	57
〈표 2-33〉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58
〈표 2-34〉 문화재보호법	59
〈표 2-35〉 연도별 키워드 추출건수	67
〈표 3-1〉 한강사업본부 인력현황	75
〈표 3-2〉 한강사업본부 최근 5개년 세입현황	75
〈표 3-3〉 한강사업본부 최근 5개년 세출현황	76
〈표 3-4〉 한강공원 최근 5개년 접근시설 현황	78
〈표 3-5〉 한강공원 최근 5개년 편의시설 현황	78
〈표 3-6〉 한강공원 최근 5개년 체육시설 현황	79
〈표 3-7〉 한강공원 최근 5개년 수상시설 현황	80
〈표 3-8〉 한강사업본부 공공체육시설 총괄현황	84
〈표 3-9〉 한강사업본부의 사업추진방향	86
〈표 3-10〉 서울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직영시설	88
〈표 3-11〉 서울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위탁시설	89
〈표 3-12〉 서울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기타시설	89
〈표 3-13〉 최근 5개년 체육시설 이용현황	90
〈표 3-14〉 최근 월별 시설이용 현황	91
〈표 3-15〉 한강공원별 체육시설 구비정도에 대한 만족도	93
〈표 3-16〉 한강공원별 체육시설 관리상태에 대한 만족도	94
〈표 3-17〉 한강공원별 대중교통 접근성에 대한 만족도	94
〈표 3-18〉 한강공원별 도보이용 편리성에 대한 만족도	95
〈표 3-19〉 한강공원별 시설물 안전성에 대한 만족도	95
〈표 3-20〉 한강공원별 종합 만족도	96
〈표 3-21〉 한강공원과 근린공원의 체육시설 설치 비교	97
〈표 4-1〉 전문가 조사항목 및 조사결과	102
〈표 4-2〉 한강양안 통합 7대권역 체육활성화 방안	106
〈표 4-3〉 생활권 주변 체육시설 이용여부 연령별 비교	107

〈그림 차례〉

〈그림 1-1〉 과업 수행체계	8
〈그림 2-1〉 한강공원의 여가활동과 공간계획 발달과정	15
〈그림 2-2〉 그림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비전, 목표, 전략	20
〈그림 2-3〉 국민생활체육진흥종합계획 비전과 목표	21
〈그림 2-4〉 국민생활체육진흥기본계획의 비전 및 추진전략	22
〈그림 2-5〉 2030 스포츠비전의 정책 및 방향	24
〈그림 2-6〉 030서울플랜 공간구조 방향	26
〈그림 2-7〉 한강 7개 권역 구상도	28
〈그림 2-8〉 한강변관리기본계획 관리원칙	28
〈그림 2-9〉 한강변 7대 수변활동권역	29
〈그림 2-10〉 한강공원 보전 및 관리 기본계획 기초	30
〈그림 2-11〉 한강공원별 보전 및 관리계획	31
〈그림 2-12〉 한강공원 보전 및 관리 기본계획의 공간적 범위	32
〈그림 2-13〉 한강공원 보전 및 관리 기본계획 총괄	32
〈그림 2-14〉 수변 문화지구(싱카폴 리버)	60
〈그림 2-15〉 스페인 빌바오 변화 전과 변화 후	61
〈그림 2-16〉 동경 리버시티21 변화 전과 변화 후	62
〈그림 2-17〉 구미-낙동강체육공원 체육시설	63
〈그림 2-18〉 부산-온천천 시민공원 체육시설	63
〈그림 2-19〉 부산-삼락강변체육공원 주요시설	64
〈그림 2-20〉 언론에 비친 한강공원 체육시설관련 뉴스 데이터 관계성 분석	66
〈그림 2-21〉 연도별 한강관련 뉴스기사 키워드를 통해 본 추이변화와 주요정책	67
〈그림 2-22〉 연도별 뉴스 기사 추출 단어 빈도분석	68
〈그림 2-23〉 연도별 뉴스 기사 추출 단어 연관어 분석	69
〈그림 2-24〉 소셜미디어 빅데이터 정보 수집량	71
〈그림 2-25〉 한강체육공원 관련 포털 단어 빈도분석	71
〈그림 2-26〉 한강체육공원 관련 포털 단어 워드클라우드 분석	72
〈그림 3-1〉 한강사업본부 조직도	74
〈그림 3-2〉 한강사업본부 최근 5개년 평균 세입현황	76
〈그림 3-3〉 한강사업본부 최근 5개년 평균 세출현황	77
〈그림 3-4〉 한강사업본부 한강관리 구역	77
〈그림 3-5〉 한강사업본부 최근 5개년 체육시설 현황	79
〈그림 3-6〉 광나루한강공원 체육시설 현황	80
〈그림 3-7〉 잠실한강공원 체육시설 현황	80

〈그림 3-8〉	뚝섬한강공원 체육시설 현황	81
〈그림 3-9〉	잠원한강공원 체육시설 현황	81
〈그림 3-10〉	반포한강공원 체육시설 현황	82
〈그림 3-11〉	이촌한강공원 체육시설 현황	82
〈그림 3-12〉	여의도한강공원 체육시설 현황	82
〈그림 3-13〉	양화한강공원 체육시설 현황	83
〈그림 3-14〉	망원한강공원 체육시설 현황	83
〈그림 3-15〉	난지한강공원 체육시설 현황	83
〈그림 3-16〉	강서한강공원 체육시설 현황	84
〈그림 3-17〉	서울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인력현황	87
〈그림 3-18〉	서울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과별 업무분장	88
〈그림 3-19〉	한강공원 만족도 평균 및 공원별 만족도	96
〈그림 3-20〉	한강공원별 종합만족도	96
〈그림 3-21〉	한강공원과 근린공원의 주요 야외운동기구	98
〈그림 3-22〉	한강공원 체육시설 활성화를 위한 SWOT 분석	99
〈그림 4-1〉	F.G.I 참석자 프로파일	101
〈그림 4-2〉	비전 및 목표설정	104
〈그림 4-3〉	한강공원 권역별 활성화 구상	106
〈그림 4-4〉	고령자가 주로 참여하는 체육활동 이용시설	108
〈그림 4-5〉	고령자가 주로 참여하는 체육활동 이동수단	108
〈그림 4-6〉	고령자의 규칙적 체육활동 참여율(주2회 이상)	108
〈그림 4-7〉	체육시설 이용에 따른 전문 체력측정 시스템 도입	109
〈그림 4-8〉	체육활동 지원 및 운동정보 제공	110
〈그림 4-9〉	사물인터넷(IoT) 적용 체육시설 예시	111
〈그림 4-10〉	육상 및 수상안전 예시	111
〈그림 4-11〉	야간체육활동 프로그램 예시	112
〈참고문헌〉		127

I.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가. 연구배경

- 1960년대부터 시작된 경제개발계획과 더불어 수도 서울의 인구가 폭증하며, 한강유역은 대변화를 맞이(조운승, 2021)¹⁾하였다.
- 도심으로의 인구집중과 정치 경제적 상황은 강남지역에 대규모 택지개발과 교량, 강변도로 등 교통체계의 변화를 가져왔고, 치수와 여가공간에 대한 필요로 한강개발이 추진되면서 한강 둔치에 근대적 공원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다.
- 서울의 한강은 서울의 광진구 광장동과 강동구 천호동을 잇는 광진교부터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과 영등포구 양평동을 연결하는 양화대교 사이의 양안과 선유도가 포함된 12개의 한강공원이 구성되어 있으며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의 3도심 계획에 따라 3대 권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 제1차 한강종합개발(1968년~1970년)로 시작되어 제2차 한강종합개발(1982년~1986년)까지 건립된 한강공원은 확충된 수변공원으로 여의도, 난지, 강서, 잠실, 이촌, 난지, 망원, 한강, 반포, 양화, 광나루 등 11개 지구로 구분되어 각 지구별 환경을 특화시켜 운영하고 있다.
- 일반적으로 공원이란 국가나 지방 공공단체가 공중의 보건·휴양·놀이 등을 위하여 마련한 정원이나 유원지, 동산 등의 사회시설을 말하는데 국내에서는 법적 근거에 따라 크게 자연공원과 도시공원으로 구분(이병희, 2021)²⁾하고 있다.
- 도시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공원법'이라고 한다.) 제2조의3에서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된 곳으로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과 동법 제30조 및 제38조의2에 따라 '기반시설'과 '공공시설'로 분류되어 있다.
- 한강공원은 서울시민의 운동, 산책 및 자연 감상, 휴식, 휴양, 레저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이용되어 위락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수자원을 통해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있어 생태적 보전가치도 크다고 할 수 있다.

1) 조운승, 민선지방자치시대 한강공원의 장소적 담론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p.2, 2021

2) 이병희, 도시공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평가기준 마련연구(근린공원을 대상으로), 박사학위 논문, p.1, 2021

- 이렇듯 한강공원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공원시설은 '도시공원법' 제3조(공원시설의 종류)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어 야구장, 농구장, 수영장, 골프장 등 운동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된다.
- 다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체육시설법'이라고 한다.) 별표1에서는 무도학원·무도장 및 자동차경주장은 제외하고, 사격장은 실내사격장에 한하며, 골프장은 6홀 이하의 규모에 한하여 허용하고 있으며 총 46개의 운동종목을 지정하여 시설형태로 한정하고 있다.
- 체육시설은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면서 커뮤니티를 연계함으로써 다양한 콘텐츠 및 문화·경제적인 연계에 따라 스포츠산업에 있어서 중요한 지표로써 자리매김하고 있는 운동에 필요한 시설, 조형물, 물건을 인위적으로 설치한 것이므로 단순한 구조물부터 체육활동에 필요한 용기구까지 포함(김사엽, 2004)³⁾한다고 볼 수 있다.
- 체육시설에 대한 법률적 관점 개념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에서는 운동경기 또는 야외활동 등 신체활동을 통한 여가선용을 목적으로 이용되는 시설로 정의되고 '체육시설법' 제2조제1호에서는 '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로 정의되며,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한 가상의 운동경기 환경에서 실제 운동경기를 하는 것처럼 체험하는 시설을 포함한다고 명시하였다. 다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물은 법에서 제외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의 체육활동이란 '운동경기 또는 야외활동 등 신체활동과 가상의 운동경기 체험시설 등을 통하여 건강한 신체와 건강한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즐기는 광의의 개념'으로 사용한다.
- 이를 바탕으로 체육시설은 물리적, 공간적 의미는 물론 목적에 부합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존재하여야 하며, 각 프로그램에 맞는 시설의 규격과 지도 그리고 운영관리가 전제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홍기혁, 2021)⁴⁾.
- 여기서 '체육시설법'에 의거하여 시설의 설치 주체와 운영 주체에 따라 크게 공공체육시설과 민간체육시설로 구분하는 것이 확인된다.
- 공공체육시설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을 하거나 위탁하여 체육활동을 하기 위한 공간을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김용동, 2010)⁵⁾.
- 즉, 지역주민들의 체육활동 및 여가생활이 증진 될 수 있도록 '체육시설법' 제4

3) 김사엽, 스포츠 시설관리운영론, 21세기 교육사, 22면, 2004.

4) 홍기혁, 민간체육시설의 안전에 관한 법·정책적 규제 문제와 현실 탐구, 한양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7면, 2021.

5) 김용동, 공공체육시설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방안, 대전발전연구원, 12면, 2010.

조에 따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체육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관리하는 시설이라 할 수 있다.

- ‘체육시설법’ 제2장에서는 시설 이용자의 이용목적 및 이용자에 따라 공공체육시설을 제5조 전문체육시설, 제6조 생활체육시설, 제7조 직장체육시설로 구분하고 있다.
- 생활체육시설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체육시설이다.
- 이렇듯 도시공원 내 공공체육시설에 분류되는 생활체육시설이 혼재됨에 따라 해당 체육시설의 안전성 및 기능이 지속적으로 유지가능하도록 유지 및 관리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나. 연구목적

- 1983년 한강 종합개발 사업에 따라 건립된 한강공원은 여의도, 난지, 강서, 잠실, 이촌 등 11개 지구로 나뉘어 각 지구별 특색을 고려하여 운영중에 있다.
- 한강공원은 축구, 야구, 배구, 농구, 족구, 수영, 테니스, 인라인스케이트, 수상 레저스포츠, 파크골프 등 다양한 체육시설이 구비되어 시민의 스포츠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 또한 한강 변 특색을 살린 습지생태공원으로 운영되거나 시민의 여가활동 공간인 문화시설로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 그 중 한강공원 내 체육시설의 경우 여타 공공 전문·생활 체육시설과는 달리 공원 내 시설로 구분되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운영됨에 따라 체육시설로서의 전문적인 관리 감독 범위 안에 있지 않다.
- 그래서 서울시 관내 체육시설과 공원 내 체육시설간 관리 운영 주체가 상이함에 따라 효율적인 시 예산분배, 시민의 체육시설 이용만족도 향상,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체육시설 운영 기본방향 등을 위한 정책의 어려움이 있다.
- 이에 본 연구에서는 11개 한강공원 지구 내 체육시설 운영실태를 분석하고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효율적인 공원 내 체육시설 운영을 위한 활성화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 이를위해 법·제도를 통한 한강공원 내 체육시설 현황을 파악하고, 운영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그리고 국내·외 대표 프로그램 및 우수 운영사례를 조사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한강 변 생태환경을 고려한 체육시설 조성전략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마지막으로 근린공원 내 체육시설과의 비교 분석을 통한 운영 특성화 전략을 도출하여 정책 지원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범위

가. 연구범위

1) 문헌연구

가) 한강공원 체육시설 현황 조사

- 11개 지구 한강공원 내 체육시설 기본 현황 및 체육시설 운영 실태는 관련 기관인 ‘한강사업본부’의 제출자료에 의해 조사·분석을 시행한다.
- 관리운영 실태 제시 : 한강사업본부 및 서울시 주무부서의 담당자를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통해 실질적인 한강공원 체육시설의 실태파악과 문제점을 도출한다.
- 통계분석: ‘서울시 한강시민공원 이용 만족도 통계’ 등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한강공원 체육시설 이용현황을 파악한다.

나) 공공체육시설의 정책적 고찰

- 도시수변공간의 시대적 관점 고찰
- 민선시정기를 통한 한강의 변천과정 고찰
- 빅데이터 한강 체육시설의 관계도 분석을 통한 현재의 한강 현황과 특성을 분석
- 빅데이터 한강 체육시설 의 키워드를 통한 트렌드 추이변화와 정책분석
- 빅데이터 한강 체육시설 의 연관어 클라우드 분석
- 체육시설의 정의 및 성격 고찰
- 공공체육시설의 정의 및 성격 고찰
- 공공체육시설의 정책과제 고찰
- 공공체육시설 운영효율화 고찰

다) 선진사례 연구

① 해외 수변공원사례 조사

- 해외 테마별 수변공원을 조사 연구한다.
- 해외의 도시공원내 체육시설 운영관리 제도를 조사한다.
- 일본·싱가폴·스페인을 포함하여 3개국 이상의 해외 수변공원 조사를 통한 서울 한강공원의 체육시설 활성화 방안의 시사점을 도출한다.

② 국내 수변공원사례 조사

-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수변공원 체육시설을 조사하여 서울시의 한강공원 체육시설 활성화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 서울 한강공원을 관리하는 '한강사업본부'의 체육시설 운영·관리 직제 및 업무와 '서울시 관광체육국' 산하 체육시설 운영·관리 직제의 주무 담당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타 지자체와의 도시공원 내 체육시설 운영·관리 형태를 비교함으로써 효율적인 한강공원 체육시설 활성화방안을 모색한다.

라) 한강공원 내 체육시설의 활성화를 위한 전략 방안 도출

- 한강공원 운영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안을 제시한다.
- 한강 변 생태환경을 고려한 체육시설 조성 전략을 제시한다.
- 근린공원 내 체육시설과의 비교 분석을 통한 운영 특성화 전략을 제시한다.

2) 전문가회의 및 F.G.I 조사(전문가의 의견조사)

- 조사목적은 한강공원 체육시설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다.
- 조사대상은 서울시 거주 관련 전문가(학계, 산업계, 관련 공무원)이다.
- 조사방법은 인터뷰 이용 설문조사 (최소 5명 이상)이다.

가) 한강공원 체육시설 인식조사

- 서울시 한강공원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을 조사한다.

- 서울시 한강공원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다.
- 서울시 한강공원 체육시설과 생태 및 환경관련 인식을 조사한다.

나) 한강공원 체육시설의 미래 발전에 대한 인식

- 서울시 한강공원 체육시설 전략방향 인식을 조사한다.
- 서울시 한강공원 체육시설의 지구별 선호시설, 선호지역에 대한 발전방향을 조사한다.
- 서울시 한강공원 체육시설의 4차산업 접목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다.

다) 한강공원 체육시설 활성화를 위해 필요로 하는 정책에 대한 인식

- 서울시의 한강공원 체육시설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을 조사 분석한다.
- 서울시의 한강공원 체육시설 운영·관리 정책을 조사 분석한다.
- 서울시 한강공원 생태 및 환경보존 정책방안을 조사 분석한다.
- 서울시 한강공원 체육시설 이용 취약계층 지원정책방안을 조사 분석한다.

3. 연구방법

가. 문헌연구

- 서울시 한강공원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현황에 한정하여 조사 분석한다.
- 해외 선진사례와 국내사례의 시사점을 적용하는데 서울시 한강공원 체육시설에 한정한다.
- 서울시 한강공원 체육시설관련 통계자료는 2022년 현재 발표된 자료에 한정하여 조사 분석한다.
- 서울시 한강공원 체육시설관련 계획도 최신 발표된 자료에 한정하여 조사 분석한다.

나. 서울시 한강공원 체육시설 활성화 방안 F.G.I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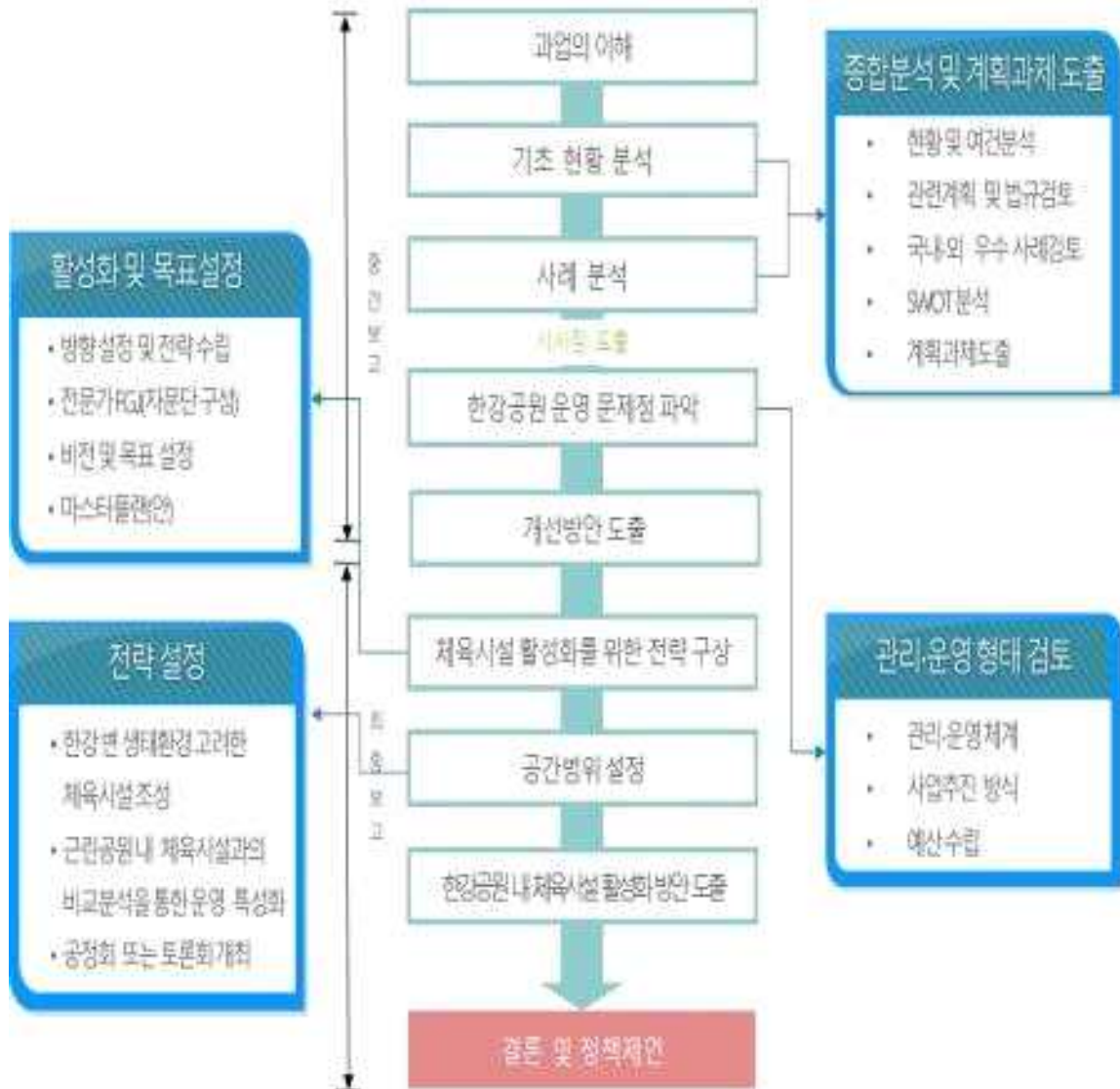
- 서울시 한강공원 체육시설 활성화 방안 F.G.I조사는 학계, 산업계, 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약 10명 내외로 조사한다.

- 서울시 한강공원 체육시설 활성화 방안 F.G.I조사는 한강공원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 운영과 관리에 대한 인식, 체육시설과 연관된 생태 및 환경관련 인식 등에 국한하여 조사를 수행한다.
- 서울시 한강공원 체육시설 활성화를 위한 미래 발전에 대한 인식조사는 체육시설 전략방향, 지구별 선호시설, 선호지역의 발전방향, 4차산업 접목에 대한 인식조사로 제한하여 조사를 수행한다.
- 서울시 한강공원 체육시설 활성화를 위한 정책에 대한 인식조사는 크게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 체육시설 운영·관리 정책, 생태 및 환경보존 정책, 취약계층 이용 지원정책으로 제한한다.

4. 연구 추진전략과 중점과제

- 본 연구과제의 과업수행체계는 다음 <그림 1-1>과 같다.
- 서울시 한강공원 체육시설 활성화를 위한 관리·운영 형태는 ‘한강사업본부’와 ‘서울시 관광체육국’의 한강공원 체육시설 관련 주무부서를 대상으로 한강공원 체육시설 관리·운영 체계와 사업추진 방식, 예산수립 등 3가지를 검토한다.
- 서울시 한강공원 체육시설 활성화 방안 연구의 중점과제 도출을 위해 서울시 한강공원의 현황 및 여건분석, 관련계획 및 법규검토, 국내·외 우수사례 조사, SWOT분석을 통해 계획과제를 도출한다.
- 서울시 한강공원 체육시설 활성화 방안은 전문가 설문조사와 회의를 통하여 활성화 방향설정 및 전략을 수립하고 비전 및 목표를 설정하여 마스터플랜(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서울시 한강공원 체육시설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은 공청회 또는 토론회를 통하여 문제점 도출 및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그림 3-1〉 과업 수행체계



II. 현황 및 여건분석

- 본 장에서는 한강의 특성, 한강공원 체육시설의 특성을 살펴보고 한강과 관련된 계획 및 법규, 유사사례 검토, 한강공원 관련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한강공원 체육시설 활성화를 위한 주요 시사점을 도출한다.

1. 한강의 특성

가. 역사적 특성

- 한강의 역사적 특성은 서울시의 한강공원 조성과 함께 한강공원을 관리하고 있는 한강사업본부 홈페이지의 내용을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1) 선사시대의 한강

- 한강유역에서 구석기, 신석기시대 유물이 각지에서 발견되고 있으나 강동구 암사동 선사유적지는 신석기 문화를 대표하는 것이며 그들의 식생활을 엿볼 수 있는 자료로서 토기, 석기 또는 골각기 등이 발견되고 있다.
- 이들은 구릉이나 야산에서 집중적인 채집활동을 벌였을 것으로 생각되며 원초적인 어로기법인 낚시어법이나 자돌어법이 일찍부터 성행하여 창 또는 작살을 이용하여 물고기를 찔러 잡기도 하였다.
- 그러나 이러한 자돌어법, 낚시어법이 개인적인 단독작업으로서 어획량이 많지 않는데 비해 어망을 이용한 고기잡이는 채집어법과 더불어 집단적 공동작업을 통하여 대량어획을 가능하게 하는 어로기법인데 그러한 증거로서 '어망추'가 여러 유적에서 다수 발견되고 있다. 그들은 바로 이러한 공동작업과 대량생산을 통하여 잉여 생산물을 축적하여 나갔으며 그것은 한편으로 환경 적응도를 높여 생존가능성을 증대시켰다.
- 그에 따라 인구가 증가되었으며 취락이 팽창하였고 안정된 정착생활을 통하여 문화가 더욱 발전하게 되었다. 이후 청동기시대의 발달된 문화를 거쳐 한강유역에서 고대국가가 발달하게 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다.

2) 청동기 시대의 한강

- 지리적으로 한반도 중앙의 대부분을 포함하고 있는 한강유역의 청동기시대는

한반도 동북지방(함경 남북도)의 민무늬토기, 구멍무늬토기, 붉은간토기문화, 서북지방(평안남도, 황해도)의 팽이토기문화의 영향을 받아 민무늬토기문화 및 청동기문화가 성립되었으며 이들 양지역의 문화는 자체적인 발전과 혼합을 통해 한강유역의 독특한 청동기문화를 이룩하고 한편으로는 한반도 남부지방으로 문화를 전파시켜 주는 중간 매개지역의 역할도 담당하였다.

- 한반도에서는 민무늬토기 시대에 이르러 신석기 이래 농경이 더욱 발전된 것으로 보여진다.
- 유적지 움집터에서 탄화된 쌀, 보리, 수수, 기장이 출토된 것으로 미루어 잡곡 농사가 한반도 전역에 일반화되었음은 물론, 벼농사도 서북지방과 남한지역에 상당히 일반화되었을 것이라는 추측을 할 수 있다.
- 한강유역의 벼농사는 서북지방 팽이토기 주민의 남하와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들 남하한 팽이토기인들이 재래의 동북계 민무늬토기인과 접촉 융화하면서 한강유역, 나아가서는 남한지역에까지 벼농사가 일반화 된 것으로 생각된다.

3) 삼국시대의 한강

- 삼국시대에 접어들면서 한강유역의 특질이 나라의 흥망성쇠와 지대한 관계를 갖고 있었다. 그 이유는 한강유역이 반도의 중앙부를 축으로 관류하는 큰 강인 만큼 한반도의 중심무대지가 되었기 때문이다.
- 또한 군사, 경제, 사회, 외교적 제조건을 구비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이 지역이 삼국쟁패의 주요 과녁이 되었고 한강유역을 점유한 국가는 영토적 확장과 더불어 국가발전의 강력한 터전을 마련한 결과가 되었다.
- 결국 고구려, 백제, 신라가 한강유역을 번갈아 지배했던 사실을 전 역사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한강유역을 점유하면 나라가 번영하였고 상실하면 쇠퇴하였다.

4) 고려시대의 한강

- 송악의 호족 출신인 왕건은 918년 왕이 되어 고려를 건국하고 935년 후삼국을 통일하였다. 문종 21년에 한강유역의 중요성이 인식되어 당시 양주(현 서울)를 남경으로 승격시켜 개경 및 서경과 함께 3대 요지가 되었다.
- 이후 고려말 1382년(우왕 8년) 9월에 한양천도를 단행하였다. 그러나 왜군의 창궐, 대명관계의 복잡성등 정치, 사회적 불안이 고조되고 풍수지리설이 성행하자 '도읍이 불길하다' 하여 이듬해 2월에 개성으로 돌아왔다.
- 고려왕조 마지막왕인 공양왕때(1390년 9월) 다시 한양천도를 단행하였으나

한양천도가 있는 후 큰 비바람과 천동번개가 일어나고, 인축이 동사했으며 신도의 문화부에 큰 범이 뛰어들어 사람을 물어가는 등 불길한 일이 자주 발생하자 1391년 2월에 다시 개성으로 도읍을 옮기게 되었다. 이리하여 고려로서의 한양천도 문제는 종말이 맺어지고 그 완전한 실현은 1394년(조선태조 3년) 이성계에 의해 이루어졌다.

5) 조선시대의 한강

- 태조 이성계는 즉위후 불과 16일만인 1392년 8월 3일에 도평의사사에게 한양천도를 명하여 태조3년(1394년) 10월 25일(음력) 천도를 실현하였다. 한양천도의 배경은 다음 세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첫째, 주지하는 바와 같이 풍수지리설에 영향을 받은 바가 컸다는 점을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즉 개경의 지덕이 쇠퇴한 땅이라 망국의 수도를 하루라도 빨리 피하려는 미신적 사상인 음양지리(풍수)적 사상에 영향받아 천도를 서둘렀다는 지적이다.
- 둘째, 태조 이성계 자신이 왕위획득과 관련되는 행위에 대한 가책과 개성의 왕씨를 중심으로 한 구가세족의 반발에 대처할 필요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정치적 정황은 태조 이성계로 하여금 천도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게 하였다.
- 셋째, 한강을 끼고 한양의 인문지리적 위치의 중요성을 들 수 있다. 한 왕조가 도읍지를 선택할 때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우선 지리적인 위치를 고려하고 있음을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한양은 지세가 훌륭하고 군사적인 방위에 있어서 천연의 요새지였다.
- 이러한 지세의 훌륭함은 일찍이 이증환도 그의 「택리지」에서 한양의 진신인 삼각산이 수려하고 맑기가 나라 안에서는 사산중의 하나라고 예찬을 아끼지 않았다.
- 또한, 전근대사회에 있어서 국가재정의 운용을 위한 수입은 거의 농업생산물에 의지하고 있었다. 농업경제가 사회의 기반을 이루고 상태에서는 현물을 조세로 수취하였다. 따라서 조정에서는 세곡의 운송에 큰 관심을 가지게 마련이었다.
- 그러나 도로망을 포함하여 육상교통 수단이 별로 발달하지 못했던 까닭에 조세는 주로 대량수송이 용이한 조운을 통해 운송되었다. 그러므로 도읍지로서의 위치는 수륙의 교통이 편리한 곳에 있어야 함은 필수적이였다.
- 따라서 이러한 지리적 위치 등을 고려하여 선택한 한강을 끼고 있는 한양은 천도때부터 조운의 발전은 필연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 전국의 세곡이 조운을 통하여 한강에 모였고, 한양에 거주하는 지주층이 지방농

장에서 거두어 들인 소작도 대부분 선박으로 이곳에 운반되었다. 도성내 일반 생활품도 그 양이 많은 것은 대부분은 선박으로 한강을 통하여 공급되었다.

- 그리고 조선후기에 이르러 세제개혁과 아울러 대동법이 실시됨에 따라 한강은 더욱 중요성을 더하게 되었으며, 호남을 비롯하여 충청도 등지에서 수납되는 대동미는 조운선을 통하여 한강으로 수송되었다.
- 따라서 한강은 백관의 녹봉과 국가재원을 충당시켜 보급로가 되었다.

6) 근세의 한강

- 한강변에 입주했던 최초의 외국인은 프랑스인 신부들이었는데 1887년 현 원효로 4가 1번지의 6,500평의 땅을 구입하여 신학교를 건축하고 거주하기 시작하였다.
- 한강에 증기선이 최초로 운항한 것은 1888년이었는데, 그 뒤 1890년 독일계와 미국계의 증기선이 취항하게 되었고, 이어 중국인 거상 '동순태'가 100톤짜리 증기선을 들여와 용산과 인천 사이를 취항하기 이르렀다.
- 1899년 착공한 한강철교공사는 다음해인 1900년에 완공,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철교가 놓여졌다. 그리고 길이 26마일의 서울역에서 인천을 잇는 경인 철도가 1900년에 개통되었다.
- 그리고 한강에 최초의 인도교가 가설된 것은 한일 합방 6년뒤인 1916년이었고, 새 인도교는 1934년에 착공하여 1936년에 완공되었는데 폭 20미터에 길이는 10,005미터였다.
- 1970년 4월 하중도 육지화 공사 이후 한강 지도.한강에 큰 홍수가 있었던 때는 1912년과 1920년, 1925년의 세차례였다.
- 그 가운데 가장 큰 피해를 낸 것은 1925년(을축)대홍수로 7월 15일에서 18일까지 4일간에 걸쳐 400에서 500밀리미터의 높은 강수량을 보였다. 노도와 같은 홍수물은 한강 제방을 무너뜨리고 순식간에 용산, 남대문 앞까지 일대를 물바다로 만들었다.
- 현재 올림픽 주경기장이 위치한 잠실동과 신천동은 부리도(浮里島)라 불리는 하중도(河中島)였다. 이 섬은 오랜 세월 동안 흐름이 약간씩 북서류하게 됨으로써 생겨난 섬이다.
- 1970년 4월, 북쪽 하도를 넓게 하고 남쪽의 하천을 폐쇄함으로써 하중도를 육지화하는 대공사가 시작되었다. 이 대역사는 100만 평이 넘는 공유 수면 매립공사가 주축이었으며 이를 중심으로 그 주변 340만평의 광역 구획정리사업이 동시에 실시되어 1975년에 마무리되었다.
- 이 개발로 인해 남류하던 흐름이 폐쇄되면서 만들어진 호수가 하적호(河跡湖)인 석촌호수이다.

나. 문화적 특성⁶⁾

1) 여가와 체육활동장소 특성

- 한국레저산업연구소가 2004년 한강시민공원 이용자 현황을 토대로 2003년의 한강공원의 레저스포츠 가치를 조사한 결과, 한강공원의 연간 경제적 가치가 무려 1,108억원에 달한다고 보도하였다(경향신문, 2005년 5월 15일자).
- 또한 2007년 한강 사업본부는 12개 한강공원에 한강스포츠를 즐기기 위해 찾은 연 이용객 인원이 5,900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하였다.
- 이는 1958년 2만여명(경향신문, 1958), 1987년 330만여 명(서울시정개발연구원, 1996)과 비교해 볼 때 급격한 증가 수치로서 1984년부터 진행되어 온 주5일 근무제 산업계 확대 정책과 최근의 GNI 2만불 시대로의 이동, 1986년부터 지속되어 온 메가스포츠 계열의 대규모 스포츠행사 유치와 그로 인하여 발생된 팬 문화 형성, 외모지상주의, 글로벌 스타급 선수의 출현, 스포츠산업법의 제정으로 인한 스포츠의 산업화 등에 맞물려 사회적으로 삶의 질을 높이려고 하는 여가 증대 현상과 그 궤를 같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서울권역의 한강변 특히, 한강본류에서 일어나고 있는 최근의 이러한 일련의 두드러진 현상은 한강 중심의 서울이라는 한 지역사회의 다양해진 문화적 욕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전술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전체 인구수보다 많은 연간 이용 인구가 매년 한강을 찾고 있는 것은 그만큼 한강이 복잡한 현대 도시생활에서 도시인들의 삶의 질을 풍성하게 할 수 있는 일상의 공간으로서 소중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사회·문화적 활동장소 특성

- 사회학적으로 문화를 사용할 때 문화는 특정 사회의 구성원들이나 집단들의 생활방식을 가리킨다. 여기에는 복장, 결혼관습, 가족생활, 직업유형, 종교의식과 여가 활동이 포함된다.
- 문화는 개념적으로 사회와 구분될 수 있지만 이 개념들은 서로 밀접하게 얽혀 있다. 사회학자들이 문화를 언급할 때 그들은 인간사회의 학습하는 측면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다.
- 문화의 이런 요소들은 그 사회의 구성원들에 의해 공유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협력과 소통이 이루어진다. 그것들은 한 개인이 특정한 사회 속에서 자신의 삶

6) 이형목, 한강스포츠의 인지적, 정의적, 실천적 정체성 탐색, 한국체육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23-24, 2011.

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공통의 배경(context)을 형성한다.

- 문화는 문화의 내용을 형성하는 신념, 사고, 가치 등과 같은 무형의 측면과 문화의 내용을 재현하는 대상, 상징, 기술 등과 같은 유형의 측면으로 이루어진다.
- 문화는 한 사회의 가치와 규범을 영속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문화는 그것의 창조와 변화에 중요한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 사회의 지배적인 가치와 규범을 광범위하게 거부하는 집단들의 문화형식인 하위문화와 반문화(countercultures)는 지배적인 문화의 대안을 제시하는 시각을 고무시킬 수 있다.
- 사회 운동이나 같은 라이프스타일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집단은 사회 내에서 변화를 추동하는 강력한 힘이다.
- 이런 식으로 하위문화는 사람들에게 표현의 자유를 허락하고 자신들의 의견, 희망, 신념에 따라 행동할 수 있도록 한다. 문화를 이해하기란 대단히 어렵다. 관습과 신념은 이를 구성하고 있는 보다 큰 문화와 분리하여 이해될 수 없다.
- 문화는 그 자체의 의미와 가치에 따라 연구되어야 한다. 이것은 사회학의 핵심적인 전제조건이다. 이러한 생각은 문화적 상대주의(cultural relativism)라고 불리기도 한다(Giddens, 2001).
- 사회적으로 한강은 1960년대부터 가속화된 경제개발의 대표적인 지역이었고, 서울의 고도성장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불평등과 소외 등으로 인하여 한강변에서 자살하여 사회적 논란을 불러 일으켰었다. 또한 개발시대에서는 한강의 모래사장은 유명한 정치집회장으로 활용되기도 하였다(동아일보, 1960 ; 경향신문, 1970),

2. 한강공원 체육시설의 특성

가. 발전적 특성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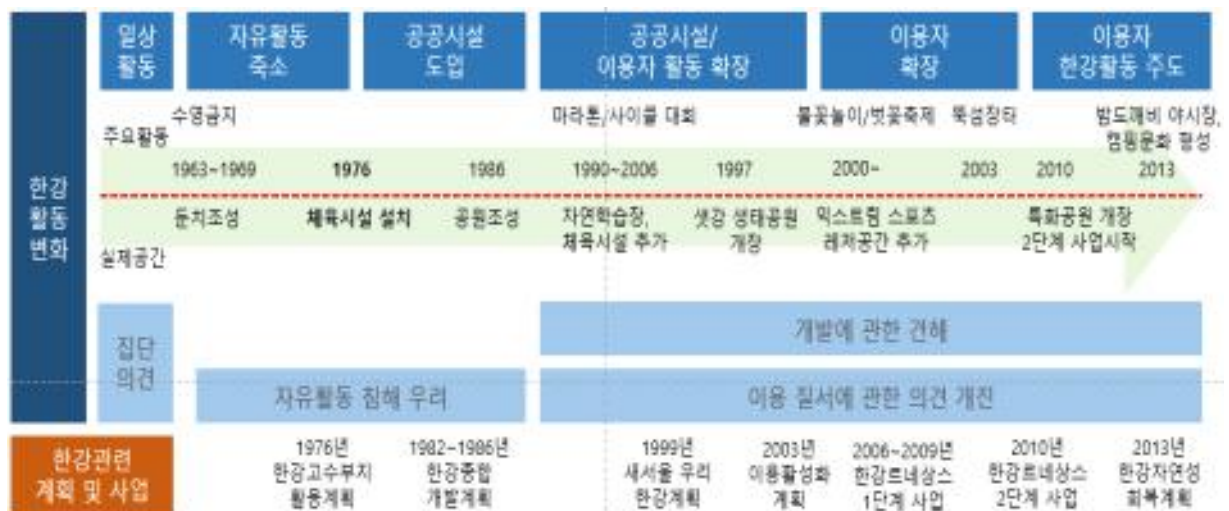
- 서울시에서는 1982년부터 1987년까지 제1차 ‘한강종합개발사업’으로 강동구 하일동에서 강서구 개화동까지 길이 41.5킬로미터, 면적 39.9제곱킬로미터의 한강공원을 조성함으로써 공원의 경계를 확정하였다.
- 이 사업의 취지는 오염된 한강을 되살리고, 한강을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이용하는데 있었다.
- 1970년대 후반부터 그 필요성이 언급되다가 1981년에 대통령이 서울시 연두

7) 이형묵, 전계서, pp.25-30, 2011

순시에서 방안강구에 대한 지시가 이뤄짐으로서 1982년 9월 28일부터 한강하류 서울구간의 대규모 공사가 시작되었다. 이 사업은 첫째, 암사동에서 행주대교까지 36킬로미터 거리에 폭 650-900미터, 연평균 수심 2.5미터의 저수로를 파서 50-200톤급의 유람선과 화물선이 다닐 수 있게 하고, 맑은 물에서 수영과 수상 스키, 요트경기를 즐길 수 있게 하며, 선착장 11개소를 만들어 유람선이 드나들 수 있게 하며, 둘째, 강 양안에 대형 하수관로와 5개(청계, 중랑, 난지도, 탄천, 안양천)의 하수처리장을 만들어 하수를 깨끗이 처리하여 한강에 유입케 하고, 셋째, 강변도로를 확장하고, 넷째, 고수부지에 운동시설, 산책로, 놀이터, 자연초지, 유원지 등을 만들어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조성한다는 등이 주요 내용이었다.

- 한강공원이 지금의 모습을 갖춘 2004년까지의 변화 내용을 살펴보면, 1992년 10월에는 한강공원 전체가 망원, 양화, 여의도, 이촌, 반포, 잠원, 뚝섬, 잠실, 광나루 등 9개 지구로 구분됐었고,
- 2003년 1월 15일에는 잠실과 광나루를 합쳐 8개 지구로 개편됐으나,
- 2004년 3월 5일에 잠실, 광나루, 뚝섬, 잠원, 반포, 이촌, 여의도, 선유도, 양화, 난지, 망원, 강서와 같이 현재의 12개 지구로 개편되었다(두산백과, 2022).
- 2007년부터 2030년까지는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사업을 진행하며 도시매력을 재창조하고 한강을 원래의 주민인 시민들에게 되돌려 주고자 하며 서울을 수변도시로 개발하기 위한 배경을 가지고 테마가 있는 한강공원 조성과 한강으로의 접근성 개선 및 서해연결 주운 기반의 조성과 한강의 생태복원, 워터프런트타운 조성을 주요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그림 2-1〉 한강공원의 여가활동과 공간계획 발달과정



출처: 조한술, 한강공원 공간계획과 여가활동 변화,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0, 연구자 재작성

〈표 2-1〉 한강공원 관련 주요 정책과 사업연표

구분	1996	1999	2004	2007	2014
시 장	조순 (1995~1997)	고건 (1998~2002)	이명박 (2002~2006)	오세훈 (2006~2011)	박원순 (2011~2020)
정 책	공원녹지 확충 5개년사업	새 서울 우리 한강계획	생활권 녹지 100만평늘리기	한강 르네상스 계획	한강 자연성 회복 계획 한강공원보전및관리계획
주 요 사 업	-어린이공원 환경공원 조성 -주제공원 조성 -길동자연생태공원 조성 -여의숫강생태공원 조성 -남산 제모습 가꾸기 사업 -여의도광장의 공원화 -시유지 공원녹지 조성 -서양사야적지 시민광장 조성 -공장 및 시설야적지 공 원화 -난지도 매립지의 종합 체육공원조성	-선유도 공원화 -난지 한강공원 조성 -뚝섬한강공원 기능 보완 -잠실한강공원 기능 보완 -광나루한강공원 기능 보완 -시설물 통합 이미지 디자인(CIP) -간이 시설물 개선 -잔디와 수목이 어우 러진 휴식공간 조성 -다양한 레저, 체육시 설 도입 -계절별 풍경단지 조성 수상이용시설 (재)배치	-1동1마을공원 -대기질 개선을 위한 수경시설 확충 -뚝섬 서울숲 조성 -가로변 녹지량 확충 과 구조 물 벽면녹화 -대규모 유희지 녹화 -녹색주차장 확대 -걷고싶은 녹화거리 조성 -시설이적지 공원화 -공공시설을 활용 한 녹지공 간 확보 -하천변 녹지대 조성 -도시 생태림 조성	-한강 중심의 도시공간 구조 재편 -위더 프런트타운 조성 -한강변 경관개선 -서해연결 주운기반 조성 - 한 강 중 심 의 Eco-Network 구축 -한강으로의 접근성 개선 -한강변 역사유적 연계 강화 -태파가 있는 한강공원 조성	-도심 산업활력의 촉매제, 세운상가군 재생 -도심부 역사문화자 원을 활용한 특화공 간 조성 -도시에 생기를 불어넣 는 시민리공간 만들기 -한강과어우러지는 문화명소,노들섬 -자연과 시민이 공존하 는 북한산 주변 재생 -1000명 시민계획가 와 함께만드는 「100 년도시」

출처: 조운승외, 언론매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민선자치시대의 한강공원 정책과 사회적 담론 변화 연구, 한국지적
정보학회지 제23권 제1호, pp173-187, 2021

나. 구성적 특성

1) 내용적 특성

가) 수상형/육상형

- 현재 한강에는 11개의 한강공원별로 체육 및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 수상형은 물에서 이루어지는 레저스포츠 활동으로서 아쿠아티스포츠(aquatic sports) 또는 마린스포츠(marin sports)로 불린다. 광의적인 관점에서 수상레저스포츠의 개념을 정립해보면, 여가시간에 기분전환과 자신의 건강증진 및 자기계발을 위해 자발적으로 수상에서 실시하는 스포츠 활동⁸⁾이다.

- 수상레저스포츠의 유형은 다양한 형태로 분류된다. 이것은 행해지는 장소에 따라 수상레저스포츠와 수중레저스포츠로 분류할 수 있으며, 사용하는 장비의 특성에 따라 분류하면 동력과 무동력 종목으로 분류할 수 있고, 구성요소에 따라 분류하여 레저형 해양스포츠와 스포츠형 해양스포츠로 분류할 수 있다. 행해지는 장소에 따라 분류한 수상레저스포츠는 물위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활동하는 것이며, 종류로는 수영(swimming), 수상스키, 윈드서핑, 요트(yacht), 서프보드, 수상오토바이 등이다. 수중레저스포츠는 물속에서 스쿠터 등의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활동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간단한 수상레저 장비를 휴대하고 바다, 강, 냇가에서 물속의 아름다운 풍경이나 물고기들을 관찰할 수 있는 스킨스쿠버가 대표적이고, 스노클링, 스쿠버다이빙 등이 있다. 대부분의 수상레저스포츠는 장비를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비의 기능적 특성에 따른 분류와 운동문화별로 유형을 분류할 수 있다. 장비의 기능적 특성을 중심으로 분류하면 동력스포츠, 무동력스포츠로 구분하고, 운동문화별로 분류하면 레저형(극복스포츠)과 스포츠형(기능스포츠)으로 나눌 수 있다⁹⁾.
- 육상레저스포츠는 육상에서 이루어지는 레저스포츠 활동으로서, 종목별 분류기준은 주로 자연환경에 따라 분류하고 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는 번지점프, 하강시설, KART, 인공암벽, ATV, 서바이벌, MTB, 파크골프장, 클레이사격, 인라인스케이트, BMX, 스케이트보드 등 12가지 종류를 우선적으로 관리대상으로 분류하여 지정하고 있으며, 대한체육회는 건강 및 체력 진흥형 레저스포츠, 경쟁형 레저스포츠, 야외활동형 레저스포츠, 민속놀이형 레저스포츠 등 4가지로 분류¹⁰⁾했으며, 기타 학자로는 성문정¹¹⁾은 29가지¹²⁾, Farrel¹³⁾은 팀스포츠와 필드스포츠, 개인스포츠와 대인스포츠, 레크리에이션스포츠, 체력강화스포츠 등4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나) 레저형/전문형

-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레저의 어원은 “자유롭게 되다”혹은 “허락하다”라

8) 성문정외, 수상레저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연구,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과학연구원, p.13, 2005.
 9) 임정미, 수상레저스포츠 참가자의 여가참여동기와 여가몰입, 여가만족, 심리적 웰빙의 관계, 경북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p.16, 2014
 10) 성문정외, 레저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연구, 국민체육진흥공단, pp94~95, 2006
 11) 성문정, 레저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연구, 체육과학연구원, p35, 2006
 12) 육상형 종목으로는 스포츠클라이밍, 암벽등반(빙벽포함), 서바이벌게임, 클레이사격, 자동차경주, 번지점프, 질라인, 오토바이경주, 사이클링, 자전거, 등산, 인라인스케이트, 오리엔트예링, 사냥, 카드, 트레킹, 캠핑, ATV, 스트리트보드, 석궁, 휠맨, 모터보드, 스케이트보드, 부메랑, 스노바이크, 마운틴보드, 파크골프, 스포츠카이트, 스노스쿠터 등이 있음.
 13) Farrel, P. & Lundergren, H. m, The Process of Recreation Programming, Venture Publishing, Inc. State College, PA, 1991

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라틴어에서 유래되었으며, 불어의 leisser(허락되다)로 발전되다가 오늘날 영어의 레저로 진전되었다. 결국 licere의 어원은 당시의 사회계급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노동을 직분으로 하였던 하류층들은 항상 쉴때여 있는 상태였으며, 노동을 할 필요가 없었던 귀족층들은 늘 자유롭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형편이었다. 이러한 사실들은 그 당시 상류계급에 속한 사람들이 지적·문화적 예술활동의 자유를 부여받고 있었다는 것을 함축해 주고 있다. 따라서 이때의 레저라는 개념은 귀족에게만 해당되었다고 볼 수 있다. 아무튼 레저에 해당되는 모든 어원들은 '무료한 시간'을 뜻하기 보다는 평화, 조용함, 의무감이 없는, 자발적 선택 혹은 강제성이 없는 등과 같은 뜻을 의미하고 있다. 한편, leisure의 본질적 의미는 고대 그리스어의 schole와 로마어인 otium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들 어원은 모두 정지 상태와 평화 상태를 내포하고 있으며, 시간적 의미가 부여된 남은 시간이라는 뜻에서 자신을 위한 시간이라는 뜻으로 발전하였다. 레저라는 용어는 우리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어 자주 사용하면서도 아직 개념규정이 불명확한 상태이다. 외래어인 'leisure'라는 용어는 우리말의 '여가'와 유사하여 놀이, 오락, 레크리에이션, 취미, 재미, 기분전환, 여흥, 흥미, 즐길, 휴가, 바캉스 등과 같은 인간의 즐거움에 대한 총칭으로서 사용되고 있다. 우리는 사전식 풀이에 입각한 'leisure = 여가'라는 잘못된 인식으로 여가 시간을 자유롭게 행하는 일이면 모두 레저로 오인하여 왔지만, 진정한 레저는 여가시간 가운데에서도 자기 향상을 위한 자유 선택적인 활동만이 레저활동이 된다¹⁴⁾고 하였다.

- 이러한 레저형 체육활동으로는 자전거, 인라인스케이트, 패러글라이딩, 스키 등이 있다.
- 전문형은 레저스포츠 활동을 체계적이면서도 계획적으로 설계하고 추구하는 것으로, 그 활동에 대한 흥미와 가치를 판단하여 관련 기술의 습득과 지식의 축적, 일정 기간의 활동에서 체득된 경험 등을 쌓거나 표출하는데 집중하여 전문성을 갖추어 나가는 레저스포츠를 일컫는다.
- 이러한 종목으로는 테니스, 승마, 수상스키, 패러글라이딩, 웨이크보드, 요트, 윈드서핑, 인라인스케이트, 수영, 배구, 농구, 야구 등으로 볼 수 있다.

다) 조직형/개인형¹⁵⁾

- 조직형은 쉽게 말하면 단체종목으로 종목의 목적인 우승을 위하여 단체 구성원

14) 이진헌, 전문계 남자 고등학생의 여가를 이용한 스포츠활동과 사회성 형성의 관계,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p.7-8, 2008

15) 이형묵, 전게서, pp32-33, 2011

들의 개개인의 창의력과 응집력이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축구, 농구, 족구, 배구, 야구 등과 같은 유형의 스포츠이며, 개인형은 단체경기와는 달리 개개인의 인내심과 체력을 바탕으로 하여 길러진 경기력을 통해 스포츠의 목적인 건강과 우승을 확보하고자 하는 걸기, 달리기, 수상스키, 웨이크보드, 마라톤, 자전거, 승마, 수영, 인라인 등과 같은 유형의 스포츠이다.

3. 관련계획 및 범규검토

가. 관련계획 검토

1) 관련계획 검토 개요

- 서울시 한강공원 체육시설의 활성화 방안을 위해 관련된 상위계획 내용을 국가 계획, 서울시 계획, 한강사업본부 계획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표 2-2〉 관련계획 검토 항목

구분	관련 계획
국가 계획	·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년) · 2013 국민생활체육진흥종합계획 · 2018 국민생활체육진흥기본계획 · 2030 스포츠비전
서울시 계획	· 2030 도시기본계획 · 한강자연성회복 및 관광자원화를 위한 종합계획 · 한강변관리기본계획
한강사업본부 계획	· 한강공원 보전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2) 국가계획

가) 제5차 국토종합계획

- 2040년을 목표로 국토기본법 제10조에 대한 기본적·장기적 정책방향을 포함하여 국가의 장기적인 국토정책 방향과 전략을 선도하는 방향 제시자로서 부문·하위계획에 대해 가이드라인 역할과 새로운 국가계획 수립 모델을 선도하고 현

재와 미래 세대 모두를 위한 국토의 백년대계 실현을 지향하며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를 비전으로 설정하였다.

- 계획의 목표는 국토기본법 제2조 및 제3조, 국토계획헌장에 따른 ‘어디서나 살기 좋은 균형국토’, 국토기본법 제2조 및 제5조, 유엔 지속가능 발전목표(UN SDGs), 국토계획헌장에 따른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스마트국토’, 국토기본법 제2조 및 제4조, 국토계획헌장에 따른 ‘건강하고 활력있는 혁신국토’로 수립하였다.
- 6대 추진전략으로는 ‘개성있는 지역발전과 연대·협력 촉진’, ‘지역 산업혁신과 문화·관광 활성화’,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안심 생활공간 조성’, ‘품격있고 환경친화적 공간 창출’, ‘인프라의 효율적 운영과 국토 지능화’, ‘대륙과 해양을 잇는 평화국토 조성’으로 계획되었다.

〈그림 2-1〉 그림 2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비전, 목표, 전략



나) 국민생활체육진흥종합계획(2013년)

- 생애주기별 생활체육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주요 정책과제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계획이 수립되었다.
- ‘비전 및 추진방향’으로는 ‘생활체육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유소년기부터 100세까지 평생 동안 생활체육을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생애주기별 생활체육을 추구한다.
- ‘정책목표’로는 ‘스마일 100’ (스포츠를 마음껏 일상적으로 100세까지), 주 1회 이상 생활체육참여율 ’13년 43.3%에서 ’17년 60%로 설정하였다.
- ‘정책과제’로는 ‘언제나’ 향유할 수 있는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어디서나’ 이용 가능한 시설을 제공하며, ‘누구나’ 부담 없이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세

대와 문화를 넘어 ‘함께’ 참여하는 생활체육, 걸림돌 없이 ‘즐거는’ 생활체육 참여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 ‘유소년 핵심과제’로는 ‘운동습관 형성으로 건강 100세 출발! 유소년기’를 추진 전략으로 하여 유아기관 체육 돌봄 프로그램 지원, 유치원 유소년 지도자 파견 및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학교 스포츠강사 확대 및 우수 스포츠클럽 지원을 계획하였다.
- ‘청소년 핵심과제’로는 ‘스마트기기 대신 운동으로 스마트한 청소년기’를 추진 전략으로 하여 학교스포츠클럽 정착 및 지역 스포츠클럽과의 연계시스템 구축, 스포츠 활동 이력제 등 스포츠 지원 시스템 구축과 여학생 친화적 체육활동 참여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 ‘성인기 핵심과제’로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상적 운동으로 활력 있는 성인기’를 추진 전략으로 하여 국민체력 100 정착 및 종합형 스포츠클럽 육성, 여성 및 가족단위 운동참여 여건 조성, 1직장 1스포츠 운동, 체육지도자 배치, 스포츠 교실, 생활체육광장 확대 등을 계획하였다.
- ‘은퇴기 이후 핵심과제’로는 ‘무병장수의 보약! 생활체육으로 건강한 은퇴기이후’를 추진 전략으로 하여 찾아가는 체력관리 및 생활체육교실 확대, 세대 간 어울림 프로그램 보급 확대, 경로시설의 체육활동 거점시설 기능 강화 및 지도자 배치 확대를 도모하였다.

〈그림 2-2〉 국민생활체육진흥종합계획 비전과 목표



다) 국민생활체육진흥기본계획(2018년)

-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하며 동법 제4조제1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기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생활체육진흥법 제5조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동법 제6조제1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는 국민의 생활체육 참여 권리와 국가의 책무를 명시한 「국민체육진흥법」과 「생활체육진흥법」에 근거하여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림 2-3〉 국민생활체육진흥기본계획의 비전 및 추진전략

비전	스포츠가 있는 일상, 모두가 누리는 행복
정책 방향	[스포츠 참여기회 확대] 누구나 쉽게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환경 조성 [스포츠 가치 확산] 스포츠를 스포츠답게, 일상 속 스포츠 가치 확산 [스포츠클럽 정책] 시스템을 갖춘 생활체육 생태계 조성
	사람 중심 가치 확산 질적 성장
추진전략	핵심과제
일상 속의 스포츠	I. 생애주기별 맞춤형 스포츠 지원 강화 II. 생활 속 스포츠의 일상화
모두가 누리는 스포츠	III. 스포츠격차 해소를 위한 환경 조성 IV. 스포츠가치 확산으로 건강한 공동체 형성
뿌리가 튼튼한 스포츠	V.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체계 구축 VI. 스포츠클럽 간 연계 및 리그 확산
기반이 되는 스포츠	VII. 전문적 체육지도자 양성과 지원 VIII. 수요자 중심 스포츠 시설 및 정보 제공

- 다음과 같은 8대 핵심과제에 따른 47개의 세부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추진전략	8대 핵심과제		47개 세부과제			
일상속의 스포츠	I.	생애주기별 맞춤형 스포츠 지원체계 강화	(1)	누리과정 내 신체활동 지원		
			(2)	어린이집·유치원 방과 후 스포츠 활동 지원 확대		
			(3)	스포츠친화형 어린이집·유치원 확인제		
			(4)	초등 스포츠돌봄교실 운영		
			(5)	청소년 스포츠 활동 지원 강화		
			(6)	직장인 맞춤형 스포츠 활동 지원		
			(7)	노년층을 위한 스포츠생태계 구축		
	II.	생활 속 스포츠의 일상화	(8)	국민체력 100사업 확대		
			(9)	체육 주간 및 체육의 날		
			(10)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대국민 홍보 체계 구축		
			(11)	생활체육 참여에 대한 건강 보험료 할인		
			(12)	생활체육 참여를 통한 세금환급 혜택		
			(13)	모두가 함께하는 생활체육광장		
			(14)	맞춤형 생활체육 스포츠 지도 콘텐츠 개발		
			(15)	생활체육 붐 조성		
모두가 누리는 스포츠	III.	스포츠격차 해소를 위한 환경 조성	(16)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스포츠드림’ 프로젝트		
			(17)	위기 청소년을 위한 스포츠복지 확대		
			(18)	스포츠강좌이용권 수혜자 확대		
			(19)	찾아가는 스포츠버스 확대		
			(20)	여학생 스포츠 프로그램 활성화		
			(21)	홈리스 생활체육 브릿지 프로그램		
	IV.	스포츠가치 확산으로 건강한 공동체 형성	(22)	스포츠가치교육 활성화		
			(23)	스포츠 리더러시 함양		
			(24)	가족 스포츠 광장 및 페스티벌		
			(25)	스포츠를 통한 국제교류 및 남북교류 강화		
			(26)	스포츠가치센터 구축 및 관리		
			(27)	스포츠클럽 육성법		
뿌리가 튼튼한 스포츠	V.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체계 구축	(28)	다양한 형태의 스포츠클럽		
			(29)	공공체육 시설 개방 확대를 위한 법제도 개선		
			VI.	스포츠클럽 간 연계 및 리그 확산	(30)	대학과 지역사회 연계한 스포츠클럽
					(31)	여대생 스포츠클럽 활성화
	(32)	전국 생활체육 국민 리그				
	(33)	스포츠클럽 디비전 시스템 도입				
	기반이 되는 스포츠	VII.	전문적 체육지도자 양성과 지원	(34)	학교스포츠클럽과 공공스포츠클럽 연계	
				(35)	체육지도자 자격제도 보완을 통한 우수지도자 양성	
(36)				체육지도자 배치 확대		
(37)				은퇴선수 지도역량 및 지원 강화		
(38)				체육인 복지법 제정		
(39)				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을 통한 일자리 확대		
VIII.		수요자 중심 스포츠 시설 및 정보 제공	(40)	생활밀착형 체육시설 조성 및 개방 확대		
			(41)	스포츠 중심 복합 여가 공간 조성		
			(42)	도심 속 스포츠 공간 조성		
			(43)	체육시설 안전 및 정보 시스템 구축		
(44)	체육시설 관리 전문 인력 양성 배치					
(45)	생활체육시설 안전점검 체계 구축					
(46)	유·청소년 스포츠 정보 구축 및 관리					
(47)	빅데이터 센터 구축 및 관리					

라) 2030 스포츠비전(2018년)

- 스포츠활동은 국민 모두가 마땅히 누려야 할 보편적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라는 인식 확산과 함께 스포츠 활동은 국가 중심에서 개인 중심으로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국민 개개인의 행복과 건강을 위한 스포츠 정책을 위해 2015년 생활체육진흥법이 제정되고, 2016년 통합체육회의 탄생으로 공공체육시설 조성 과 지도자 배치 확대 등 국민의 생활체육 참여 여건 개선을 위한 법과 제도적 토대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통합체육회 출범에도 불구하고 전문·생활 스포츠 연계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으며, 국민이 일상에서 편리함을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스포츠 환경 조성에는 미흡하였다.
- 정부는 2030년 기준 고령인구(65세 이상)가 약 25%에 달함에 따라 국민의 스포츠활동 장려를 통한 의료비 경감과 유아기 스포츠활동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아이의 평생 운동습관 형성을 유도하고 부모의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계획이 필요하였다.
- 따라서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로봇 등의 과학기술 발달로 노동 및 생활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예상됨으로 첨단기술을 활용한 편리한 스포츠 참여 환경을 조성하고, 스포츠산업의 혁신 성장 발판을 마련하였다.

〈그림 2-4〉 2030 스포츠비전의 정책 및 방향

비전	사람을 위한 스포츠, 건강한 삶의 행복
정책 방향	[운동하기 편한 나라] 스포츠 목적은 국민의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 국민이 스포츠를 즐기며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 [스포츠공립 시스템 정착] 스포츠공립을 통해 생활스포츠와 전문스포츠가 선순환하는 스포츠 시스템 정착 [스포츠 가치의 사회적 확산] 공창·열풍·도전 등 스포츠 가치가 국민의 삶 속에 스며들 수 있는 사회적 여건 조성
핵심어	사람 중심
	삶의 질 향상 건강한 공동체 정의로운 스포츠 민주적 거버넌스
추진전략	핵심과제
신나는 스포츠	I. 평생동안 즐기는 맞춤형 스포츠 프로그램 II. 언제 어디서나 편하게 이용하는 스포츠 시설 III. 우수 체육지도자에게 배우는 스포츠 강습
함께하는 스포츠	IV. 우리동네 스포츠클럽 V. 소외 없이 모두가 함께하는 스포츠 환경 VI. 낯과 벽이 함께 만드는 평화 스포츠 시대
자랑스러운 스포츠	VII. 공정하고 도전적인 스포츠 문화 VIII. 국격을 높이고 우호를 증진하는 국제스포츠 IX. 경제성장을 이끄는 스포츠산업
중추리 스포츠	X. 민주적 거버넌스

〈표 2-3〉 2030 스포츠비전의 10대 핵심과제

추진전략	10대 핵심과제	25개 세부과제	
신나는 스포츠	I. 평생동안 즐기는 맞춤형 스포츠 프로그램	(1)	3세부터 시작하는 스포츠활동 습관화
		(2)	청소년의 스포츠 경험 다양화
		(3)	100세까지 이어지는 스포츠활동 일상화
	II. 언제 어디서나 편하게 이용하는 스포츠 시설	(4)	일상에서 편리하게 이용하는 스포츠시설
		(5)	스포츠시설 및 정보의 체계적 관리
	III. 우수 체육지도자 에게 배우는 스포츠 강습	(6)	선수·지도자가 인정받는 사회 여건 조성
		(7)	체육지도자 양성·배치 시스템 선진화
함께하는 스포츠	IV. 우리동네 스포츠 클럽	(8)	스포츠클럽 지원 체계 개선
		(9)	스포츠클럽 생태계의 다양화
		(10)	스포츠클럽 기반의 전문선수 육성체계 구축
	V. 소외 없이 모두가 함께하는 스포츠 환경	(11)	소외 청소년을 위한 스포츠 프로그램 지원
		(12)	장애인스포츠 서비스 편리성 강화
	VI. 남과 북이 함께 만드는 평화 스포츠 시대	(13)	지속가능한 남북 스포츠 교류 기반 마련
(14)		남북 스포츠 교류 복원 및 확대	
자랑스러운 스포츠	VII. 공정하고 도전적인 스포츠 문화	(15)	스포츠 공정 문화 조성
		(16)	선수 육성 체계 강화
	VIII. 국격을 높이고 우호를 증진하는 국제스포츠	(17)	국제스포츠교류 법·제도 기반 공고화
		(18)	한국 특성화 국제교류 사업 개발
		(19)	전략적 국제교류 확대
	IX. 경제성장을 이끄는 스포츠산업	(20)	스포츠산업 지속성장을 위한 신시장 창출
		(21)	국내 스포츠기업 성장 동력 강화
(22)		스포츠산업 혁신 기반 조성	
풀뿌리 스포츠	X. 민주적 거버넌스	(23)	스포츠 복지 실현을 위한 거버넌스
		(24)	체육단체 역량 및 책임성 강화
		(25)	미래지향적 법령체계 개편

3) 서울시 계획

가) 2030 도시기본계획(2014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도시기본계획을 대도시 서울의 공간구조 및 토지의 이용특성에 맞게 재구성(2030 서울플랜)하고 서울의 미래를 위한 계획과제 및 핵심이슈별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을 위한 공간구조 개편 및 토지이용계획, 생활권계획 등 구상을 제시하였다.
- 기존 ‘1도심, 5부도심, 11지역중심’의 단핵구조에서 ‘3도심, 7광역중심, 12지역중심’의 다핵구조로 전환하고 서울의 자연자원(내사산, 외사산, 한강 등)과 역사문화자원(서울성곽, 세운상가, 한옥밀집지 등)의 연계발전을 위한 공원·녹지축도 구상하였다.

〈그림 2-5〉 6030서울플랜 공간구조 방향



나) 한강자연성회복 및 관광자원화를 위한 종합계획(2015년)

- 기존의 한강계획관련 문제점으로 새서울우리한강(1999년), 한강르네상스(2007년) 등 서울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한강 모습은 치수, 수자원 확보를 주목적으로 정비한 한강종합개발(1차: 1978년, 2차: 1986년) 이후 기본 틀이 그대로 유지되며 많은 유동인구, 풍부한 수량, 넓은 유희부지 등 한강이 가진 잠재력에 비해 한강의 관광경쟁력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하천이 가진 다양한 기능 및 활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정책 목적이 복합된 계획 수립을 위해 ‘우선협

력거점', '우선협력과제' 선정을 통해 정책역량 집중하고 우선협력과제 추진 이후 사업효과, 시민 관광객 반응에 대한 평가 등을 거쳐 여타 지역으로 확산하고자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협력을 통해 계획을 수립하였다.

- 그리고 비전과 목표로 첫째, '한강의 자연성 회복'을 위해 한강숲 천변습지조성 등을 통해 생물서식처를 확충하고 콘크리트와 아스팔트 등으로 훼손된 생태축의 연결 및 자연하안 복원과 수리적, 생태적으로 중요한 지천 합류부 등에 생태거점을 조성하여 사람과 환경이 조화될 수 있도록 생태관찰 휴식공간을 마련하며 둘째, '한강-도시 연계회복'을 위해 간선도로 및 지천 합류부 지하화 등을 통해 자동차전용도로, 제방 등으로 단절된 한강의 접근성 개선, 나들목 개선, 정류장 및 자전거 도로 신증설, 수상교통수단 확충 등을 통해 수변-육상 관광루트를 조성함으로써 주변 도시계획 및 재개발 사업(잠실 반포 압구정 이촌지구 등)과 한강정비 계획을 연계하여 셋째, '관광 문화 활동 확대'를 하고자 하였음. 이를 위해 안전 수리적 영향, 환경 문제가 없는 지역에 하천 점용 시설 다양화와 다양한 수상레저 스포츠 공간 마련, 이색적인 이벤트 전시 등 개최하기 위한 한강 인근의 대규모 개발부지, 공공시설 등 이전 후 부지 등을 활용하여 공적 문화공간을 확대하고자 하였다.
- 이를 위한 구체적 권역 구상 및 우선 협력거점으로 서울시 한강 구간을 7개 권역으로 구분하였으며 발전 방향과 주요계획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 2-4〉 관련계획 검토 항목

권역	발전 방향	주요 계획*(예시)
마곡-상암	생태거점 친환경 수변공간	· 한강숲 조성 및 자연하안 복원 · 한강 리버버스(초고속 페리) 선착장합정-당산 한류관광
합정-당산	한류관광 문화·창작	· 홍대~당인리 문화창작벨트 조성 · 마포 우수지 문화컴플렉스 조성
여의-이촌	관광·생태거점 수상교통 허브	· 이촌지역 천변습지 등 조성 · 여의도지역 문화 관광시설 집적
반포-한남	수변여가공간 상징녹지공간	· 세빛섬 주변 관광자원 확충 · 한강 리버버스(초고속 페리) 선착장
압구정-성수	도심여가공간 친수공간	· 패션&뷰티 디자인 빌리지 조성 · 보행교 확장 및 자전거 접근성 개선
영동-잠실-뚝섬	복합문화 허브 수상교통 거점	· 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 수변활성화 · 뚝섬공원 조성
풍납-암사-광진	생태거점 역사 문화	· 강변역사탐방루트 조성 · 보행교 확장 및 자전거 접근성 개선

〈그림 2-6〉 한강 7개 권역 구상도



다) 한강변관리기본계획(2015년)¹⁶⁾

-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은 한강과 한강변 제방 밖(양안) 0.5~1km 범위(면적 82km², 서울시 총면적의 13.5%)를 대상으로 하며, 4대 부문(①자연성 ②토지이용 ③접근성 ④도시경관) 12개 관리원칙을 핵심으로 하고있다.
- 서울시는 기존에 발표한 ‘한강 자연성회복 기본계획(2013년)’, ‘한강 자연성회복 및 관광자원화 종합계획(2015년)’ 등과 모순되지 않고 연속성을 최대한 유지하는 범위에서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림 2-7〉 한강변관리기본계획 관리원칙

4대 부문, 12개 관리원칙			
자연성	토지이용	접근성	도시경관
1. 생태환경 개선	4. 다양한 수변활동 특화	7. 녹색교통 접근성 강화	10. 한강변 조망기회 확대
2. 맑은 물 회복	5. 역사·문화자원 복원·연계	8. 보행접근성 개선	11. 스카이라인 다양성 창출
3. 친함강 이용	6. 시민이용 공간 확충	9. 주변과의 녹지연계 강화	12. 아름다운 건축계획 유도

- 첫째, 자연성 부문은 생태복원과 시민 이용이 조화되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고, 한강숲 총 104만7천m²(둔치면적의 11.7%)를 조성하고 호안 22.4km를 자연형으로 전환, 복원한다.(전체 호안의 약 70%) 또, 국내·외 관광객을 위한 탐방 프로그램도 확대 개발·운영하는 것이다.
- 둘째, 토지이용 측면에서는 7대 수변 활동권역(▲강서~난지 ▲합정~당산 ▲

16) 서울시 홈페이지 <https://news.seoul.go.kr/citybuild/archives/54763>

여의도~용산 ▲반포~한남 ▲압구정~성수 ▲잠실·청담~자양 ▲암사~광장)을 특화 육성하고, 현재 주거 용도가 8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한강변에 국공유지, 공공기여 등을 활용해 수변 공공용지 70여 개소, 약 140만㎡ 수준의 신규 공공이용 공간을 확보하며, 여기에 가족 여가, 문화시설을 유치함으로써 수변부 공공성도 강화시키고 정자 3개소(제천정, 압구정, 천일정)와 한강변 나루터(마포나루터, 삼전나루, 독도나루 등)를 복원함으로써 한강변 전체를 '역사문화둘레길'로 연결한다. 이를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역사탐방 코스(10개소)와 연계하여 5개소(약 26km 거리)새로 조성한다. 당인리발전소를 공원화하여 한강공원과 녹지로 연계하는 방안도 계획안에 수립되었다.

〈그림 2-8〉 한강변 7대 수변활동권역



- 셋째, 접근성 부문에서는 버스 접근성을 강화하고 어느 지역에서나 한강까지 걸어서 10분 내외로 갈 수 있는 균등한 보행 접근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수상교통 운영도 검토하였다. 우선, 버스접근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버스 접근 나들목 4개소(양원, 이촌, 반포, 자양), 보행 접근 불편지역에 나들목 24개소를 추가 조성하고 광진교를 보행 전용교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계획과 한강과 인근 지하철역을 연결하는 자전거 도로를 18개소 추가로 조성하고, 4대 지천(안양천, 홍제천, 중랑천, 뚝섬)합류부와 한강을 연결하는 자전거 도로 4개소를 확충해 한강 양안을 연결하는 자전거 네트워크 구축계획도 수립하였다. 여의도~잠실 간 수륙양용버스 연계, 합정~여의도~선유도, 반포~이촌~노들섬을 수상교통으로 잇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었다.

〈표 2-5〉 한강변 7대 수변활동권역 특화방향

권역	특화방향
강서~난지권역	· 서울 최고의 수변공원에 기반한 친환경 생태·휴식 권역
합정~당산권역	· 홍대, 선유도, 안양천이 연계되는 수변 창조문화권역
여의도~용산권역	· 한강 및 서울의 중심지역을 연계하는 국제적 수변업무·활동 권역
반포~한남권역	· 국가상징녹지축, 한강공원(이촌·반포), 기존 문화시설과 어우러진 국가적 문화·여가 권역
압구정~성수권역	· 구릉지 한강조망과 배후 도심활력이 함께하는 수변조망·활동 권역
잠실·청담~자양권역	· 잠실운동장 재생, 배후 중심지역과의 연계강화를 통한 국제교류 및 스포츠·관광 권역
암사~광장권역	· 서울외곽 환상녹지축 및 선사~삼국시대를 연결하는 한강 역사·문화·생태 권역

4) 한강사업본부 계획

가) 한강공원 보전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2018년)¹⁷⁾

- 한강 관련 계획들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연속성, 정합성, 실행성을 원칙으로 선행계획의 지속적인 연계와 상·하위 계획 간의 정합성 유지, 계획의 실현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계획을 수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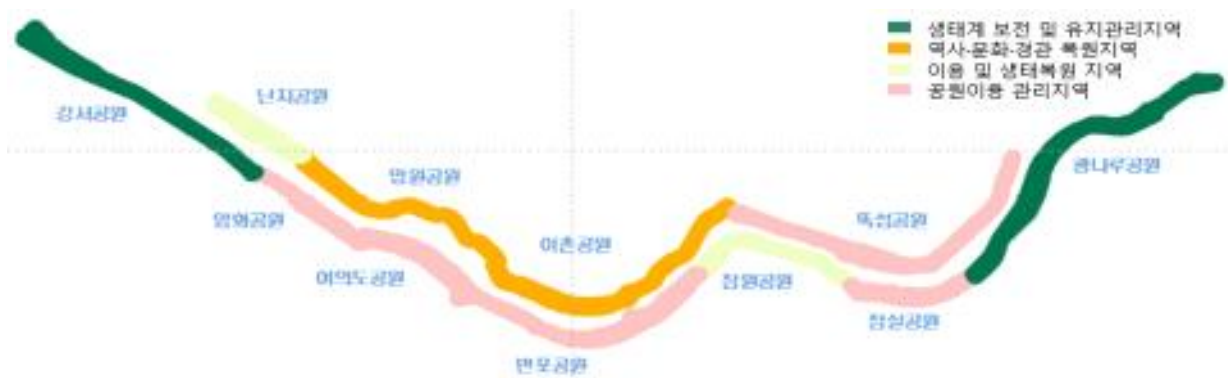
〈그림 2-9〉 한강공원 보전 및 관리 기본계획 기초



17)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2018), 한강공원 보전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결과보고

- 계획에 대한 비전은 '시민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한강공원'으로 설정하였다.
- 4대 목표로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 '매력적인 역사문화 경관', '안전한 공익시설', '지속 가능한 이용'이 수립되었다.
- 한강공원별 보전 및 관리계획으로는 '생태계 보전 및 유지관리지역', '역사·문화·경관 복원지역', '이용 및 생태복원 지역', '공원이용 관리지역'의 4개 컨셉을 도출하였다.

〈그림 2-10〉 한강공원별 보전 및 관리계획



- 한강공원별 보전 및 관리계획에 따른 세부추진전략은 다음의 표와 그림과 같다.

〈표 2-6〉 한강공원별 세부 추진전략

한강공원명	유형 및 특성	계획관리지표
강서	건강한 자연성	· 침수 및 안전관리 필요
난지	시민과 자연공존	· 접근성 개선 및 시설안전관리 보강 필요
양화	쾌적한 한강이용	· 이용성 및 이용문화시설 보완 필요
망원	매력적인 역사문화	· 안전성 개선 및 시설안전관리 필요
여의도	쾌적한 한강이용	· 생물 다양성 향상 노력, 이용성 및 안전성 개선 필요
이촌	매력적인 역사문화	· 이용성 및 안전성 개선 필요
반포	쾌적한 한강이용	· 침수 및 안전관리 필요
잠원	시민과 자연공존	· 안전성 개선 필요
잠실	쾌적한 한강이용	· 안전성 개선 필요
뚝섬	쾌적한 한강이용	· 생물 다양성 향상 및 시설안전관리 보강 필요
광나루	건강한 자연성	· 접근성 개선 및 시설안전관리 보강 필요

〈그림 2-11〉 한강공원 보전 및 관리 기본계획의 공간적 범위



〈그림 2-12〉 한강공원 보전 및 관리 기본계획 총괄

구분	단기	중기	장기
2030 한강 자연성회복 기본계획	2014~2018(5년)	2019~2023(5년)	2024~2030(7년)
한강 보전 및 관리 기본계획	2018~2023(5년) 현재 중점계획 지구 우선	2023~2027(5년) 중점 이용 관리 지구 중심	2028~2032(5년) 자연과 이용 조화 지구 중심
생태계 보전 및 복원	생태이용숲(잠원/잠실/반포/난지) 강변도로완충숲(여의도/옥섬/망월/양화) 천연습지(반포), 생태저점(난지/잠실) 자연하천(이촌/광나루/망월/옥섬)	강변도로완충숲(반포/잠실) 자연형호안복원(강서/망월/양화) 운동시설다기능화(여의/잠원/이촌/잠실/옥섬)	강변도로완충숲(난지/잠원) 자연형호안복원(반포/잠원/잠실) 운동시설다기능화(난지/양화/망월/반포/광나루)
역사문화 경관	누정복원(망월) 구조물 표지석(망월) 정보점검 및 안내판(여의/이촌/잠실)	누정복원(망월), 구조물 표지석(반포) 장보점검 및 안내판(망월/양화/반포/잠원) 역사문화 전망대(망월/양화)	지형원형 복원(이촌-저자도) 정보 점검 및 안내판(난지/옥섬/강서/광나루) 한강전문해설사(강서/난지/옥섬/광나루)
시설 및 안전	편의시설 배정(이촌) 이동형화장실(망월/양화/반포) CCTV(양화/망월/광나루)	나들문 설치(반포/잠원) 이동형화장실(강서) CCTV(여의/이촌/반포/잠원)	편의시설 배정(난지) 나들문 설치(강서/광나루) CCTV(잠실/강서/난지/옥섬)
이용 및 프로그램	다목적휴양유희공간조성(이촌) 자연계 접근로 개선(광나루) 지구간 초록길(이촌)	다목적휴양유희공간조성(잠원) 주말셔틀버스운영(강서/난지) ICT기술을 활용한 주차관련시설(망월, 반포)	시민참여형 생태경관 관리(강서) ICT기술을 활용한 주차관련시설(강서, 난지, 옥섬)

나. 관련법규 검토

1) 관련법규 검토 개요

- 서울시 한강공원 체육시설의 활성화 방안 연구에서 도입시설을 기반으로 관련된 법률을 검토하고 관련 법률은 공통분야, 공원운영, 수상레저, 시설관리, 수질환경, 공원녹지, 기타분야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표 2-7〉 관련 법률 검토

구분	관련 법률
공통분야	하천법
공원운영분야	청원경찰법
수상레저분야	선박법 선박안전법 유선 및 도선사업법 수상레저안전법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설관리분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전기사업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주차장법
수질환경분야	물환경보전법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야생동식물보호법
공원녹지분야	자연환경 보전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자연공원법
생활체육시설 활용분야	스포츠클럽법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서울특별시 야외운동기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기타분야	국토기본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문화재보호법

2) 공통분야

가) 하천법

- 「하천법」은 하천사용의 이익을 증진하고 하천을 자연친화적으로 정비·보전하며 하천의 유수(流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하천의 지정·관리·사용 및 보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천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표 2-8〉 공통분야_하천법

구분	내용
제12조 (홍수관리구역)	①하천관리청은 하천을 보전하고 홍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홍수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32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2.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허가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사용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같은 법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에 한한다),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9. 「도로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1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녹지의 점용허가 11. 「문화재보호법」 제50조에 따른 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신고
제33조 (하천의 점용 허가 등)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토지의 점용 2. 하천시설의 점용 3.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4.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5. 토석·모래·자갈의 채취

3) 공원운영분야

가) 청원경찰법

- 「청원경찰법」은 청원경찰의 직무·임용·배치·보수·사회보장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원경찰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표 2-9〉 공원운영_청원경찰법

구분	내용
제3조 (청원경찰의 직무)	청원경찰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청원경찰의 배치 결정을 받은 자(이하 “청원주”(請願主)라 한다)와 배치된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4조 (청원경찰의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원경찰을 배치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도 경찰청장에게 청원경찰 배치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청원경찰을 배치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도 경찰청장에게 청원경찰 배치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지시·도경찰청장은 청원경찰 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의 장 또는 시설·사업장의 경영자에게 청원경찰을 배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청원경찰경 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원주는 다음 각 호의 청원경찰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청원경찰에게 지급할 봉급과 각종 수당 2. 청원경찰의 피복비 3. 청원경찰의 교육비 4. 제7조에 따른 보상금 및 제7조의2에 따른 퇴직금 ②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같은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보수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2.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직기간 15년 미만: 순경 2. 재직기간 15년 이상 23년 미만: 경장 3. 재직기간 23년 이상 30년 미만: 경사 4. 재직기간 30년 이상: 경위 ③ 청원주의 제1항제1호에 따른 봉급·수당의 최저부담기준액(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봉급·수당은 제외한다)과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비용의 부담기준액은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告示)한다.

4) 수상레저분야

가) 선박법

- 「선박법」은 선박의 국적에 관한 사항과 선박톤수의 측정 및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사(海事)에 관한 제도를 적정하게 운영하고 해상(海上) 질서를 유지하여, 국가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표 2-10〉 공원운영수상레저_선박법

구분	내용
제1조의2 (정의)	<p>①이 법에서 "선박"이란 수상 또는 수중에서 항행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배 종류를 말하며 그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선: 기관(機關)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선박(선체(船體) 밖에 기관을 붙인 선박으로서 그 기관을 선체로부터 분리할 수 있는 선박 및 기관과 돛을 모두 사용하는 경우로서 주로 기관을 사용하는 선박을 포함한다)과 수면비행선박(표면효과 작용을 이용하여 수면에 근접하여 비행하는 선박을 말한다) 2. 범선: 돛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선박(기관과 돛을 모두 사용하는 경우로서 주로 돛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3. 부선: 자력항행능력(自力航行能力)이 없어 다른 선박에 의하여 끌리거나 밀려서 항행되는 선박 <p>②이 법에서 "소형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총톤수 20톤 미만인 기선 및 범선 2. 총톤수 100톤 미만인 부선
제8조 (등기와 등록)	<p>①한국선박의 소유자는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선박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박등기법」 제2조에 해당하는 선박은 선박의 등기를 한 후에 선박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p> <p>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의 등록신청을 받으면 이를 선박원부(船舶原簿)에 등록하고 신청인에게 선박국적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p> <p>③ 선박국적증서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p> <p>④ 선박의 등기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p>

나) 선박안전법

- 「선박안전법」은 선박의 감항성(堪航性) 유지 및 안전운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표 2-11〉 공원운영수상레저_선박안전법

구분	내용
제3조 (적용범위)	<p>①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정부가 소유하는 선박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군함 및 경찰용 선박 2. 노, 상앗대, 페달 등을 이용하여 인력만으로 운전하는 선박 2의2. 「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 3. 제1호, 제2호 및 제2호의2 외의 선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p>②외국선박으로서 다음 각 호의 선박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한다. 다만, 제68조는 모든 외국선박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운법」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 또는 내항부정기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 2. 「해운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내항 화물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 3. 국적취득조건부 선체용선을 한 선박 <p>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선박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한민국 정부와 외국 정부가 이 법의 적용범위에 관하여 협정을 체결한 경우의 해당선박 2. 조난자의 구조 등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긴급한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의 해당선박 3. 새로운 특징 또는 형태의 선박을 개발할 목적으로 건조한 선박을 임시로 항해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의 해당선박 4. 외국에 선박매각 등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단 한번의 국제항해를 하는 선박

다) 유선 및 도선사업법

- 「유선 및 도선사업법」은 유선사업(遊船事業) 및 도선사업(渡船事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유선 및 도선의 안전운항과 유선사업 및 도선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표 2-12〉 유선 및 도선 사업법

구분	내용
제2조의2 (적용배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수상레저사업 및 그 사업과 관련된 수상에서의 행위를 하는 경우 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 및 그 사업과 관련된 수상에서의 행위를 하는 경우 3. 「낚시 관리 및 육상법」에 따른 낚시어선업 및 그 사업과 관련된 수상에서의 행위를 하는 경우 4.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리나업 및 그 사업과 관련된 수상에서의 행위를 하는 경우 5.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중레저사업 및 그 사업과 관련된 수상에서의 행위를 하는 경우 6. 「항로표지법」에 따른 항로표지(시설항로표지를 포함한다)의 설치·관리, 위탁관리업 및 그 사업과 관련된 수상에서의 행위를 하는 경우
제3조 (사업의 면허 또는 신고)	<p>① 유선사업 및 도선사업(이하 "유·도선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도선의 규모 또는 영업구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할관청의 면허를 받거나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면허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유선장 및 도선장(이하 "유·도선장"이라 한다) 또는 영업구역이 내수면과 해수면에 걸쳐 있거나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걸쳐 있는 경우: 해당 유·도선을 주로 매어두는 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 2. 영업구역이 내수면인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 다만, 영업구역이 둘 이상의 특별자치도·시·군·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군·구"라 한다)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고 운항거리가 5해리 이상인 경우에는 시·도지사, 운항거리가 5해리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유·도선을 주로 매어두는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3. 영업구역이 해수면인 경우: 해당 유·도선을 주로 매어두는 장소를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
제4조 (시설기준 등)	<p>유·도선사업자는 사업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선박과 시설·장비·인력을 갖추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p>
제8조 (영업구역 및 영업시간 등)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유·도선의 영업구역은 선박의 톤수 및 성능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유·도선의 영업시간은 해 뜨기 전 30분부터 해 진 후 30분까지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야간운항에 필요한 조명시설 등 안전운항 시설과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해 뜨기 전 30분 이전 또는 해 진 후 30분 이후에도 영업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응급환자가 발생한 경우 2. 공공 목적으로 운항이 필요한 경우 ④ 유·도선은 기상특보(「기상법」 제14조에 따른 기상특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발효 시 운항할 수 없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선박안전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항해구역 중 평수구역(平水區域)(평수구역이 없는 해수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해수면을 말한다)에서 운항하는 유·도선은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기상특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상특보에 한정한다) 발효 시에도 운항할 수 있다. ⑥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제5항에 따라 운항이 허용된 경우에도 해당 영업구역의 실제 기상상태를 확인하여 안전운항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유·도선의 운항을 제한할 수 있다.

라) 수상레저안전법

○ 「수상레저안전법」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수상레저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표 2-13〉 수상레저안전법

구분	내용
제3조 (적용 배제)	①이 법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른 유·도선사업 및 그 사업과 관련된 수상에서의 행위를 하는 경우 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 및 그 사업과 관련된 수상에서의 행위를 하는 경우 3.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른 낚시어선업 및 그 사업과 관련된 수상에서의 행위를 하는 경우
제30조 (등록)	① 동력수상레저기구(「선박법」 제8조에 따라 등록된 선박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이하 "소유자"라 한다)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특별자치도의 경우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게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소유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1. 등록신청 사항에 거짓이 있는 경우 2. 수상레저기구의 구조와 장치가 제37조제1항에 따른 신규검사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의 대상이 되는 동력수상레저기구는 수상레저활동에 이용하거나 이용하려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수상오토바이 2. 선내기 또는 선외기인 모터보트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모터보트 3. 공기를 넣으면 부풀고 접어서 운반할 수 있는 고무보트를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무보트 4. 총톤수 20톤 미만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트 ④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요건 및 신청절차 등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 (수상레저 사업의 등록 등)	① 수상레저기구를 빌려 주는 사업 또는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자를 수상레저기구에 태우는 사업(이하 "수상레저사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려는 자는 하천이나 그 밖의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상레저기구를 빌려 주는 사업을 경영하려는 수상레저사업자에게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1. 영업구역이 해수면인 경우 :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 2. 영업구역이 내수면인 경우 :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3. 영업구역이 둘 이상의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관할 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 : 수상레저사업에 사용되는 수상레저기구를 주로 매어두는 장소를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마)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은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지역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규제특례를 적용함으로써 지역의 특화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나아가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표 2-14〉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조항	관련 내용
제4조 (친수구역의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국가하천의 정비·복원 등으로 친수여건이 조성되는 주변지역 중 지속가능한 친수공간으로 조성·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친수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하고자 하는 친수구역의 면적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모 이상이어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친수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친수구역조성사업에 관한 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친수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친수구역을 지정한 후에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6조 (사업계획의 내용)	1. 친수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친수구역의 지정목적 3. 사업시행자 및 시행기간 4. 사업시행방법 5.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6. 인구수용·교통처리 및 환경보전에 관한 계획 7. 재원조달계획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9. 제23조에 따른 선수금의 수령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9조 (행위제한 등)	① 제7조제1항에 따라 친수구역의 지정·변경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의 공고가 있는 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합병,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축목의 벌채 및 식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친수구역의 지정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 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을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⑥ 제1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을 장려하고, 체육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켜 국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善用)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표 2-1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조항	관련 내용
제5조 (전문체육시설)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외 경기대회의 개최와 선수 훈련 등에 필요한 운동장이나 체육관 등 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체육관은 체육, 문화 및 청소년 활동 등 필요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제6조 (생활체육시설)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생활체육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기구를 마련하는 등의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제7조 (직장체육시설)	①직장의 장은 직장인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직장의 범위와 체육시설의 설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 (체육시설업의 구분·종류)	①체육시설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등록 체육시설업 :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 경주장업 2. 신고 체육시설업 :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야구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체육교습업, 인공암벽장업
제24조 (안전·위생 기준)	①체육시설업자는 이용자가 체육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요원 배치와 임무, 수질 관리 및 보호 장구의 구비(具備)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위생 기준을 지켜야 한다. ②체육시설업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제1항의 안전·위생 기준에 따른 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③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업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제2항의 보호 장구 착용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 이용을 거절하거나 중지하게 할 수 있다.

5) 시설관리분야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와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표 2-1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조항	관련 내용
제19조 (종합상황실 등의 설치·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누구든지 재난의 발생이나 재난이 발생할 징후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긴급구조기관,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과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관할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그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및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응급대처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34조 (재난관리자원의 비축·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의 수습활동에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비, 물자 및 자재(이하 "재난관리자원"이라 한다)를 비축·관리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 발생에 대비하여 민간기관·단체 또는 소유자와 협의하여 제37조에 따라 응급조치에 사용할 장비와 인력을 지정·관리할 수 있다.
제62조 (비용의 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재난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 또는 제3장의 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행의 책임이 있는 자(제29조제1항에 따른 재난방지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재난방지시설의 유지·관리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가 부담한다. 다만, 제46조에 따라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시행할 재난의 응급조치를 시행한 경우 그 비용은 그 응급조치를 시행할 책임이 있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이 부담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비용은 관계 기관이 협의하여 정산한다.
제67조 (재난관리기금의 적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68조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재난관리기금에서 생기는 수입은 그 전액을 재난관리기금에 편입하여야 한다. ②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킴으로써 공중(公衆)의

안전을 확보하고 나아가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표 2-17〉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조항	관련 내용
제2조 (정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설물"이란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교량·터널·항만·댐·건축물 등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로서 제7조 각 호에 따른 제1종 시설물, 제2종 시설물 및 제3종 시설물을 말한다. 2. "관리주체"란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나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와의 관리계약 등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책임은 진 자는 관리주체로 보며, 관리주체는 공공관리주체(公共管理主體)와 민간관리주체(民間管理主體)로 구분한다. 3. "공공관리주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리주체를 말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4. "민간관리주체"란 공공관리주체 외의 관리주체를 말한다. 5. "안전점검"이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이나 점검기구 등으로 검사하여 시설물에 내재(內在)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하며, 점검목적 및 점검수준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으로 구분한다. 6. "정밀안전진단"이란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측정·평가하여 보수·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7. "긴급안전점검"이란 시설물의 붕괴·전도 등으로 인한 재난 또는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신속하게 발견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점검을 말한다. 8. "내진성능평가(耐震性能評價)"란 지진으로부터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시설물별로 정하는 내진설계기준(耐震設計基準)에 따라 시설물이 지진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9. "도급(都給)"이란 원도급·하도급·위탁, 그 밖에 명칭 여하에도 불구하고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이나 긴급안전점검, 유지관리 또는 성능평가를 완료하기로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계약을 말한다. 10.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이나 긴급안전점검, 유지관리 또는 성능평가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受給人)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11. "유지관리"란 완공된 시설물의 기능을 보전하고 시설물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을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물의 개량·보수·보강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12. "성능평가"란 시설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성, 내구성, 사용성 등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13. "하자담보책임기간"이란 「건설산업기본법」과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또는 하자보수기간 등을 말한다.
제39조 (시설물의 유지관리)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기능을 보전하고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소관 시설물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유지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관리주체는 유지관리업자 또는 그 시설물을 시공한 자(하자담보책임기간(동일한 시설물의 각 부분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다른 경우에는 가장 긴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말한다) 내인 경우에 한정한다)로 하여금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은 관리주체가 부담한다.

다) 전기사업법

- 「전기사업법」은 전기사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확립하고 전기사업의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전기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표 2-18〉 전기사업법

조항	관련 내용
<p>제61조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p>	<p>① 전기사업자는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인가를 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③ 전기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아야 하는 공사 외의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④ 전기사업자는 전기설비가 사고·재해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멸실·파손되거나 전시·사변 등 비상사태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공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를 시작한 후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⑤ 제1항에 따른 인가 및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p>
<p>제66조의2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p>	<p>①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하려거나 그 시설을 증축 또는 개축하려는 자는 그 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법령에서 규정된 허가신청·등록신청·인가신청·신고(그 시설의 소재지 변경에 따른 변경허가신청·변경등록신청·변경인가신청·변경신고를 포함한다) 또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신청을 하기 전에 그 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공사로부터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디오물시청제공업시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제공업시설·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시설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시설 3.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의 시설 4.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5.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6. 그 밖에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p>②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그 보호구역의 시설에 대하여 같은 법 제35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현상변경(같은 법 제7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는 자는 그 현상변경이 끝난 후 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공사로부터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p> <p>③ 안전공사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p>

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은 교통시설의 정비를 촉진하고 교통수단과 교통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표 2-19〉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조항	관련 내용
제15조 (교통영향분석·교통영향평가의 실시대상 지역 및 사업)	1. 도시의 개발 2. 산업입지와 산업단지의 조성 3. 에너지 개발 4. 항만의 건설 5. 도로의 건설 6.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의 건설 7. 공항의 건설 8. 관광단지의 개발 9. 특정지역의 개발 10. 체육시설의 설치 11.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및 용도변경 12. 그 밖에 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마) 주차장법

- 「주차장법」은 주차장의 설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동차 교통을 원활하게 하도록 한다.

〈표 2-20〉 주차장법

구분	내용
주차장법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과 그 밖의 사업 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조례로 시설물의 종류를 세분하거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별표 1	2.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골프장, 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 제외) - 시설면적 150㎡당 1대(시설면적/150㎡)

6) 수질환경분야

가) 물환경보전법

- 「물환경보전법」은 이 법은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하천·호소(湖沼) 등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국민이 그 혜택을 널리 향유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표 2-21〉 물환경보전법

조항	관련 내용
제12조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등)	① 환경부장관은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관할구역의 하수관로, 공공폐수처리시설,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하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 한다)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의 폐기물처리시설(이하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한다) 등의 설치·정비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물의 수질이 제3항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그 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물의 수질기준(이하 "방류수 수질기준"이라 한다)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환경부령으로 정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물의 수질기준은 「하수도법」 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다.

나)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이용 및 위생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위생상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표 2-22〉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조항	관련 내용
<p>제3조 (적용 범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2.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제7호·제10호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자원시설 중 특별자치도, 시·군 또는 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군·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제5호·제7호·제8호에 따른 대(大)점포·임시상·상점가·전문상점단지 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6. 「도로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 7.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철도시설 중 역사시설 8.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중 역사 및 역 시설 9.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의 여객이용시설 등으로서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10.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유선장 및 도선장 1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석유판매업을 하는 주유소 12. 「이화석유기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이화석유기스 충전사업을 하는 충전소 1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14.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 15.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16.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용 또는 공공용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17. 그밖에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법인 또는 개인 소유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
<p>제7조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공중화장실등은 남녀화장실을 구분하여야 하며,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 등의 경우에는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가 남성화장실 대·소변기 수의 1.5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위환경과 조화되는 화단, 휴식시설, 판매시설 등의 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의 설치에 관하여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등에 비상벨(비상 상황 발생 시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계장치를 말한다)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등은 조례로 정한다. ⑤ 공중화장실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에 대변기 칸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⑥ 공중화장실등에서 발생하는 오수 및 분뇨는 「하수도법」에 따라 처리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p>제7조의2 (어린이용 대·소변기의 설치 등)</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공중화장실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어린이용 대·소변기 및 세면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공중화장실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남성 및 여성 화장실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p>제8조 (공중화장실의 관리)</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공중화장실이 설치된 장소 또는 시설을 소유·관리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사람(이하 "공중화장실 관리인"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공중화장실 관리인은 공중화장실과 그 주변의 청결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 야생동식물보호법

- 「야생동식물보호법」은 야생 동·식물과 그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함으로써 야생동·식물의 멸종을 예방하고,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시켜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함과 아울러 사람과 야생 동·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표 2-23〉 야생동식물보호법

조항	관련 내용
제3조 (야생동·식물보호 및 이용의 기본원칙)	① 야생생물은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공동자산임을 인식하고 현세대는 야생생물과 그 서식환경을 적극 보호하여 그 혜택이 미래세대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야생생물과 그 서식지를 효과적으로 보호하여 야생생물이 멸종되지 아니하고 생태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이 야생생물을 이용할 때에는 야생생물이 멸종되거나 생물다양성이 감소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지속가능한 이용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4조 (보호구역안에서의 개발행위 등의 협의)	보호구역에서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용·개발 등의 행위를 하거나 이용·개발 등에 관한인가·허가 등을 하려면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보호구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7) 공원녹지분야

가) 자연환경보전법

- 「자연환경 보전법」은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생태계와 자연경관을 보전하는 등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함으로써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국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있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표 2-24〉 자연환경보전법

조항	관련 내용
제3조 (자연환경 보전의 기본원칙)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연환경은 모든 국민의 자산으로서 공익에 적합하게 보전되고 현재와 장래의 세대를 위하여 지속가능하게 이용되어야 한다. 2. 자연환경보전은 국토의 이용과 조화·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3. 자연생태와 자연경관은 인간활동과 자연의 기능 및 생태적 순환이 촉진되도록 보전·관리되어야 한다. 4. 모든 국민이 자연환경보전에 참여하고 자연환경을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증진되어야 한다. 5. 자연환경을 이용하거나 개발하는 때에는 생태적 균형이 파괴되거나 그 가치가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생태와 자연경관이 파괴·훼손되거나 침해되는 때에는 최대한 복원·복구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6. 자연환경보전에 따르는 부담은 공평하게 분담되어야 하며, 자연환경으로부터 얻어지는 혜택은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인이 우선하여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 자연환경보전과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제협력은 증진되어야 한다.
제12조 (생태·경 관 보전지역)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자연생태·자연경관을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보전 및 학술적 연구가치가 큰 지역 2. 지형 또는 지질이 특이하여 학술적 연구 또는 자연경관의 유지를 위하여 보전이 필요한 지역 3. 다양한 생태계를 대표할 수 있는 지역 또는 생태계의 표본지역 4. 그 밖에 하천·산간계곡 등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지역 ② 환경부장관은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지속가능한 보전·관리를 위하여 생태적 특성, 자연경관 및 지형여건 등을 고려하여 생태·경관보전지역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지정·관리할 수 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태·경관핵심보전구역(이하 "핵심구역"이라 한다) : 생태계의 구조와 기능의 훼손방지를 위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호하고자 하는 지역 2. 생태·경관완충보전구역(이하 "완충구역"이라 한다) : 핵심구역의 연결지역으로서 핵심구역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3. 생태·경관전이(轉移)보전구역(이하 "전이구역"이라 한다) : 핵심구역 또는 완충구역에 둘러싸인 취약지역으로서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③ 환경부장관은 생태·경관보전지역이 군사목적 또는 천재·지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거나 보전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지역을 해제·변경할 수 있다.

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은 도시에서의 공원녹지의 확충·관리·이용 및 도시녹화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을 확보하고 공공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표 2-2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조항	관련 내용
제14조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	<p>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기준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다음 각 호의 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개발을 수반하는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계획을 개발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시개발법」 제4조에 따른 개발계획 2.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에 따른 정비계획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개발계획 5.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계획 6. 「유통산업발전법」 제29조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의 사업계획 7.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3에 따른 지역종합개발계획 8. 다른 법률에 따라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그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사업 중 주거·상업·공업을 목적으로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의 개발계획 9. 그 밖의 개발계획으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주거·상업 또는 공업을 목적으로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의 개발계획 <p>③ 제2항에 따라 개발계획에 포함되는 도시공원 또는 녹지는 해당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자기의 부담으로 조성한다.</p>
제19조 (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	<p>① 도시공원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공원조성계획에 따라 설치·관리한다.</p> <p>② 둘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도시공원의 관리자 및 그 관리방법은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하여 정한다.</p> <p>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 도시공원이 같은 도의 관할구역에 속할 때에는 관할 도지사에게,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을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공동으로 재정(裁定)을 신청할 수 있다.</p> <p>④ 제3항에 따른 재정신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재정이 있을 때에는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p> <p>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전이라도 해당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에 따라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선하려는 경우 2. 기존 공원시설 부지에서 공원시설을 변경하는 경우(골프장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그 밖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공원의 관리를 위하여 긴급하게 공원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p>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5항에 따라 공원시설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빠른 시일 내에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여 그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p> <p>⑦ 제1항에 따른 도시공원의 설치기준, 관리기준 및 안전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p>

다) 자연공원법

- 「자연공원법」은 자연공원의 지정·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표 2-26〉 자연공원법 관련 내용

조항	관련 내용
제4조 (자연공원의 지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국립공원은 환경부장관이 지정·관리하고, 도립공원은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광역시립공원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인 각각 지정·관리하며, 군립공원은 군수가, 시립공원은 시장이, 구립공원은 자치구의 구청장이 각각 지정·관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연공원을 지정·관리하는 환경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공원관리청"이라 한다)은 자연공원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정대상 지역의 자연생태계, 생물자원, 경관의 현황·특성, 지형, 토지 이용 상황 등 그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③ 공원관리청은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조사를 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조사를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④ 공원관리청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연공원 지정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 (자연공원의 지정기준)	<p>자연공원의 지정기준은 자연생태계, 경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제73조의3 (생태체험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공원관리청은 국민이 자연공원을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자연공원체험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연공원체험사업은 자연공원의 경관과 생태·문화환경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행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범위·종류 및 비용 징수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공원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자연공원체험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④ 공원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자연공원체험사업의 대상지역에 제18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원문화유산지구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사찰의 주지와 협의하여야 한다.

8) 생활체육시설 활용분야

가) 스포츠클럽법

- 공공·민간 스포츠 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스포츠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스포츠클럽법」을 제정한다.

〈표 2-27〉 스포츠클럽법

구분	내용
제2조(정의)	<p>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스포츠클럽”이란 회원의 정기적인 체육활동을 위하여 제6조에 따라 등록을 하고 지역사회의 체육활동 진흥을 위하여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지정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 중에서 제9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스포츠클럽을 말한다. 3. “스포츠클럽회원”이란 스포츠클럽의 시설이나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에 가입하여 정기적으로 회비를 납부하고 활동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클럽의 지원 및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스포츠클럽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의 시책을 수립하고 스포츠클럽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스포츠클럽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 (지정스포츠클럽)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 중에서 지정스포츠클럽을 지정할 수 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스포츠클럽과 「학교체육 진흥법」에 따른 학교스포츠클럽 및 학교운동부와의 연계 2. 종목별 전문선수의 육성 3. 연령·지역·성별 특성을 반영한 스포츠 프로그램의 운영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초 종목 및 비인기 종목의 육성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정스포츠클럽이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지정스포츠클럽의 지정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 한강 수계내의 녹지나 시설물 등을 유지 관리하여 한강공원의 자연생태계를 회복하고 향상된 환경으로 보전함으로써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표 2-28〉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구분	내용
제8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한강공원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한강공원 보전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기본계획을 수정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를 여건에 맞게 수정 보완해야 한다. ③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한강공원 백서)	① 시장은 한강공원 보전 및 복원시책의 종합적 추진에 이바지하고 시민에게 시책의 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알리기 위하여 매년마다 백서를 작성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백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한강 자연생태환경보전과 관련한 주요시책과 추진현황 2. 한강 이용현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민이 알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12조 (공원이용시설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한강공원의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별표 1에 정한 공원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시설을 제4조에 따른 기본원칙 및 「하천법」 등 관계 법령에 부합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제13조 (위탁운영 등)	① 시장은 제12조에 따라 설치한 공원이용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할 수 있다.
별표 1	2.체육시설 가. 축구장, 배구장, 족구장, 농구장, 야구장(어린이, 성인),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풋살 경기장, 축구교육장, 우드볼장, 국궁장, 이촌인라인롤러스케이팅장, X-게임장, 론볼링장, 파크골프장, 인공암벽장과 그 부대시설 및 장비나. 그 밖에 시민 생활체육에 필요한 시설

다) 서울특별시 야외운동기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야외운동기구 설치와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서울시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사고 예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표 2-29〉 서울특별시 야외운동기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구분	내용
제2조 (정의)	<p>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야외운동기구"란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야외에 고정적으로 설치하여 자유롭게 접근 가능한 장치로 사람의 신체부위를 단련하거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를 말한다. 2. "이용자"란 야외운동기구를 사용하는 시민을 말한다.
제6조 (설치기준 등)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하여 현 지조사 및 사전 검토 후 설치한다. ② 야외운동기구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주로 한다. ③ 야외운동기구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기초와 바닥재는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 (안전점검 등)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시장은 야외운동기구 안전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야외운동기구에 대한 정기점검을 6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긴급점검 또는 정밀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과 제2항에 따른 긴급점검 및 정밀점검을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한 후 장기간 사용하지 않고 이용자수가 현저히 적어 방치되어 있는 경우 철거할 수 있다.

9) 기타분야

가) 국토기본법

- 「국토기본법」은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토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의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표 2-30〉 국토기본법

조항	관련 내용
제3조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	<p>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 지역이 특성에 따라 개성 있게 발전하고, 자립적인 경쟁력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안정되고 편리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국토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p> <p>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과 비수도권(非首都圈), 도시와 농촌·산촌·어촌, 대도시와 중소도시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룩하고, 생활 여건이 현저히 뒤떨어진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여야 한다.</p> <p>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간의 교류협력을 촉진시키고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 간의 화합과 공동 번영을 도모하여야 한다.</p>
제4조 (경쟁력 있는 국토 여건의 조성)	<p>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용수(用水) 시설, 물류 시설, 정보통신 시설 등 국토의 기간시설(基幹施設)을 체계적으로 확충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야 한다.</p> <p>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지, 수자원, 산림자원, 식량자원, 광물자원, 생태자원, 해양수산자원 등 국토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체계적인 보전·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는 국토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대륙과 해양을 잇는 국토의 지리적 특성을 최대한 살리도록 하여야 한다.</p>
제16조 (지역계획의 수립)	<p>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특성에 맞는 정비나 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도권 발전계획: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의 분산 및 적정배치를 유도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2. 지역개발계획: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낙후지역 또는 거점지역 등과 그 인근 지역을 종합적·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5.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수립하는 지역계획 <p>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역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p>
제19조2 (국토계획평 가의 대상 및 기준)	<p>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장기적·지침적 성격의 국토계획을 대상으로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 경쟁력 있는 국토여건의 조성 및 환경친화적인 국토관리 측면에서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지를 평가(이하 "국토계획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p> <p>② 국토계획평가의 기준은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제4조의2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국토관리의 기본 이념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계획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국토모니터링 결과를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p>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서울시 한강공원 체육시설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 연구에 관한 상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검토한다.

〈표 2-3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구분	내용
<p>제76조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 등)</p>	<p>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②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p> <p>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해당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의 지정목적에 적합하여야 한다.</p> <p>④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후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은 제1항과 제2항에 맞아야 한다.</p> <p>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1. 제3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취약지구에서는 취약지구의 지정목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p> <p>1의2. 제37조제1항제7호에 따른 개발진흥지구에서는 개발진흥지구의 지정목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p> <p>1의3. 제37조제1항제9호에 따른 복합용도지구에서는 복합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p> <p>2. 「산림법」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2조제8항에 따른 농림지역에서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3.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또는 초지인 경우에는 각각 「농지법」, 「산지관리법」 또는 「초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4.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지정문화재 또는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보호구역인 경우에는 각각 「자연공원법」, 「수도법」 또는 「문화재보호법」 또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5.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인 경우에는 「수산자원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⑥ 보전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환경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농지 보전, 자연환경 보전, 해양환경 보전 또는 산림 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지법」, 「자연환경보전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법에 따른 제한의 취지와 형평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p>
<p>제77조 (용도지역의 건폐율)</p>	<p>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p> <p>2. 관리지역 가. 보전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p>
<p>제78조 (용도지역의 용적률)</p>	<p>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p> <p>2. 관리지역 가. 보전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나. 생산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계획관리지역: 100퍼센트 이하</p> <p>3. 농림지역 80퍼센트 이하</p>

다) 건축법

- 건축물의 대지·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표 2-32〉 건축법

구분	내용
제10조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	<p>①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p> <p>⑥ 제4항에 따른 사전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협의를 한 것으로 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2. 「산지관리법」 제14조와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다만, 보전산지인 경우에는 도시지역만 해당된다. 3. 「농지법」 제34조, 제35조 및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신고 및 협의 4.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제42조 (대지의 조경)	<p>①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조경이 필요하지 아니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옥상 조경 등 대통령령으로 따로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p> <p>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식재(植栽) 기준, 조경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옥상 조경의 방법 등 조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p>
제44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p>①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에 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건축물의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 <p>② 건축물의 대지가 접하는 도로의 너비, 대지가 도로에 접하는 부분의 길이, 그 밖에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건축법 시행령 제27조 (대지의 조경)	<p>①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자연환경보전지역·농림지역 또는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제외한다)의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제57조(대 규모 건축물의 방화벽 등)	<p>①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방화벽으로 구획하되, 각 구획된 바닥면적의 합계는 1천 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한다.</p>

라)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서울특별시는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를 제정하였다.

〈표 2-33〉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구분	내용
제24조 (대지의 조경)	<p>①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이하 "조경면적"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2.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5.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54조제3항에 따른 학교이적지 안의 건축물 :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 <p>④ 영 제27조제1항제5호 및 제10호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4. 「주차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차전용건축물
제26조 (공개 공지 등의 확보)	<p>① 영 제2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개 공지(空地: 공터) 또는 공개 공간(이하 "공개 공지 등"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하는 대상건축물 및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상건축물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바. 운동시설 2. 면적 :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확보하여야 하는 공개 공지 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일반인 출입이 부분적으로 제한되는 공항시설 등에 대하여는 그 출입이 제한되는 부분의 면적 제외)에 대한 다음 각 목의 비율이상으로 한다. 다만, 영 제31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건축선 후퇴부분의 면적은 공개공지 등의 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필로티구조로 구획되거나 제2항제6호에 따라 지하에 설치된 부분의 면적은 2분의 1로 한정하여 공개공지 등의 면적으로 산입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제1호에 따른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 대지면적의 5퍼센트 나. 제1호에 따른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대지면적의 7퍼센트 다. 제1호에 따른 바닥면적의 합계가 3만제곱미터 이상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p>② 영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공개공지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조경·벤치·파고라·시계탑·분수·야외무대(지붕 등 그 밖에 시설물의 설치를 수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한정한다)·소규모 공중화장실(33제곱미터미만으로 허가권자와 건축주가 협의된 경우로 한정한다) 등 다종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 7. 제1호부터 제4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법 제43조에서 정하는 공개공지 등으로서 기후 여건 등을 고려해 건축물 내부공간을 활용하여 조성되는 공개공간(이하 "실내형 공개공간"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일반인의 접근이 편리하고 다수 공중이 이용가능한 공간으로 설치 <p>③ 영 제27조의2제4항에 따른 건축기준의 완화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용적률의 완화 :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용적률 이하. $[1 + (\text{공개공지 등 면적} / \text{대지면적})] \times \text{「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55조에 따른 용적률}$ 2. 건축물 높이의 제한 완화 :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높이 이하 $[1 + (\text{공개공지 등 면적} / \text{대지면적})] \times \text{법 제60조에 따른 높이제한 기준}$ <p>⑤ 영 제27조의2제6항에 따라 공개공지 등에는 연간 45일의 범위 내에서 신고 후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관측활동을 할 수 있다.</p>

마) 문화재보호법

-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를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표 2-34〉 문화재보호법

조항	관련 내용
제3조 (문화재보호의 기본원칙)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은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제83조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	① 문화재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재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지정문화재나 그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 건물, 나무, 대나무, 그 밖의 공작물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收用)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4. 유사사례 검토

가. 해외사례

1) 수변 문화지구(싱가폴 리버)

- 수변 문화지구(싱가폴 리버)는 1970년대 산업과 물류변화에 대응 못하고 쇠락의 길을 걸었던 산업도시에서 ‘post-산업’공유가치 아래 수변공간에 문화를 접목하여 도시의 품격을 높이고, 관광 자원화를 위한 문화시설 도입과 환경개선을 중심으로 공공과 민간 공동투자와 파트너십을 중심으로 추진하였고, 구겐하임 박물관 등 문화시설도입과 서비스산업, 관광산업 등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이루며 이미지 변화로 재탄생하였다.
- 수변공간에 문화를 접목한 관광 자원화로 아반도이바라의 ‘네리비온’ 강 주변을 시민들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조성하였고, 문화시설 도입과 환경개선을 중심으로 추진하였으며 공공과 민간의 공동투자와 파트너십을 통한 도시의 품격을 높이고자 하였다.
- 또한, 공공시설 인접 배치로 업무·문화·관광시설을 활용에 따른 시민들의 일상적 접근, 관광객의 수변공간 접근과 이용을 극대화 하기위한 도시 어메니티(수변의 야간경관, 가로예술품 설치, 금요일~일요일 오후7시~11시까지 건물내부

조명 장려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등 수변공간과 인근시설이 자연스럽게 연결 되도록 구상하여 유동인구가 늘어나도록 하여 도심부 내 수변공간 제공 및 관광기능 활성화로 대표적인 랜드마크로 부상하였다.

〈그림 2-13〉 수변 문화지구(싱카폴 리버)



2) 역사·문화지구(스페인 빌바오:Bilbao)

- 역사·문화지구(스페인 빌바오)는 수변공간이라는 특성과 문화공간 이미지를 접목한 가장 성공적인 모델로 역사·문화환경을 활용한 경관 랜드마크 조성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 스페인 빌바오는 스페인 북부에 있는 자치 공동체인 바스크 지방의 중심 도시이며, 비스케이만에 인접한 인구 35만 명의 이 소도시로 규모는 작지만 20세기 중반까지 스페인에서 가장 부유한 공업 도시 중 하나 이었으며 풍부한 철광석 매장량과 해상교통의 요충지라는 지리적 이점 덕분에 무역과 철강, 조선 등의 산업이 발달해 바르셀로나에 이어 스페인에서 두 번째로 큰 공업 도시였다.
- 1970년대 말부터 전 세계적으로 중공업이 쇠퇴하면서 실업자가 폭증하고 도시를 떠나는 사람들이 줄을 이었으며, 외부에서 빌바오에 진출한 기업들이 철수하며 경제가 붕괴되자 빌바오 시민들은 과거 도시의 영광을 견인했던 철에 대한 관점을 ‘산업’에서 ‘문화’로 이동시켰고, 문화라는 장치를 통해 도시를 재생시키는 동시에 아름답고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 전 세계 여행자들이 찾고 싶은 곳, 시민들이 살기 좋은 곳으로 탈바꿈을 하여 산업도시에서 ‘Post-산업’도시로 이미지 변화를 시도하였다.
- 수변공간에 문화를 접목하여 도시 품격을 높이고 관광 자원화를 위한 아반도이바라의 ‘네리비온’ 강 주변을 시민들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조성하였으며 기존 제

련소의 리모델링과 기존부두시설의 외곽이동, 주요교통수단의 개선, 네르비온강의 환경개선, 첨단 기술단지 등을 유치하였다.

- 또한, 공공 및 민간공동투자와 파트너십을 통한 교통망 개선, 주거지 환경개선, 기술인력 개발, 문화인프라 확충과 동시에 문화시설(구겐하임 박물관)도입으로 서비스 및 관광산업으로 연간 100만 명의 관광객과 년 1,000억의 수익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4천개의 창출,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으로 더 나은 삶의 질을 제공하고 있다.

〈그림 2-14〉 스페인 빌바오 변화 전과 변화 후



3) 자연·생태복원지구(동경 리버시티21)

- 자연·생태복원지구(동경 리버시티21)은 동경 스미다강 하구부의 삼각주에 위치한 창고, 공장 부지의 재생과정에서 새롭게 수변주거지역을 재생한 사례로 동경도의 동쪽 저지대의 서쪽으로 흐르는 스미다강은 도교를 대표하는 강이며, 스미다강 하구부에는 자연발생적인 삼각주가 형성되었고, 스미다강이 본류와 지류의 두 갈래로 나뉘는 곳에 위치하고 있어 재개발 시 이러한 특색을 살리기 위해 수변공간을 활용한 주거단지로 계획하였다.
- 메이지 시대 이후 이용되어 온 창고와 공장 등의 건조물에 대해 기능 저하, 산업쇠퇴 등에 따른 용도전환의 필요성이 요구되었고, 도교를 국제적인 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도심부의 새로운 역할부여 필요에 따라 기존 공장, 창고 등의 적지를 활용한 업무시설, 공공시설, 주거시설의 정비를 위한 개발사업으로 진행하였다.
- 하천의 특성을 반영한 공간계획으로 각 구역별로 단지의 중앙 부분에 수변 연계형 공원 및 오픈 스페이스를 공개공지로 조성하고, 하천구역 선을 따라 제방벽이 아닌 보행로 및 가로수를 설치하여 수변의 개방감을 확보할 뿐 아니라 실제 주민들의 보행·산책·운동 가로로 활용하였다.
- 본류쪽 수변공간은 인공형 제방으로 조성하여 일본 전통적 돌담 등 역사·문화적 수변공간을 조성 하였으며, 기존 콘크리트 방조제가 도시와 하천을 분리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환경사제방에 의한 치수 안정성 및 접근성과 개방감을 확보하였다.

- 또한, 지류쪽 수변공간은 자연형 환경사제방으로 넓은 활용지를 녹지화, 공원화 및 다목적 여가 공간으로 조성하여 수변공간이라는 특성과 문화 공간 이미지를 접목한 가장 성공적인 모델로 평가된다.

〈그림 2-15〉 동경 리버시티21 변화 전과 변화 후



나. 국내사례

1) 구미-낙동강체육공원

- 천연잔디 필드와 몬도 트랙이 갖춰진 경기장으로 2009년 3월 착공하여 2012년 5월 준공되었으며 도심과 가까운 하천둔치에 산책로, 체육시설, 생태습지 등 친수와 복원을 병행하여 조성한 수변 휴식공간이다.
- 위치: 구미시 고아읍 괴평리~지산동 일원
- 규모: 약 64만평
- 총사업비: 350억원
- 주요시설: 48개 경기장(종합경기장 1, 축구장 10, 야구장 2, 풋살장 5, 족구장 10, 배드민턴 10, 게이트볼장 4, 농구장 5, 인라인스케이트장 1) 설치
- 운영 및 관리: 구미시 체육회
- 경상북도 구미시는 조례 제 1552호로 ‘구미낙동강체육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이다.

〈그림 2-16〉 구미-낙동강체육공원 체육시설



2) 부산-온천천 시민공원

- 부산광역시의 동래구·금정구·연제구에 흐르는 온천천 강변을 따라 조성되어 있는 공원으로 생태계 학습 교육장으로 활용하는 한편,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1997년부터 2005년까지 자연형 하천 조성사업을 시작하여 자연형 친수 공간·자연 학습장 구간·문화 체육시설 구간의 3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특성화하고 식물 경관, 조명·벤치, 체력 단련 시설, 등을 조성하여 2005년에 개장하였다.
- 위치: 부산광역시의 동래구·금정구·연제구 온천천 일원
- 규모: 온천교에서 안락교 사이 5km
- 주요시설: 폭 11m·길이 200m의 인라인스케이트장, 폭 17m·길이 30m의 농구장, 폭 8m·길이 17m의 족구장, 폭 8.1m·길이 17.4m의 배드민턴장 및 8개소의 체육시설
- 운영 및 관리: 금정구·동래구·연제구에서 각 지역을 연계하여 관리하고 있다.

〈그림 2-17〉 부산-온천천 시민공원 체육시설



3) 부산-삼락강변공원

- 부산 시민들에게 운동경기나 야외활동 등 체육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배양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낙동대교 아래의 낙동강 둔치 좌우측으로 조성하였다.
- 위치: 부산광역시 사상구 삼락동 일원
- 규모: 142만여평
- 주요시설: 축구장 5면, 야구장 7면, 농구장 6면, 족구장 9면, 테니스장 15면, 배구장 1면, 게이트볼장 9면, X게임장 2면, 인라인스케이트장 3면, 럭비 구장 1면, 그라운드 골프장 1면, 파크 골프장 1면, 싸이클 연습장 1면, 국궁장 1면 등의 체육시설이 있다.
- 운영 및 관리: 부산광역시 낙동강관리본부

〈그림 2-18〉 부산-삼락강변체육공원 주요시설



4) 시사점

- 국내 하천구역에서의 수변공원은 하천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그 부속기관인 지방국토관리청 또는 지자체 및 위탁기관에서 운영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하천법 이외의 다양한 개별법에 따라 조성된 수변공원의 시설물들은 각 개별법 및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유지되고 있다.
- 중앙부처의 수변공원 관리 주체는 각각의 소관 업무에 따라 국토교통부,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 나뉘며, 실질적인 운영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지자체도 명칭만 다를 뿐 하천과, 방재과, 환경과, 산림공원과, 복지과, 체육시설과 등으로 관리 주체가 다양하게 설정되어 있다.
- 수변공원 내에서도 시설물(진입로, 자전거 도로, 산책로, 문화재 등) 또는 공간

(제외지, 제내지, 제방, 섬 등) 구성에 따라 관리 주체가 상이하여 전체적인 통합관리가 어렵고, 이러한 이유로 수변공원의 시설물이 노후화되거나 파손되어 재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하천법 제59조에 따르면 하천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하천에 관한 유지보수비는 국고의 부담으로 하고, 지방하천에 관한 것은 해당 시·도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으로 법제화되어있다.

5. 한강공원관련 빅데이터 분석

가. 언론에 비친 한강공원 빅데이터 분석

- 한강공원 체육시설의 활성화방안 연구를 위해 언론에 비춰진 한강공원 기사를 빅데이터 기법으로 분석하여 한강공원의 변화와 미래 발전상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 빅데이터 분석을 위해 2012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최근 10년간의 중앙일간지 11개와 주요경제지 8개 언론매체의 뉴스 기사를 공공 뉴스 아카이브인 빅카인즈(<https://www.bigkinds.or.kr>) 시스템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 키워드 분석을 위해 네이버와 다음, 구글 등의 신문기사 제목과 본문 내용을 사전에 살펴보았다. 이는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을 배제하고 연구주제의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 ‘한강사업본부’ 및 ‘한강관리사업소’로 검색된 3,995건의 기사 중 ‘인사’와 관련된 뉴스 등 데이터 전처리를 통해 최종적으로 3,575건의 뉴스 기사를 분석하였다.

1) 관계성 분석

- 뉴스 검색을 통해 추출된 인물, 장소, 기관, 키워드 등의 개체명 사이의 연결 관계를 네트워크 형태의 시각화를 위해 상위 100건의 정확도 높은 뉴스로 SSVM¹⁸⁾을 적용하여 관계도 분석을 하였다.

18) 검색 뉴스 본문에 대해 형태소 분석을 통한 명사 상당어구를 추출하고 그 명사 상당어구에 개체명 분석 알고리즘(Structured SVM(Support Vector Machine))을 적용하여 개체명을 추출하는 방식. 이때 개체명의 관련 기사 건수를 고려해 의미적 유사도와 빈도수가 높은 키워드 순(분석기사 건수 내 빈도수가 높은 키워드 순)으로 가중치를 부여함.

- 특정 키워드와 동시에 발생한 키워드의 발생빈도와 중요도를 계산해 연관키워드를 추출하는 방식인 토픽랭크(Topic Rank)알고리즘을 활용해 키워드간 연관성을 분석하여 워드클라우드로 제시하였다¹⁹⁾.
- 장소 개체명중 전 기간에 걸쳐 ‘여의도’는 한강공원에서 가장 중심적인 위상과 역할을 하고 있어 검색어 가중치가 높게 나타났다.
- 기관 중에서는 ‘서울시’의 가중치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한강공원 관련 개발 및 정책, 프로그램 등 조성 주체로서 매우 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 연관 키워드로는 ‘코로나 19’가 가중치가 높았으며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한강공원이 일시적으로 통제되었기 때문이며 ‘공무원’은 한강공원의 정책 수립과 유지관리 등의 실행자로서 중심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림 2-19〉 언론에 비친 한강공원 체육시설관련 뉴스 데이터 관계성 분석

장소	키워드	기관	인물
화성시 용산구 영등포구 파리 방화동 마포구 하남시 성동구 프랑스 일본 양화동 유럽 망원동 강서구 잠수교 강서 강남 일제 당인동 부산 수도권 광진구 중국 러시아 서울특별시 양평동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페이스북 수영장 2020 한강공명 2018 한강공명 보금자리 아이디 코로나 공공안전관 총무부장 본부장 감사담당관 문화홍보 대학생 홍보대사 코로나19 부서장 경찰관 공무원 개그맨 홍보대사 갤러리 프로그램 낚시꾼 공원부장 한강공명 여름축제 2016 한강공명 시민기획 대학생 2016 한강공명 여름축제 2018 한강공명 시민기획 예술가 2021 한강공명 여름축제 한강축제 SK이노베이션 건설산업기본법 거리예술가	영등포구청 국토교통위원회 국립산림과학원 환경부 뉴시스 한창 자원 해양수산부 서울시 애플 블랙야크 경찰청 더불어민주당 금빛 서울특별시의회 대상 코디 성동경찰서 푸드뱅크 감사위원회의 남양주경찰서 새누리당 서울대학교 서울지방국세청	최진석 신정호 구자영 김인숙 오세훈 최정순 박기용 박원순 이광성 김태균 신용목 김동욱 이상국 오현정 조은미 이노근

2) 키워드 트렌드 분석

- 검색어와 관련된 뉴스 기사를 시계열 그래프로 나타내어 키워드 트렌드 분석을 실시하였다.
- 분석 기간의 검색어를 키워드로 하는 트렌드 추이를 연도별로 구분하고 추출 건수를 통해 트렌드의 사회적 배경과 관련 정책을 살펴보았다.
- 분석 기간을 최근 10년간으로 하여 2011년이 제외되었으나, 오세훈 시정의 민선 4기부터 민선 5기 오세훈 시정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한강르네상스 사업’으로 한강관련 뉴스가 많이 검색된다. 그러나 2011년 중도사퇴하자 박원순 시정에서 2011년 이후 한강 관련 기사는 점진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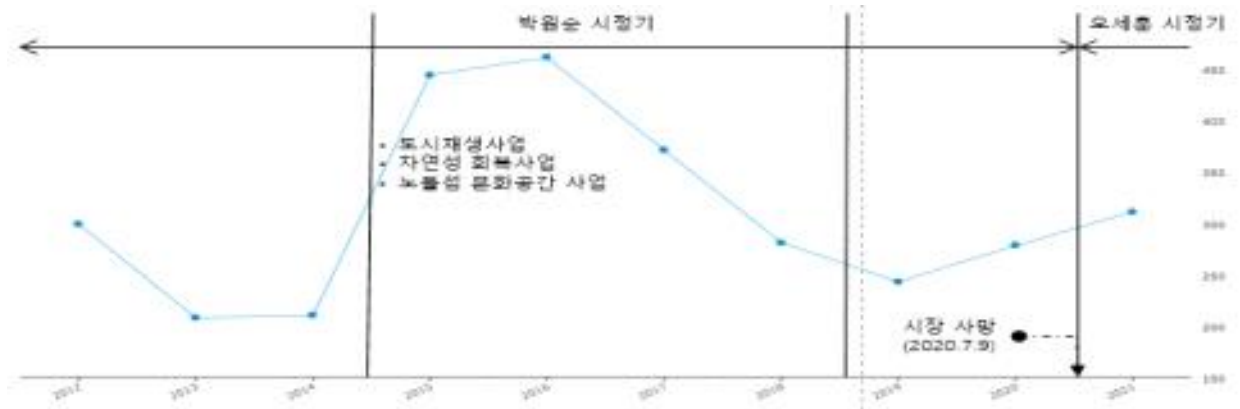
19) <https://www.bigkinds.or.kr>

- 그러다가 민선 6기 박원순 시장이 재임하면서 한강 관련 뉴스 기사가 급격히 상승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에는 신도시, 신시가지 위주의 도시 확장으로 상대적으로 낙후해 가는 기존 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도입하여 경제적·사회적·물리적으로 부흥시키는 도시재생사업이 서울시에 도입되었고 그 일환으로 ‘노들섬’ 조성 및 문화·레저·여가 프로그램이 실행되면서 한강공원 관련 뉴스 기사가 상승하였다.

〈표 2-35〉 연도별 키워드 추출건수

민선 5 기		박 원 순		민선 7 기		오 세 훈	
재임연도	추출건수	재임연도	추출건수	재임연도	추출건수	재임연도	추출건수
2012	315	2015	470	2019	282	2021	382
2013	221	2016	510	2020	345		
2014	221	2017	413				
		2018	308				
계	757		1,701		627		3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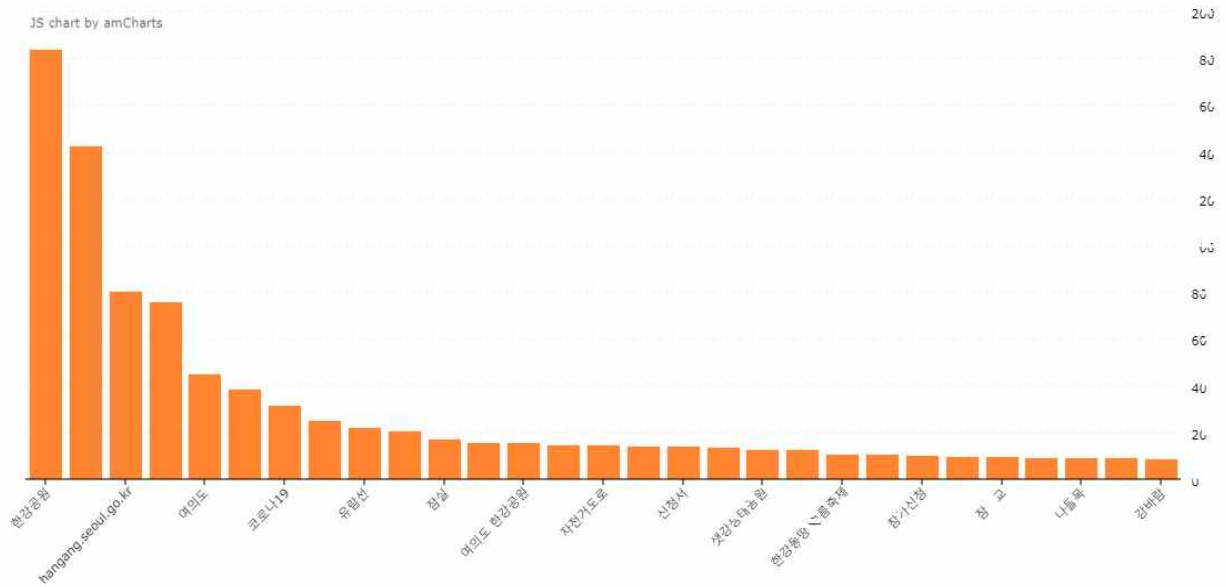
〈그림 2-20〉 연도별 한강관련 뉴스기사 키워드를 통해 본 추이변화와 주요정책



3) 연관어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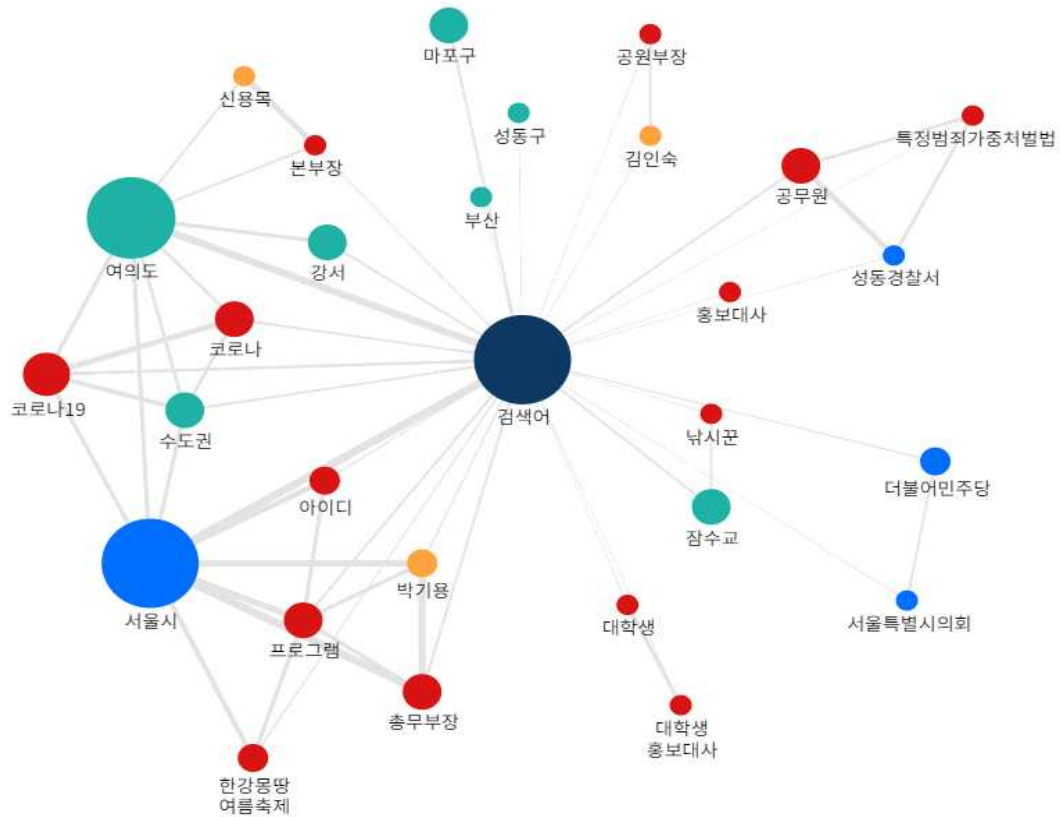
- 한강공원 체육시설의 현황과 활성화방안 연구를 위해 연관성이 높은 키워드에 가중치를 부여하고 이를 막대그래프로 시각화하여 제시하였다.
- 본 분석에서는 관련된 기사 검색 후, 정확도 순으로 상위 1,000건의 뉴스 내 키워드를 추출하였다.
- 한강공원에 대한 언론의 관심 정도를 시각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자료이다.

〈그림 2-21〉 연도별 뉴스 기사 추출 단어 빈도분석



- 연관어 분석결과, 장소는 전 분석 기간에서 ‘여의도’가 높은 빈도수로 나타나 한강 관련 키워드로의 위상과 중심장소로 검증되었다. 기관에 대한 키워드로는 ‘서울시’의 빈도수가 많았는데 한강과 관련된 정책, 개발, 환경보호, 한강 관련 프로그램 등 한강의 중심적 주체로서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 한강관련한 뉴스 기사 중 인물로는 한강사업본부의 본부장 빈도수가 많았는데 한강공원에 대한 기본계획수립과 운영·관리의 주체로서 실질적인 관리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 박원순 시정기인 민선 5~7기에는 한강공원과 관련하여 한강르네상스 정책의 실행과 유희부지를 활용한 다양한 여가·문화 공간 조성, 도시재생사업과의 연계, ‘한강숲 조성사업’, ‘마곡지구’ 개발사업 등을 통해 마포구, 강서구, 성동구의 기사 빈도가 많이 나타났다.

〈그림 2-22〉 연도별 뉴스 기사 추출 단어 연관어 분석



나. 소셜미디어에 비친 한강공원 분석

1) 소셜미디어와 텍스트분석

- 텍스트 분석은 대량의 텍스트로부터 가치를 가지는 정보를 파생하는 과정을 말하는데, 디지털 정보 대부분은 비정형 데이터라는 점에서 자연어 처리 기술 (Natural language processing)과 문서 처리 기술을 적용해 유용한 정보를 추출하고 가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비정형 텍스트 데이터에 내재한 가치를 분석하는 대표적인 빅데이터 분석 기법으로 텍스트마이닝, 오피니언마이닝(Opinion mining), 사회연결망분석 등이 있다²⁰⁾.
- 텍스트마이닝은 게시글, 댓글 등의 비정형 텍스트 데이터에서 사용자가 관심을

20) 김정숙, 빅 데이터 활용과 관련기술 고찰, 한국콘텐츠학회지 Vol.10, No.1, pp.34-40, 2012

나타내는 정보를 키워드의 수준이 아니라 맥락(Context)으로 분석하고 데이터 속에서 숨겨진 패턴을 발견함으로써 가치 있는 정보를 추출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텍스트마이닝은 텍스트 문치(전체 텍스트, 제목, 초록, 키워드 등)에서 텍스트를 자연어 처리와 형태소분석 기술을 통하여 정제하고, 발생 빈도나 확률을 분석하여 연계성을 파악함으로써 연구에 필요한 핵심단어를 추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²¹⁾²²⁾.

- 텍스트마이닝은 정보 검색, 기계 학습, 통계학, 자연어처리, 데이터마이닝 등 여러 학문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보다 고차원적인 방법으로 응용학문 분야와의 융합연구에 대한 필요성이 제안되고 있다²³⁾.
- 최근 학계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워드 클라우드 (Word Cloud) 분석은 텍스트 시각화 기법들 중 대표적인 방법으로, 텍스트와 같은 비정형 데이터를 그래프(원등)의 형태로 시각화해 준다. 워드 클라우드 분석의 주요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단어(키워드)의 출현 빈도에 따라 워드클라우드 그래프 내 단어(키워드)의 크기를 제시하여, 해당 키워드의 빈도를 직관적으로 알아차릴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장점으로 인하여 키워드 분석 시에 많이 적용되고 있으며 대표적인 사례로써 SNS(트위터, 페이스북 등)의 키워드분석이 있다²⁴⁾.

2) 소셜미디어 빅데이터 분석

- 소셜미디어를 통한 빅데이터 수집을 위해 'Textom ver5.0'과 'R'프로그램을 활용하였으며, 소셜미디어를 분석하기 위한 시간적 범위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4월 30일까지로 하였다. 그리고 검색키워드는 '한강공원 체육시설', '한강', '한강 체육시설', '한강공원'으로 설정하였다.
- 검색대상은 네이버(블로그, 카페, 뉴스, 웹문서, 지식IN, 학술정보 전체), 다음(블로그, 카페, 뉴스, 웹문서), 구글(웹문서, 뉴스, 페이스북), 유튜브로 한정하였으며, 총 19.25메가바이트의 단어를 추출하였으며 전처리 과정을 통하여 14,627개의 단어로 정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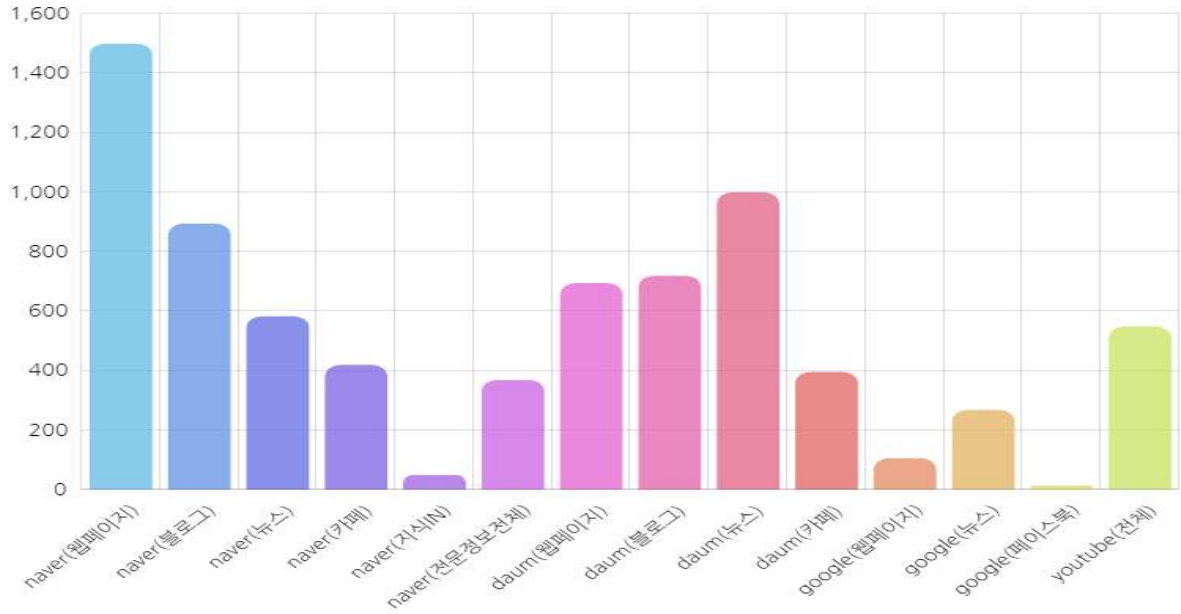
21) 전채남외, 빅데이터 분석의 기술마케팅 활용에 관한 연구: 잠재 수요기업 발굴을 중심으로, 마케팅논집 Vol.21, No.2, pp.181-203, 2013

22) Callon, M. et al, From translations to problematic networks: An introduction to co-word analysis, Social science information Vol.22, No.2, pp.191-235, 1983

23) 정근하, 텍스트마이닝과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한 미래예측 방법 연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보고서, pp.13-14,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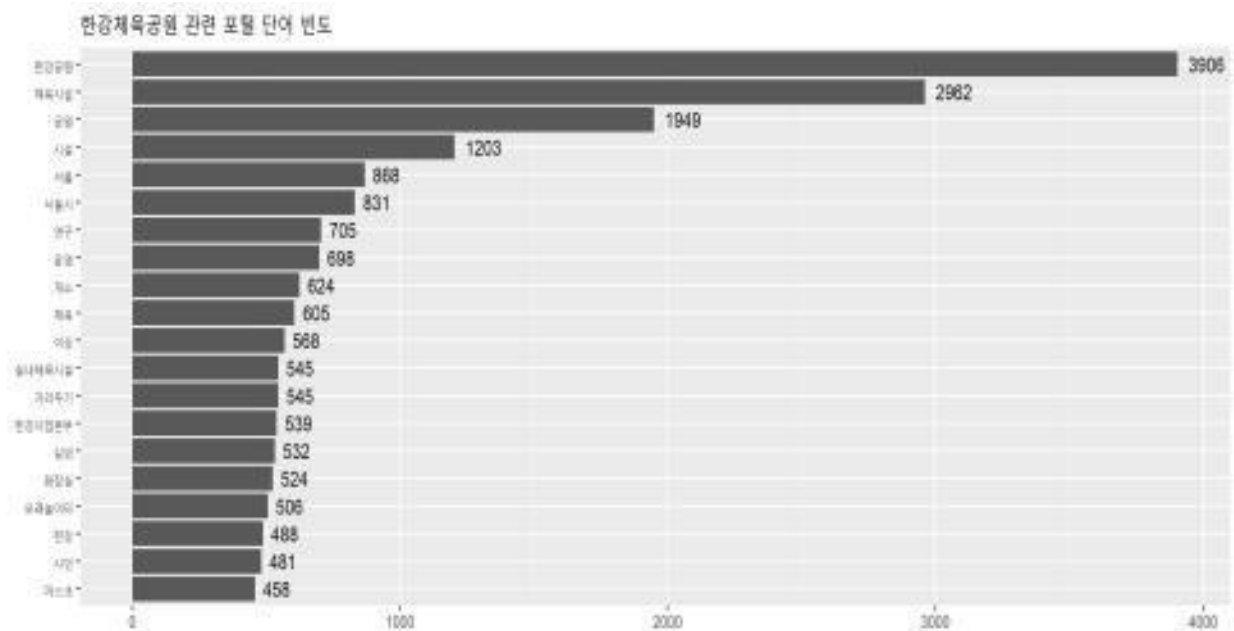
24) 이은영외, 워드 클라우드 기법을 이용한 최근 소비자학 연구 트렌드 분석, vol.37, no.1, pp. 1-7, 2019

〈그림 2-23〉 소셜미디어 빅데이터 정보 수집량



- 최종 데이터를 통해 자주 사용된 단어를 보면 글쓴이가 무엇을 강조하였는지 알 수 있기때문에 단어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전체 단어 중 빈도가 가장 많은 단어는 20개로 한정하여 추출하였다. 빈도수는 한강공원, 체육시설, 공원, 시설, 서울, 서울시, 연구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그림 2-24〉 한강체육공원 관련 포털 단어 빈도분석



III. 한강공원 체육시설 현황

- 본 장에서는 한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시민 생활과 관광에 기여하기 위해 2007년 1월 2일에 서울시의 사업소로 시작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는 '한강사업본부'의 한강관련 운영 및 관리와 사업추진 및 체육시설에 대한 조사를 수행한다.

1. 운영 및 관리현황

- 한강공원 체육시설은 한강사업본부에서 중점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고 있으며 중앙조직은 4부 17과로 구성되고 각 한강공원별로 11곳의 안내센터를 구축하고 있다.

가. 운영현황

1) 조직 및 인력현황

- 각 부서별 주요업무는 다음과 같다.
- 총무부: 인사·감사·조직·상훈·교육훈련·급여·후생 및 복무
세외수입 총괄
예산·결산 및 계약·지출·물품관리 등 회계 및 재정
본부 및 안내센터 청사 관리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심사평가의 총괄
시의회, 국회 등 대외기관 협력 및 지원
한강공원 홍보 총괄 및 이용만족도 조사 분석
시민중심의 한강공원관리를 위한 한강커뮤니티 활성화
한강 문화·관광·역사 프로그램 기획 및 유치
한강 자전거 이용활성화 및 개선계획 수립·시행
한강협력사업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등
- 운영부: 안내센터 지도·감독·운영 및 공공안전관·사회복무요원 복무지도
공원 불법행위·행락질서 지도·단속 및 환경순찰

매점 등 공원이용시설 관리

하천점용허가(장소 사용승인 포함) 및 점용료 부과징수

유선업 인허가, 수상이용시설의 설치, 수상이용시설과 관련된 부대시설(육상포함)의 지도감독·관리

수상택시 및 도선업의 인허가 및 관리

세빛섬·시민요트나루 운영 등

공원 내 청소업무(환경정비원 복무관리 포함)

한강 오염원 지도 단속 및 방재,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등

○ 공원부: 한강 자연성 회복분야 사업 총괄

하천 생태계 복원 및 생물서식 환경 개선

공원여가정책 기획 및 이행

생태학습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생태공원 유지관리

녹지조성 및 운동·편의·놀이시설 설치·유지관리

수영장·주차장·운동시설 등 사용·수익 허가시설 운영·관리

난지캠핑장 운영 및 유지관리

○ 시설부: 하천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재난안전대책(풍수해, 제설) 계획수립 및 운영

각종 공원 시설물, 접근시설 등 설치 및 유지관리

공원 내 기계·전기 설치 및 보수

수중보 운영 및 유지관리

승강기 및 공원내 분수시설물 운영·유지관리 등

〈그림 3-1〉 한강사업본부 조직도



- 한강사업본부의 운영인력 정원은 227명이나 일시적 상황에 의해 228명이 고용된 것으로 확인된다.
- 일반직의 경우, 행정직 인원은 정원대비 부족하나 기술직과 관리·운영직은 정원 기준을 초과하여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표 3-1〉 한강사업본부 인력현황

정원/현원('22. 1. 31 기준)

구 분	합계	일 반 직			전문경력관	임기제
		행정직	기술직	관리운영직		
합 계	227/228	76/72	132/135	5/7	2/2	12/12
본부	179	43	117	5	2	12
안내센터	49	29	18	2	-	-

*현원 미포함자: 143명(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 1, 라급 5, 마급 34, 공공안전관 103)

출처: 한강사업본부(2022.2), 2022년 주요업무계획

2) 세입 및 세출 예산

- 최근 5개년의 세입은 연평균 8.74%씩 증가하고 있으며 재산임대수입은 5개년 평균수입금액의 73.46%의 세입을 차지하고 있으며,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은 연평균 -7%로 점차 금액이 낮아지고 있어 그 대상에 대한 계몽과 단속강화 등이 주요한 원인으로 추정된다.
-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금액도 -24.21%로 낮아져 한강사업본부의 경영개선 노력이 주요한 효과로 분석된다.

〈표 3-2〉 한강사업본부 최근 5개년 세입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연평균 증감률	
합 계	23,300	24,415	30,277	30,394	35,432	8.74	
세 외 수 입	23,296	24,411	30,273	30,390	35,431	8.75	
경 상 적	소 계	22,156	23,082	28,710	28,011	32,812	8.17
	재산임대수입	17,268	17,644	22,897	21,907	25,928	8.47
	사 용 료 수 입	4,776	5,301	5,616	5,969	6,723	7.08
	수 수 료 수 입	110	133	191	130	156	7.24
	이 자 수 입	2	3	5	5	5	20.11
임 시 적	소 계	1,140	1,329	1,562	2,102	2,260	14.67
	기 타 수 입	459	666	933	1,041	1,195	21.09
	지난년도수입	165	196	219	1,061	1,065	45.20
	과징금 및 과태료등	516	467	410	277	359	-7.00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4	4	4	4	1	-24.21	

〈그림 3-2〉 한강사업본부 최근 5개년 평균 세입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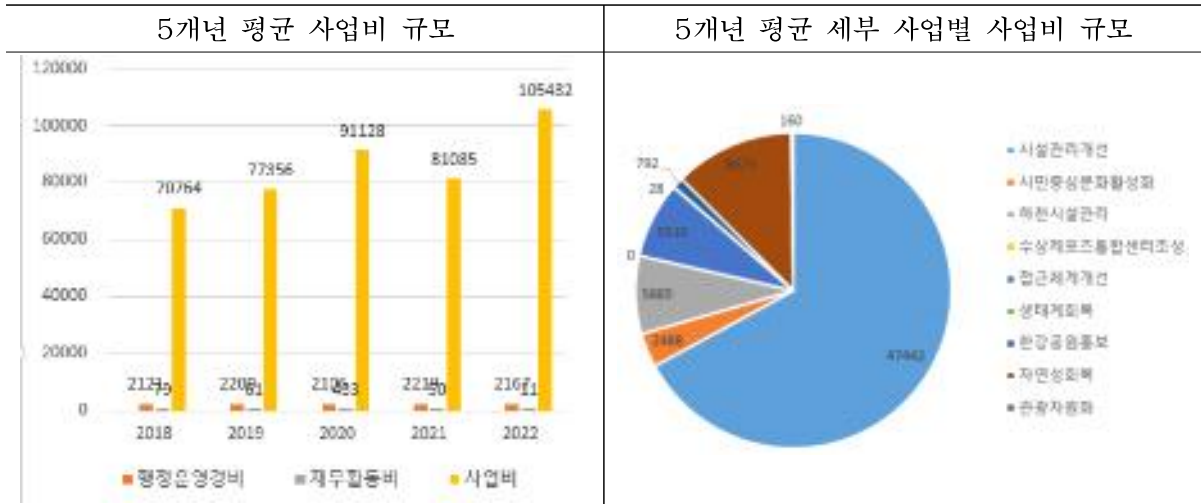
- 최근 5개년간 세출은 평균금액에서 사업비가 전체의 97.4%인 87,424백만원으로 지출 규모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행정운영경비는 2.47%인 2,163백만원, 재무활동비는 0.15%인 127백만원으로 분석되었다.
- 사업비는 시설관리개선사업비가 전체의 65.5%인 53,218백만원이 사용되었으며, 접근체계개선사업비가 12.77%인 10,873백만원, 자연성회복사업비가 10.43%인 8,881백만원, 하천시설관리사업비가 5.95%인 5,066백만원, 시민중심문화활성화사업비가 3.31%인 2,820백만원, 관광자원화사업비가 0.18%인 156억원, 수상레포츠통합센터조성사업비가 최근 3년간 15,191백만원이 투자되었다.
- 그러나 한강공원홍보비가 5년 평균 1,060백만원(전체 사업비 중 1.24%)이 집행되고 생태계회복사업비(전체 사업비 중 0.05%)는 41백만원이 집행되어 대조를 이루고있다.

〈표 3-3〉 한강사업본부 최근 5개년 세출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연평균 증감률
합 계	72,963	79,617	93,666	83,264	107,610	8.08
행정운영경비	2,121	2,200	2,106	2,219	2,167	0.43
재무활동비	79	61	433	50	11	-32.5
사업비	70,764	77,356	91,128	81,085	105,432	8.30
시설관리개선	47,442	42,918	57,327	50,456	67,947	7.45
시민중심문화활성화	2,488	3,202	3,477	2,452	2,483	-0.04
하천시설관리	5,665	5,900	5,524	3,583	4,656	-3.85
수상레포츠통합센터조성	0	0	4,174	4,584	6,433	15.51
접근체계개선	5,510	7,605	9,277	14,256	17,717	26.31
생태계회복	28	88	25	25	37	5.73
한강공원홍보	792	1,393	1,393	911	809	0.43
자연성회복	8,679	16,082	9,763	4,674	5,209	-9.71
관광자원화	160	169	168	144	141	-2.50

〈그림 3-3〉 한강사업본부 최근 5개년 평균 세출현황



나. 관리현황

- 한강사업본부의 한강 관리구역은 서울시 행정구역 전체면적 605.21km²의 6.6%에 해당하는 39.9km²면적으로 강동구 강일동에서 강서구 개화동까지의 연장 41.5 km²가 해당되고 이 중 수역은 30.8km²이며, 둔치는 9.1km²(강북 3.0km², 강남 6.1km²)이다.
- 한강공원은 총 11개 공원으로 강북이 뚝섬, 이촌, 망원, 난지지구로 4개 지구이며 강남은 광나루, 잠실, 잠원, 반포, 여의도, 양화, 강서의 7개 지구로 관리되고 있다.

〈그림 3-4〉 한강사업본부 한강관리 구역



출처: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한강공원 보전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2018

- 한강공원 시설물은 접근시설, 편의시설, 운동시설, 녹지대 등의 공원시설과 유·도선장 등의 수상시설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접근시설은 2018년 전체 239개에서 2022년 전체 255개로 1.63% 증가하였고 나들목과 보도육교, 교량접속시설, 승강기 위주로 증가하였다.

〈표 3-4〉 한강공원 최근 5개년 접근시설 현황

(단위: 개, %)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증감률
계	239	241	247	255	255	1.63
나들목	56	56	57	58	60	1.74
보도육교	13	13	13	14	14	1.87
교량접속시설	-	33	36	40	44	10.00
승강기	34	35	37	39	40	4.15
제방사면시설	-	103	103	103	96	-1.74
계단	47	-	-	-	-	-100
경사로	19	-	-	-	-	-100
도로진출입로	69	-	-	-	-	-100
초록길	1	1	1	1	1	0

- 편의시설은 그늘막이 2018년 439개에서 2022년 983개로 연평균 22.33% 증가하였으며, 화장실은 143개에서 126개로 연평균 3.11%가 감소하였다.

- 전체적으로는 연평균 2.46%가 증가하였다.

〈표 3-5〉 한강공원 최근 5개년 편의시설 현황

(단위: 개, %)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증감률
계	4,649	4,580	4,661	4,682	5,123	2.46
매점	29	29	28	28	28	-0.87
주차장	43	43	43	43	43	0
공중전화	9	9	9	9	9	0
화장실	143	129	131	125	126	-3.11
음수대	157	158	159	159	161	0.63
그늘막	439	590	590	580	983	22.33
의자	3,799	3,590	3,669	3,706	3,741	-0.38
공원안내도	19	19	19	19	19	0
전망카페·쉼터	10	12	12	12	12	4.66
전망문화콤플렉스(서울생각마루)	1	1	1	1	1	0

- 운동시설은 배구장 2.35%, 농구장 3.9%, 족구장 2.25%가 연평균 감소하였으나 수영·물놀이장 및 씨름장 등의 그 외 시설이 33.75%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3-6〉 한강공원 최근 5개년 체육시설 현황

(단위: 개,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증감률
계	164	158	151	261	258	11.99
축구장	12	12	12	12	12	0
배구장	11	11	10	10	10	-2.35
농구장	34	35	29	29	29	-3.9
테니스장	32	32	32	32	32	0
배드민턴장	24	24	24	24	24	0
게이트볼장	18	18	18	18	18	0
족구장	23	24	24	25	21	-2.25
야외체력단련장				80	80	0
그 외 ²⁵⁾	10	2	2	31	32	33.75

〈그림 3-5〉 한강사업본부 최근 5개년 체육시설 현황



- 녹지대는 자연학습장, 잔디, 갈대 등 7종 5,078천㎡이다.
- 수상시설은 선착장이 전체적으로 연평균 0.91% 감소하였으나 기타 수상시설은 2020년 서울함 전시시설이 추가되었다.

25) 2018년 수영·물놀이장 8곳, 2019~2020년 씨름장 2곳 등

〈표 3-7〉 한강공원 최근 5개년 수상시설 현황

							(단위: 개, %)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증감률
계		57	57	56	57	57	0
유 선 장	26)	19	19	19	19	19	0
도 선 장	27)	1	1	1	1	1	0
협 회 · 단 체		5	5	5	5	5	0
선 착 장		28	28	26	27	27	-0.91
기 타		4	4	5	5	5	5.74

2022년 1월 31일 기준, 선착장 27(시 12, 수상택시 9, 소방서 4, 정부 2), 기타 5(세빛섬, 여의도 물빛무대, 월드컵 분수대, 낚시전용공간, 서울함)

1) 광나루한강공원 체육시설 현황

- 강동대교에서 잠실철교 사이에 위치하고 서울시에서는 유일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뱃놀이와 각종 수상 레저활동이 금지되어 있다.

〈그림 3-6〉 광나루한강공원 체육시설 현황

		면 적	1,544,810㎡
		길 이	12km
		체 육 시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구장 3 • 배구장 2 • 농구장 4 • 족구장 3 • 수영장 1 • 테니스장 1 • 인라인스케이팅광장 1 • 게이트볼장 2 • 야구장 2 • 스케이트보드장

2) 잠실한강공원 체육시설 현황

- 잠실철교에서 영동대교 사이 강변 남단에 위치하고 종합운동장과 연결되어 생활체육시설을 이용하기 편리한 장점이 있다.

〈그림 3-7〉 잠실한강공원 체육시설 현황

		면 적	539,071㎡
		길 이	4.8km
		체 육 시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구장 2 • 물놀이장 1 • 론볼링장 1 • 게이트볼장 1 • 비치발리볼장 1 • 족구장 1 • 농구장 1 • 배드민턴 1

26) 하천, 호소 또는 바다에서 어렵, 관광, 기타 유락을 위하여 선박을 대여하거나 유락하는 사람을 승선시키는 시설

27) 배가 달고 떠나는 일정한 곳

3) 뚝섬한강공원 체육시설 현황

- 한강공원이 조성되기 이전부터 ‘뚝섬유원지’라는 이름으로 더 익숙하며 윈드썰빙, 수상스키, 모터보트 등 수상스포츠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장소이다.



〈그림 3-8〉 뚝섬한강공원 체육시설 현황

		면적	825,000m ²	
		길이	11.5km	
체육시설		• 축구장 2	• 농구장 4	
		• 테니스장 1	• 족구장 2	
		• 수영장 1	• 게임장 1	
		• 씨름장 1		
		• 게이트볼장 4		
		• 배드민턴장 5		
		• 인공암벽장 1		

4) 잠원한강공원 체육시설 현황

- 공원 내부에 육상경기트랙과 수영장, 배구장, 단련장 등의 체육시설이 비교적 잘 갖추어져 있고 야간조명이 설치된 테니스장이 있어 늦은 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모터보트, 수상스키, 웨이크보드, 워터슬래드 등 수상스포츠가 가능하다.

〈그림 3-9〉 잠원한강공원 체육시설 현황

		면적	474,213m ²	
		길이	5.4km	
체육시설		• 축구장 1	배구장 2	
		• 농구장 4	테니스장 1	
		• 수영장 1	육상연습장 1	

5) 반포한강공원 체육시설 현황

- 반포대교(잠수교)를 중심으로 상류는 한남대교, 하류는 동작대교 사이 강변 남단에 위치하며 여의도와 잠원한강공원으로 연결되는 7.2km의 자전거도로는 산책로와 분리되어 자전거이용자와 보행자에게도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그림 3-10〉 반포한강공원 체육시설 현황

		면적	567,600m ²
		길이	7.2km
		체육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구장 1 • 농구장 3 • 배드민턴장 8

6) 이촌한강공원 체육시설 현황

- 중랑천교와 원효대교 사이 강변 북단의 한가운데 위치하며 자연성 회복사업으로 '논습지'를 조성하였다.

〈그림 3-11〉 이촌한강공원 체육시설 현황

		면적	922,185m ²
		길이	10.2km
		체육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구교육장 1 • 배구장 1 • 농구장 7 • 배드민턴장 1 • 인라인롤러스케이팅장 1 • 테니스장 1 • 축구장 1

7) 여의도한강공원 체육시설 현황

- 정치, 금융, 언론의 중심지인 여의도에 위치하며, 지하철과 버스등 대중교통으로 접근성이 좋아 사람들이 즐겨찾는 장소이며 직장인과 일반 시민들이 4계절 즐기는 명소로 축제와 다양한 행사들이 다채롭게 진행되는 곳이기도 하다.
- 특히, 봄꽃축제, 세계불꽃축제와 각종 공연 및 마라톤행사 등이 있다.



〈그림 3-12〉 여의도한강공원 체육시설 현황

		면적	1,487,374m ²
		길이	8.4km
		체육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구장 2 • 게이트볼장 2 • 인라인장 1 • 족구장 3 • 파크골프장 1

8) 양화한강공원 체육시설 현황

- 여의도 셋강하구부터 시작하는 한강공원으로 한강 남단에 위치하고 있다.

〈그림 3-13〉 양화한강공원 체육시설 현황

		면적	361,628m ²
		길이	5.9km
체육시설		• 축구장	1
		• 배구장	2
		• 농구장	2
		• 물놀이장	1
		• 씨름장	1

9) 망원한강공원 체육시설 현황

○ 원효대교와 성산대교 사이에 위치하고 수상에서는 뚝섬한강공원과 유사하게 윈드서핑, 수상스키, 모터보트 등 수상스포츠 활동이 가능한 곳이다.

〈그림 3-14〉 망원한강공원 체육시설 현황

		면적	422,347m ²
		길이	7.4km
체육시설		• 축구장	1
		• 배구장	2
		• 농구장	2
		• 족구장	1
		• 테니스장	1
		• 게이트볼장	2
		• 야구장	1
		• 수영장	

10) 난지한강공원 체육시설 현황

○ 한강북단 서쪽 끝에 위치하며 과거 쓰레기 매립지에서 2002년 월드컵을 계기로 갈대밭과 생태공원으로 변신하였다.


〈그림 3-15〉 난지한강공원 체육시설 현황

		면적	776,870m ²
		길이	4.02km
체육시설		• 풋살장	1
		• 농구장	1
		• 족구장	1
		• 야구장	2
		• 국궁장	1
		• 인라인장	1

11) 강서한강공원 체육시설 현황

○ 서울 서편의 가장 끝자리에 위치하며 다른 공원과는 다른 체육공원과 습지생태공원이 결합되어 있으며, 방화대교 하부, 가족피크닉장 앞, 행주대교 하부에는 체력단련기구 등이 갖추어져 있다.

〈그림 3-16〉 강서한강공원 체육시설 현황

	면적	1,035,463m ²
	길이	8.5km
체육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족구장 2 • 다목적 운동장 1 • 인공암벽장 1 	

12) 한강사업본부 공공체육시설 총괄현황

○ 한강공원 내 공공체육시설 집계표는 다음의 표와 같다.

〈표 3-8〉 한강사업본부 공공체육시설 총괄현황

(단위: 개소)

구분	합계	광나루	잠실	뚝섬	잠원	반포	이촌	여의도	양화	망월	난지	강서
축구장	12	3	-	2	1	1	1	2	1	1	-	-
테니스장	5	1	-	1	1	-	1	-	-	1	-	-
배구장	11	2	2	-	2	-	1	-	2	2	-	-
농구장	28	4	1	4	4	3	7		2	2	1	
족구장	13	3	1	2	-	-	-	3	-	1	1	2
수영장	4	1	-	1	1	-	-	-	-	1	-	-
야구장	5	2	-	-	-	-	-	-	-	1	2	-
게이트볼장	11	2	1	4	-	-	-	2	-	2	-	-
인라인스케이트광장	4	1	-	-	-	-	1	1	-	-	1	-
스케이트보드장	1	1	-	-	-	-	-	-	-	-	-	-
배드민턴장	15	-	1	5	-	8	1	-	-	-	-	-
파크골프장	1	-	-	-	-	-	-	1	-	-	-	-
씨름장	2	-	-	1	-	-	-	-	1	-	-	-
기타	12	-	3	2	1	-	1	-	1	-	2	2
시설합계	124	20	9	22	10	12	13	9	7	11	7	4

출처: 서울시, 2021한강공원 백서, 2022, 연구자 재작성

2. 사업추진체계

○ 한강공원의 운영·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한강사업본부와 서울시의 체육시설관리 사업소의 일반현황을 비교하여 공공체육시설관리의 적정성을 비교하였다.

가. 한강사업본부

1) 한강의 비전

○ 한강의 비전으로는 ‘시민이 만족하고 행복한 한강공원’으로 설정하고 있다.

2) 정책목표

○ 한강의 비전 실현을 위한 정책목표로는 ‘보전과 이용이 조화를 이루는 한강공원 관리’를 제시하고 있다.

3) 추진과제

○ 한강의 비전 실현을 위한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3개의 카테고리를 구성하여 매년 수정·보완하여 세부실천 과제를 제시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세부추진내용은 ‘한강의 자연성 회복’과 ‘자연녹지조성’, ‘경관 및 수질 개선’, ‘접근성 확충’, ‘수상 시설물 안전관리’ 등 주로 한강공원 전체에 대한 이용자 만족을 위해 추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021년과 2022년은 자전거 도로 구조개선과 정비를 업그레이드하여 보행자와 운동자의 안전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방역대책과 중대 재해 예방대책이 주요 실천과제에 포함됨에 따라 시민의 건강과 안전이 중요시되고 있다.

〈표 3-9〉 한강사업본부의 사업추진방향

년도	추진과제	세부추진내용	
2018	자연성이 회복되는 한강	• 한강 자연성 회복사업	• 한강숲등 자연녹지 조성
	안전하고 편리한 한강	• 한전한 공원이용 환경조성	• 쉽게 다가가는 한강
		• 청결하고 깨끗한 공원조성	• 시민이용편의시설 확충·정비
사계절 즐거운 한강	• 한강몽땅 여름축제	• 봄꽃축제 등 테마별 축제	
		• 관광활성화 및 볼거리·즐길거리	• 역사·문화·생태 프로그램 활성화
2019	건강한 한강	• 한강 숲·꽃길 조성	• 자연호안 및 생태군락지 조성
	행복한 한강	• 한강 경관 및 수질개선	• 여의샹강 생태환경 조성
		• 한강몽땅 등 다양한 축제	• 창작, 문화공간 조성·운영
안전한 한강	• 역사·문화프로그램 활성화	• 한강이용 편의시설 개선	
		• 한강 풍수해 등 재난대응	• 유도선 수상시설물 안전관리
		• 맑고 깨끗한 한강관리	• 한강 접근시설 확충·개선
2020	건강한 한강	• 한강의 자연성 회복	• 행복 꽃길, 꽃밭 조성
	가까운 한강	• 경관조망 및 생태군락지 조성	• 청소개선대책 지속 추진
		• 한강 접근체계 개선	• 한강 지역성 회복
안전한 한강	• 체험, 친수공간 조성	• 다양한 축제·행사 개최	
		•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 한강 스마트 관리시스템 구축
		• 한강 풍수해 재난 대응	• 수상시설물 안전관리
2021	행복한 한강	• 울창한 한강숲 조성	• 자연형 호안 복원
	편리한 한강	• 자연이 어우러진 친수공간 조성	• 한강을 즐기는 다양한 문화체험
		• 난지캠핑장 리모델링 운영개선	
안전한 한강	• 한강 보행환경 개선 추진	• 한강 접근체계 시설확충	
	• 자전거도로 구조개선 및 정비	• 주차장 관리운영 개선	
	• 시민밀접 운동 및 편의시설 정비		
	•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대책 추진	• 풍수해 개선대책	
	• 한강맞춤형 코로나19 방역	• 청결하고 깨끗한 한강관리	
	• 유도선 등 수상시설물 안전관리		
2022	편안한 한강	• 접근시설 확충개선	• 휴게시설 확충 및 주차장 개선
	안전한 한강	• 자전거도로 업그레이드	• 편의시설 개선 및 확충
		• 한강공원 풍수해 대책	• 한강 맞춤형 방역대책
행복한 한강	• 중대재해 예방대책	• 안전시설 설치 및 조명개선	
	• 수상시설물 등 안전관리	• 시설물 안전점검 및 정비	
	• 시민 참여 한강공원 관리		
	• 울창한 한강숲 조성	• 자연형 호안 복원	
	• 친수 생태 체험공간 조성	• 역사전시관 및 테마공간 조성	
	• 일상 속 문화예술공간 운영	• 사계절 즐거운 한강축제 개최	

나. 서울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 서울시 관할 체육시설인 잠실종합운동장, 목동운동장, 효창운동장 등을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잠실야구장과 목동실내빙상장은 1999년도부터 효창운동장은 2009년 7월부터 민간기업 및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 중이다.
- 운영조직은 1사업소 4과로 운영인력은 정원 126명이며 2022년 1월 기준 121명이 근무 중에 있다.

〈그림 3-17〉 서울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인력현황



- 업무분장은 운영기획과가 2팀 3반으로 구성되어 청사 및 부설주차장과 위탁관리 및 예산·회계 업무 등을 담당하고 목동운동장과 신월야구공원을 담당하고 있는 목동사업과는 2팀 1반으로 운영 중에 있다.
- 스포츠마케팅과는 3반으로 구성되어 체육시설 이용시민 만족도 제고와 함께 종합운동장의 주요시설과 대관업무와 행사유치 및 주경기장 활성화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 시설개선과는 4반으로 구성되어 시설물 분야 안전관리 및 점검과 함께 유지관리와 개보수 업무 등을 주로 담당하고 있다.

〈그림 3-18〉 서울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과별 업무분장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운영기획과(2팀3반)	목동사업과(2팀1반)	스포츠마케팅과(3반)	시설개선과(4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서·보안·인사 및 업무조정 총괄 ▶ 예산·회계 및 물품관리 ▶ 잠실야구장·효창운동장 위탁관리 ▶ 구의야구공원 운영·관리 ▶ 공사·용역·물품 계약 및 세입·지출 업무 총괄 ▶ 공유재산 관리 및 사용 수속허가 ▶ 청사관리 및 의무실 운영 ▶ 잠실종합운동장 부설주차장 관리·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동운동장·신월야구공원 운영 관리 ▶ 목동실내빙상장 위탁 관리 ▶ 목동주경기장·야구장 대관 ▶ 목동운동장 공유재산 사용허가 및 지도감독 ▶ 목동운동장 부설주차장 관리·운영 ▶ 목동운동장·신월야구공원 구조물, 각종설비, 조경, 녹지대 유지관리 ▶ 목동운동장 시설물 유지관리 개보수, 보강 공사 설계, 공사감독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보·마케팅 계획 수립·시행 ▶ 행사유치 및 주경기장 활성화 방안 마련(동남권개발사업 포함) ▶ 체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체육시설 이용시민 만족도 제고 ▶ 올림픽주경기장·보조경기장·실내체육관 등 종합운동장 주요시설 대관 및 정산 ▶ 제1수영장·헬스장·실내골프연습장·파크골프장·풋살장·인라인하키장 운영 관리 ▶ 올림픽전시관 운영 및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조물 각종설비, 녹지대 유지관리 ▶ 시설물 유지관리 개보수, 보강 공사 설계, 공사감독 업무 ▶ 시설물 분야 안전관리 및 점검 관련 업무 총괄 ▶ 잠실운동장 통신 및 방송, 전광판, CCTV설비 유지업무 ▶ 잠실 제1수영장 수질 검사 및 관련설비 유지관리 ▶ 조경 시설물 설계, 공사감독 총괄 ▶ 경장 잔디, 그라운드 조성 및 유지 관리

○ 관리시설은 직영시설 8개소와 민간위탁 운영시설 3개소, 기타시설 2개소를 포함하여 부지면적 총 540,269.4㎡이며, 서울올림픽전시관의 1,177㎡도 관리 중에 있다.

〈표 3-10〉 서울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직영시설

구 분		경기장 면적	건축 총면적	활용 용도
잠 실	올림픽주경기장	75,469㎡	111,792㎡	· 대형공연장, 8월 이후 리모델링
	보조경기장	20,900㎡	2,057㎡	· 준·대형 공연장
	실내체육관	7,098㎡	26,906㎡	· 삼성썬더스 홈구장, 공연장
	제1수영장	8,073㎡	22,479㎡	· 생활체육장(수영·탁구·헬스·골프)
	구의야구공원	17,330㎡	335.84㎡	· 초·중·고 아마추어 야구경기장 · 동호인 야구 경기장 등
목 동	주경기장	13,455㎡	22,124㎡	· 이랜드FC 홈구장, 공연장소
	야구장	16,233㎡	19,114㎡	· 고교야구리그(청룡, 대통령배 등)
	신월야구공원	18,947㎡	289.64㎡	· 동호인 야구 경기장 등

〈표 3-11〉 서울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위탁시설

구 분	경기장 면적	건축총면적	위 탁 기 관 (기간)	활용 용도
잠실야구장	26,331㎡	45,312㎡	(주)LG스포츠·(주)두산베어스 (' 20.1.1. ~ ' 22.12.31.)	LG·두산 프로야구 구단 홈구장
목동빙상장	6,018㎡	14,700㎡	와이키키 신사점 (' 19.8.1. ~ ' 22.7.30)	쇼트트랙, 피겨, 아이스하키 등 경기장
효창운동장	25,300㎡	28,524㎡	서울시축구협회 (' 20.1.1. ~ ' 22.12.31.)	아마추어 축구 경기장

〈표 3-12〉 서울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기타시설

구 분	경기장 면적	건축총면적	운영기관	활용 용도
잠실 제2수영장	3,966㎡	5,878㎡	서울시 교육청 (무상사용)	초·중생 수영 연습장

- 주요 사업추진체계로는 정책사업으로 시민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가 있으며, 단위사업으로는 첫째, 운동장 이용 활성화 사업이 있고 세부적으로는 생활체육강습교실 운영과 잠실종합운동장 활성화 프로그램 추진업무가 있다.
- 두번째 단위사업으로는 체육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로 세부적으로는 시설물 관리와 물품구입, 잠실종합운동장, 구의 야구공원, 목동운동장, 신월 야구공원 운영 및 유지관리 업무가 있다.
- 세 번째 단위사업으로는 노후 체육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잠실종합운동장, 구의 야구공원, 목동운동장, 신월 야구공원 시설 개·보수가 업무가 있다.

다. 한공공원 도입가능 체육시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한공공원에 설치가능한 체육시설 운동 종목과 시설 형태가 정해지는데 설치 가능 운동 종목으로는 골프장, 골프연습장, 궁도장, 게이트볼장, 농구장, 당구장, 라켓볼장, 럭비풋볼장, 롤러스케이팅장, 배구장, 배드민턴장, 벨로드롬, 볼링장, 봅슬레이장, 빙상장, 사격장, 세팍타크로장, 수상스키장, 수영장, 무도학원, 무도장, 스쿼시장, 스키장, 승마장, 썰매장, 씨름장, 아이스하키장, 야구장, 양궁장, 역도장, 에어로빅장, 요트장, 육상장, 자동차경주장, 조정장,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체조장,

축구장, 카누장, 탁구장, 테니스장, 펜싱장, 하키장, 핸드볼장, 인공암벽장, 그 밖에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치러지는 운동 종목의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 시설형태로는 운동장, 체육관, 종합 체육시설, 가상체험 체육시설로 한정된다.

3. 한강공원 내 체육시설 이용현황 및 만족도 조사

가. 이용현황

1) 최근 5개년 체육시설 이용현황

○ 최근 5개년(2016년~2020년) 동안 11개 한강공원 내 체육시설을 이용한 시민은 연평균 843만여명이며 2019년 코로나 사태로 감소하였다가 규제 완화 시점부터 다시 증가하여 연평균 0.01%가 증가하였다.

○ 서울시민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은 뚝섬공원으로 연평균 216만여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광나루공원은 연평균 119만여명이 찾아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난지공원은 가장 적은 인원인 연평균 21만여명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3-1〉 최근 5개년 체육시설 이용현황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단위: 명, %	
						연평균 이용시민	연평균 증감율
합계	8,444,201	8,488,170	8,485,810	7,885,322	8,887,172	8,438,135	0.01
광나루	1,869,204	1,624,130	1,102,680	619,256	750,875	1,193,229	-0.20
잠실	768,220	814,397	1,033,431	876,484	458,840	790,274	-0.12
뚝섬	1,517,122	1,482,258	1,901,060	2,376,475	3,541,975	2,163,778	0.24
잠원	651,744	499,766	741,683	568,978	805,714	653,577	0.05
반포	814,016	703,684	656,952	447,950	681,368	660,794	-0.04
이촌	741,000	1,012,580	846,050	736,860	589,686	785,235	-0.06
여의도	79,871	750,941	642,207	840,880	403,376	543,455	0.50
양화	570,247	466,304	336,696	209,613	320,608	380,694	-0.13
망원	597,665	465,095	503,894	553,910	484,679	521,049	-0.05
난지	252,018	235,693	215,168	150,442	231,300	216,924	-0.02
강서	583,094	433,322	505,989	504,474	618,751	529,126	0.01

출처: 한강공원 이용객 현황, <https://hangang.seoul.go.kr>, (검색일: 2022.7.30.), 연구자 재작성

2) 최근 월별 체육시설 이용현황

-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최근 1년간 월별 체육시설 이용자를 분석해 보면 3월에서 6월까지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3-13〉 최근 월별 시설이용 현황

(단위: 명)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합계	494,348	530,335	701,633	764,204	741,071	778,726	473,322	324,498	423,717	473,723	448,474	354,234	6,508,285
광나루	12,290	16,890	18,208	21,790	22,505	24,970	11,485	7,220	7,970	17,620	24,385	11,185	196,518
잠실	2,378	3,090	4,199	10,657	22,719	29,189	16,191	3,152	10,765	4,944	5,046	7,105	119,435
뚝섬	269,025	271,150	354,110	389,025	359,945	396,405	236,934	142,990	179,275	212,865	203,970	176,225	3,191,919
잠원	28,580	29,150	35,310	43,820	45,170	48,445	61,400	67,710	76,500	90,340	59,230	28,580	614,235
반포	25,011	33,337	35,438	43,068	46,501	56,421	18,336	5,361	10,192	8,080	11,159	12,812	305,716
이촌	24,003	23,310	27,080	25,420	29,384	27,150	13,225	14,890	17,150	15,170	14,885	14,885	246,552
여의도	27,635	30,542	49,645	53,824	81,218	46,211	26,580	12,529	26,537	43,929	36,066	31,815	466,531
양화	12,952	15,407	21,694	23,784	21,509	26,201	22,783	19,146	21,074	0	20,525	15,384	220,459
망원	31,339	40,925	61,431	58,484	54,649	58,147	36,443	43,057	54,838	50,116	45,268	41,062	575,759
난지	14,370	19,605	24,643	35,311	22,941	23,225	10,088	1,319	2,119	2,963	4,237	2,766	163,587
강서	46,765	46,929	69,875	59,021	34,530	42,362	19,857	7,124	17,297	27,696	23,703	12,415	407,574

출처: 한강공원 이용현황 <https://hangang.seoul.go.kr>, (검색일: 2022.7.30.)

나. 만족도 조사²⁸⁾

-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공원의 서비스 품질을 관리하고자 이용시민들을 대상으로 조경 및 경관 관리, 이용 편의성 제고, 이용자 접근성 제고 시설 지속적 유지관리, 안전성 제고 등의 차원에서 한강공원 이용 종합 만족도 및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한강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어 이를 연구자료로 활용하였다.

1) 조사개요

- 조사대상: 한강공원을 연 2회 이상 이용하는 만 15세 이상 서울시민 1,000명
-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에 의한 응답자 자기기입식 면접조사
- 조사기간: 2021. 11. 17 ~ 11. 30
- 표본추출: 11개 한강공원 지구별 50% 우선 동일 할당 및 50% 이용시민 비례할당 표본추출

28) 한강사업본부, 2021년 한강공원 이용 만족도 조사 결과보고서, 2021.12

-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pm 3.1\%p$
- 주요조사내용: 이용자특성, 한강공원 만족도

2) 응답자 특성

(단위: %, 명)

구 분		사례수(명)	백분율(%)
전 체		1,000	100.0
이 용 한 강 공 원	광나루	76	7.6
	잠실	75	7.5
	뚝섬	197	19.7
	잠원	72	7.2
	반포	81	8.1
	이촌	56	5.6
	여의도	127	12.7
	양화	80	8.0
	망원	65	6.5
	난지	79	7.9
	강서	92	9.2
이 용 요 일	주중	500	50.0
	주말	500	50.0
이 용 시 간	오전	300	30.
	오후	521	52.1
	저녁	179	17.9
방 문 빈 도	1주일에 6~7회	103	10.3
	1주일에 3~5회	142	14.2
	1주일에 1~2회	249	24.9
	1개월에 1~3회	259	25.9
	2~6월에 1회	247	24.7
성 별	남	517	51.7
	여	483	48.3
연 령	10대 이하	98	9.8
	20대	168	16.8
	30대	175	17.5
	40대	182	18.2
	50대	157	15.7
	60대 이상	220	22.0
학 력	고등학교 이하	362	36.2
	대학교	500	50.0
	대학원 이상	76	7.6
	응답거절/무응답	62	6.2
직 업	전문/경영/관리	90	9.0
	사무/기술	215	21.5
	판매/서비스/기능/작업	92	9.2
	자영업	99	9.9
	학생	174	17.4
	가정주부	203	20.3
	무직/퇴직/구직 중	127	12.7

구 분		사례수(명)	백분율(%)
전 체		1,000	100.0
월평균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77	7.7
	200~399만원	265	26.5
	400~599만원	281	28.1
	600만원 이상	245	24.5
	응답거절/무응답	132	13.2
거 주 권 역	도심권	66	6.6
	동북권	258	25.8
	서북권	159	15.9
	서남권	274	27.4
	동남권	243	24.3

3) 만족도 산출방법

○ 항목 만족도 점수: 리커트 5점 척도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산정

4) 조사결과 분석

○ 한강공원별 체육시설 구비정도에 대한 만족도 분석결과 잠원공원에 대한 만족도가 82.5점으로 가장 높고, 강서공원에 대한 만족도는 67.3점으로 가장 낮게 평가되었다.

〈표 3-14〉 한강공원별 체육시설 구비정도에 대한 만족도

구분 (단위: %)	사례수 (명)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총 합			100점 환산(점)	
							부정	보통	긍정		
이 용 한 강 공 원	광나루	74	0.0	2.7	23.0	29.7	44.6	2.7	23.0	74.3	79.1
	잠실	69	0.0	4.3	39.1	39.1	17.4	4.3	39.1	56.5	67.4
	뚝섬	189	0.0	2.1	18.0	36.5	43.4	2.1	18.0	79.9	80.3
	잠원	67	0.0	1.5	10.4	44.8	43.3	1.5	10.4	88.1	82.5
	반포	77	0.0	3.9	26.0	20.8	49.4	3.9	26.0	70.1	78.9
	이촌	52	0.0	0.0	13.5	53.8	32.7	0.0	13.5	86.5	79.8
	여의도	113	0.0	2.7	33.6	47.8	15.9	2.7	33.6	63.7	69.2
	양화	78	0.0	3.8	28.2	55.1	12.8	3.8	28.2	67.9	69.2
	망원	64	0.0	0.0	20.3	50.0	29.7	0.0	20.3	79.7	77.3
	난지	78	0.0	0.0	26.9	61.5	11.5	0.0	26.9	73.1	71.2
강서	84	0.0	4.8	39.3	38.1	17.9	4.8	39.3	56.0	67.3	

○ 한강공원별 체육시설 관리상태에 대한 만족도 분석결과 이촌공원에 대한 만족도가 80.1점으로 가장 높고, 강서공원에 대한 만족도는 66.6점으로 가장 낮게 평가되었다.

〈표 3-15〉 한강공원별 체육시설 관리상태에 대한 만족도

구분 (단위: %)	사례수 (명)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총 합			100점 환산(점)	
							부정	보통	긍정		
이 용 한 강 공 원	광나루	73	0.0	0.0	21.9	38.4	39.7	0.0	21.9	78.1	79.5
	잠실	65	0.0	7.7	29.2	40.0	23.1	7.7	29.2	63.1	69.6
	뚝섬	188	0.0	2.1	20.2	37.8	39.9	2.1	20.2	77.7	78.9
	잠원	66	0.0	4.5	10.6	60.6	24.2	4.5	10.6	84.8	76.1
	반포	78	0.0	1.3	19.2	44.9	34.6	1.3	19.2	79.5	78.2
	이촌	54	0.0	0.0	11.1	57.4	31.5	0.0	11.1	88.9	80.1
	여의도	109	0.0	0.9	29.4	49.5	20.2	0.9	29.4	69.7	72.2
	양화	80	1.3	1.3	22.5	61.3	13.8	2.5	22.5	75.0	71.3
	망원	64	0.0	3.1	25.0	51.6	20.3	3.1	25.0	71.9	72.3
	난지	76	0.0	0.0	30.3	60.5	9.2	0.0	30.3	69.7	69.7
강서	86	0.0	7.0	40.7	33.7	18.6	7.0	40.7	52.3	66.0	

○ 한강공원별 대중교통 접근성에 대한 만족도 분석결과 여의도공원에 대한 만족도가 83.0점으로 가장 높고, 난지공원에 대한 만족도는 60.4점으로 가장 낮게 평가되었다.

〈표 3-16〉 한강공원별 대중교통 접근성에 대한 만족도

구분 (단위: %)	사례수 (명)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총 합			100점 환산(점)	
							부정	보통	긍정		
이 용 한 강 공 원	광나루	75	2.7	6.7	24.0	46.7	20.0	9.3	24.0	66.7	68.7
	잠실	73	0.0	13.7	20.5	41.1	24.7	13.7	20.5	65.8	69.2
	뚝섬	189	0.0	1.6	9.0	37.0	52.4	1.6	9.0	89.4	85.1
	잠원	46	0.0	0.0	13.0	60.9	26.1	0.0	13.0	87.0	78.3
	반포	77	0.0	10.4	16.9	27.3	45.5	10.4	16.9	72.7	76.9
	이촌	51	0.0	0.0	11.8	54.9	33.3	0.0	11.8	88.2	80.4
	여의도	125	0.0	2.4	16.0	28.8	52.8	2.4	16.0	81.6	83.0
	양화	76	0.0	2.6	35.5	48.7	13.2	2.6	35.5	61.8	68.1
	망원	65	0.0	1.5	23.1	49.2	26.2	1.5	23.1	75.4	75.0
	난지	77	0.0	5.2	51.9	39.0	3.9	5.2	51.9	42.9	60.4
강서	90	2.2	13.3	35.6	27.8	21.1	15.6	35.6	48.9	63.1	

○ 한강공원별 도보이용 편리성에 대한 만족도 분석결과 잠원공원에 대한 만족도가 85.9점으로 가장 높고, 강서공원에 대한 만족도는 67.3점으로 가장 낮게

평가되었다.

〈표 3-17〉 한강공원별 도보이용 편리성에 대한 만족도

구분 (단위: %)	사례수 (명)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총 합			100점 환산(점)	
							부정	보통	긍정		
이 용 한 강 공 원	광나루	75	1.3	5.3	25.3	40.0	28.0	6.7	25.3	68.0	72.0
	잠실	75	0.0	8.0	18.7	48.0	25.3	8.0	18.7	73.3	72.7
	뚝섬	195	0.0	1.0	13.3	31.8	53.8	1.0	13.3	85.6	84.6
	잠원	55	0.0	1.8	5.5	40.0	52.7	1.8	5.5	92.7	85.9
	반포	79	0.0	2.5	17.7	27.8	51.9	2.5	17.7	79.7	82.3
	이촌	52	0.0	0.0	13.5	44.2	42.3	0.0	13.5	86.5	82.2
	여의도	120	0.0	1.7	16.7	30.0	51.7	1.7	16.7	81.7	82.9
	양화	79	0.0	3.8	29.1	51.9	15.2	3.8	29.1	67.1	69.6
	망원	65	0.0	0.0	12.3	50.8	36.9	0.0	12.3	87.7	81.2
	난지	78	0.0	2.6	24.4	55.1	17.9	2.6	24.4	73.1	72.1
강서	91	1.1	6.6	40.7	25.3	26.4	7.7	40.7	51.6	67.3	

○ 한강공원별 시설물 안정성에 대한 분석결과 반포공원에 대한 만족도가 81.2점으로 가장 높고, 양화공원에 대한 만족도는 69.4점으로 가장 낮게 평가되었다.

〈표 3-18〉 한강공원별 시설물 안전성에 대한 만족도

구분 (단위: %)	사례수 (명)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총 합			100점 환산(점)	
							부정	보통	긍정		
이 용 한 강 공 원	광나루	76	0	1.3	25	43.4	30.3	1.3	25	73.7	75.7
	잠실	70	0	4.3	28.6	41.4	25.7	4.3	28.6	67.1	72.1
	뚝섬	195	0	2.6	21	42.1	34.4	2.6	21	76.4	77.1
	잠원	71	0	1.4	14.1	56.3	28.2	1.4	14.1	84.5	77.8
	반포	77	0	0	18.2	39	42.9	0	18.2	81.8	81.2
	이촌	56	0	0	16.1	62.5	21.4	0	16.1	83.9	76.3
	여의도	124	0	0.8	30.6	46.8	21.8	0.8	30.6	68.5	72.4
	양화	80	0	2.5	23.8	67.5	6.3	2.5	23.8	73.8	69.4
	망원	65	0	1.5	20	55.4	23.1	1.5	20	78.5	75.0
	난지	78	0	0	20.5	76.9	2.6	0	20.5	79.5	70.5
강서	92	0	3.3	34.8	42.4	19.6	3.3	34.8	62	69.6	

○ 한강공원별 체육시설 구비정도, 관리상태, 대중교통 접근성, 도보이용 편리성, 시설물 안정성에 대한 공원별 만족도에 평균값을 기준으로 만족도에 대한 종합 평가는 뚝섬공원이 평균 81.2점으로 가장 우수하며, 강서공원이 평균 66.7점으로 가장 열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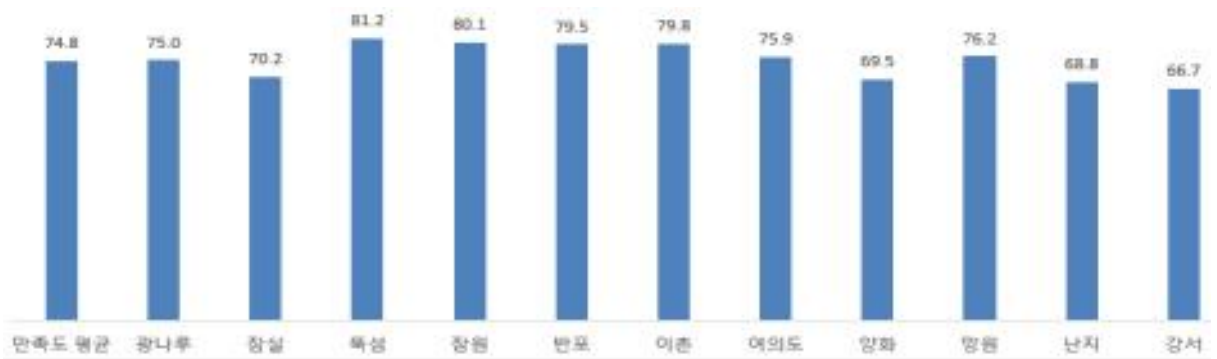
○ 한강공원 전체평균값은 74.8점으로 양화공원(69.5점), 난지공원(68.8점), 강

서공원(66.7점)은 평균보다도 낮았다.

〈표 3-19〉 한강공원별 종합 만족도

구분 (단위: %)	체육시설 구비정도	체육시설 관리상태	대중교통 접근성	도보이용 편리성	시설물 안전성	만족도 평균
이용한 강공원	광나루	79.1	79.5	68.7	72.0	75.0
	잠실	67.4	69.6	69.2	72.7	70.2
	뚝섬	80.3	78.9	85.1	84.6	81.2
	잠원	82.5	76.1	78.3	85.9	80.1
	반포	78.9	78.2	76.9	82.3	79.5
	이촌	79.8	80.1	80.4	82.2	79.8
	여의도	69.2	72.2	83.0	82.9	72.4
	양화	69.2	71.3	68.1	69.6	69.4
	망원	77.3	72.3	75.0	81.2	75.0
	난지	71.2	69.7	60.4	72.1	70.5
	강서	67.3	66.0	63.1	67.3	69.6

〈그림 3-19〉 한강공원 만족도 평균 및 공원별 만족도



〈그림 3-20〉 한강공원별 종합만족도



4. 근린공원 내 체육시설과의 비교분석

- 근린공원이란 주로 1개의 근린주구의 주민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위치, 규모, 시설을 갖춘 도시공원으로 근린거주자의 보건, 휴양 및 정서 생활의 향상에 기여를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을 말한다.²⁹⁾
- 이러한 근린공원 내 설치된 체육시설은 거주 주민들의 접근 편리성과 기본 운동을 수행할 수 있는 필수 공원시설물로 근린단위의 기초시설이다.
- 그러나 근린생활권 근린공원과 도보권 근린공원은 유치 거리가 짧고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규격이 정해져 있는 체육시설의 설치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간단한 운동기구인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 야외운동기구는 개인운동과 훈련시설로 도심의 많은 근린공원에 조성되어 지자체별로 관리·운영되고 있으나 전문적인 형태의 야외운동기구의 수는 미미한 실정이다.
- 최근 건강에 관한 국민적 관심과 정책으로 생활체육이 중요시되고 있어 근린공원 내의 야외운동기구와 한강공원 내의 야외운동기구를 차별화 할 필요가 있다.

〈표 3-20〉 한강공원과 근린공원의 체육시설 설치 비교

구분	설치기준	유치거리	규모	체육시설	
한강공원	하천호수 등의 수변과 접하고 있어 찬수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곳에 설치	제한 없음	제한 없음	규모가 정해져 있는 체육시설과 야외운동기구 혼재	
근린공원	근린생활권 근린공원 ³⁰⁾	제한 없음	500미터 이하	1만제곱미터 이상	야외운동기구 위주
	도보권 근린공원 ³¹⁾	제한 없음	1천미터 이하	3만제곱미터 이상	야외운동기구 위주
	도시지역권 근린공원 ³²⁾	해당도시공원의 기능을 충실히 발휘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	제한 없음	10만제곱미터 이상	규모가 정해져 있는 체육시설과 야외운동기구 혼재
	광역권 근린공원 ³³⁾	해당도시공원의 기능을 충실히 발휘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	제한 없음	100만제곱미터 이상	규모가 정해져 있는 체육시설과 야외운동기구 혼재

29) 건설교통부, 도시공원법, 서울: 건설교통부, 1999

30) 주로 인근에 거주하는 자의 이용에 제공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근린공원

31) 주로 도보권 안에 거주하는 자의 이용에 제공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근린공원

〈그림 3-21〉 한강공원과 근린공원의 주요 야외운동기구

기구명	운동효과	비고
벤치프레스	대흉근과 상체근육 균형발달	
온몸근육풀기	스트레칭 수준의 가벼운 운동	
양팔 줄 당기기	어깨, 팔꿈치, 손목 근력강화	
숄더 스트레칭	어깨근육강화, 기능장애 회복	
트렁크 로라	몸 전체의 균형 기능	
치닝 바	상체 강화와 어깨 근육발달	
레그스트레치	관절의 기능성 장애에 효과	
디핑 바	평행감각의 발달 등	
크로스 컨트리	심폐지구력 강화 등	
에어트위스트	평형감각개선, 척추교정 등	
웜몸 일으키기	복근, 다리 근력 강화	
트윈 트위스트	허리근육 스트레칭 등	
스트레칭 로라	혈액순환 및 피로해소	
아이플리	등, 어깨, 팔 근력강화	
체어 풀	가슴, 어깨, 팔 근력강화	
거꾸로 매달리기	근육이완과 혈액순환 도움	

5. SWOT 분석

- 한강공원 체육시설 활성화와 관련된 내부환경(강점, 약점)과 외부환경(기회, 위협)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32) 도시지역 안에 거주하는 전체 주민의 종합적인 이용에 제공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근린공원

33) 하나의 도시지역을 초과하는 광역적인 이용에 제공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근린공원

〈그림 3-22〉 한강공원 체육시설 활성화를 위한 SWOT 분석

강점요인(Strength)	약점요인(Weakne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유일 대하천 자연하구 - 풍부한 역사 및 문화유산 보유 - 주 5일제, 소득증대로 인한 레저수요 증가 - 육상 및 수상 체육시설 보유 - 스포츠바우처사업의 확대 - 스포츠클럽법의 제정을 통한 체육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태환경을 위한 개발억제 - 체육시설과 도시공원 법제상의 개발 및 관리 주체의 구분 - 한강주변의 자동차전용도로로 인한 공간단절 - 우설시 사용불가 - 지구별 랜드마크시설 위주의 시설강화 - 한강공원 인근주민 소수의 체육시설
기회요인(Opportunity)	위험요인(Threa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강에 대한 정책적 관심 증가 - 인접한 관광자원과의 연계 가능 - 자연환경보전에 대한 국민의식 성숙 - 운동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인식 확산 - 개인적 운동참여와 사회적 관점의 건강·복지 증대 -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체육활동 기반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수, 태풍 등 자연재해 취약 - 체육 및 운동시설 전문가 미배치로 인한 부상 - 체육시설에 대한 체계적 안전진단 - 도보, 산책 등 여가활동과 자전거 및 인라인스케이팅 운행에 대한 안전사고

가. 강점(Strength)을 이용하여 기회(Opportunity)를 살리는 전략

- 한강공원 체육시설을 활용한 다양한 연령층의 스포츠바우처 프로그램을 개발 및 스포츠클럽 활성화 지원
- 개인 및 단체운동을 위한 사물인터넷(IoT) 연관 시설도입으로 체계적인 운동습관 유도
- 요일별 테마가 있는 스포츠프로그램 또는 연령별 프로그램 개발
- 한강공원과 주변 역사 및 문화시설의 연계를 통한 체육시설 개발

나. 위협(Threat)을 피해 강점(Strength)을 부각할 수 있는 전략

- 홍수, 태풍 등의 자연재해로부터 체육시설 예방과 보호를 위한 민·관 협력조직 운영(스포츠클럽 등과의 연계)
- 체육 지도자 배치를 통한 체계적인 개인 운동강습 및 스포츠클럽 활성화
- 체육지도자 및 스포츠클럽을 통한 체육시설의 안전점검 강화
- 한강공원 인근 민간체육시설과 연계한 스포츠바우처사업을 통해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시설사용 안전교육 실시
- 민·관 합동의 한강공원 체육시설 안전이용 수칙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계도 활동 강화

다. 약점(Weakness)을 보완하여 위협(Threat)을 최소화하는 전략

- 자연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한강생태환경 조성
- 체육시설과 도시공원 관리에 대한 조례제정 및 개정을 통한 운영관리 현실화
- 다양한 연령층이 접근할 수 있는 체육시설과 4계절 운영가능한 육상 및 수상체육시설 강화

라. 약점(Weakness)을 보완하여 기회(Opportunity)를 찾는 전략

- 기존의 한강공원 확장이 아닌 이용자 욕구에 충족하는 체육시설 도입 및 교체
- 생태환경을 활용한 요가 등 맨손체조 프로그램 개발
- 우설시 시설점검 등을 통한 활용성 강화
- 지하철, 버스 등과 연계한 친환경 교통수단 도입을 통한 한강공원 접근성 강화
- 한강공원 내 지구별 순환노선 및 친환경 이동수단의 도입
-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체육시설 이용현황, 체육시설 가동 등의 정보제공을 통해 근거리, 원거리 이용자의 이용편의 도모

IV. 한강공원 내 체육시설 활성화 전략 및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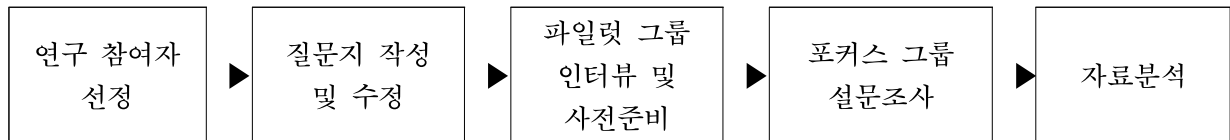
- 본 장에서는 한강공원 내 체육시설 활성화를 위한 기본구상을 위해 전문가 F.G.I 조사와 미션과 비전, 전략방향 등을 제시하고 활성화 방안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다.

1. 전문가 F.G.I 조사

가. 분석 프로세스

-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를 통해 체육 및 체육시설, 체육시설 운영과 관련이 있는 전문가를 섭외하여 아래 그림과 같이 진행하였다.

〈그림 4-1〉 F.G.I 참석자 프로파일



나. 조사내용

- 한강공원의 체육시설 및 체육시설 활성화를 위한 추진방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시설관리, 프로그램, 체육지도자, 홍보 및 정보제공 등으로 문항을 구성하였다.
- 체육시설 활성화를 위한 조사항목의 중요도 평가를 위해 리커트 5점 척도 방법으로 계량화 하였다. 배점은 매우높음 5점, 높음 4점, 보통 3점, 낮음 2점, 매우낮음 1점으로 정하였다. 이후 조사참가자들의 점수를 합산하고 평균점수를 산정한 후 100점 점수로 환산하여 우선순위를 평가하였다.
- 중요도 평가결과 시설관리 분야의 ‘사용요금의 적정성’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도출되었으며 다음으로 교통 접근성 개선, 한강공원별 프로그램 구성, 체육단체를 통한 프로그램 개발, 아동·청소년 바우처 사업과 연계도 중요 요인으로 평가되었다.
- 이외에 시설관리분야에서는 시설이용의 형평성, 시설의 전문화, 시설의 질적개선, 인력 및 행정체계 관리 효율화, 시설운영에 대한 행정지원, 편의시설, 시설관리상태가 중요하다고 인식되었다.
- 프로그램 분야에서는 고령자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과 시설 및 기구별 건강·체

력측정평가 시스템 도입, 웨어러블 장비를 통한 프로그램도입, 노인바우처 맞춤형 운동서비스 도입, 스포츠바우처 사업과 연계 등이 중요 요인으로 평가되었다.

- 체육시설의 올바른 이용과 운동방법을 위한 체육지도 분야에서는 체육지도자의 운동관리, 전문성, 리더십이 중요하였다.
- 그러나 홍보분야는 특별히 중요성이 인식되지 않았다. 이는 한강공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인터넷 정보를 통하여 충분했다고 판단된다.

〈표 4-1〉 전문가 조사항목 및 조사결과

조 사 항 목			
시설관리	프로그램	체육지도	홍보
생활체육시설 확충	한강공원별 프로그램 구성	체육 지도자의 수업내용	홍보내용의 고도화
생활체육시설의 질적 개선	고령자 특성 고려 프로그램		홍보내용의 다양화
인근 지역 체육시설 연계	체육단체를 통한 프로그램 개발	체육 지도자의 수업목표	홍보내용의 전문화
인력 및 행정체계 효율화			민간전문가의 프로그램 개발
사용요금 적정성	주민참여 시설운영위원회 구성	체육 지도자의 전문성	이용율이 높은 장소선정
시설이용 형평성	건강 체력측정평가 시스템 도입		운동의 필요성
위탁운영 투명성	가구별 측정평가 시스템 도입	체육 지도자의 리더십	운동효과
시설의 전문화	웨어러블 장비 프로그램 도입		운동방법
체육시설 운영 행정지원	노인바우처 운동서비스 도입	체육 지도자의 운동관리	정부 차원의 홍보 필요
체육시설 활용 협의회 구성	스포츠바우처 사업과 연계		시설관리부서의 웹페이지
교통 접근성 개선	아동청소년 바우처사업과 연계		SNS활용
편의시설			유튜브 활용
시설관리 상태			진단지 활용
정보기술을 활용한 시설관리			지역신문 등 언론매체 활용
인터넷 기반 시설 사용현황 관리			잡지활용

2. 활성화 기본구상 및 전략설정

가. 미션

- 한강공원 내 체육시설 활성화의 미션은 ‘한강공원 체육시설 활성화를 통한 건강의 시작, 활력 중심 한강’으로 생활체육이 일상화되어 다양한 연령층이 어우러지고 대화의 공간이 되어 서울시민 모두가 삶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보편적 체육복지를 실현하고자 한다.

나. 비전

- 한강공원 내 체육시설 활성화의 비전은 ‘건강한 체육복지시설 한강공원’으로 체육활동에 대한 비용 부담 때문에 소외받는 경제적 약자와 고령으로 인한 신체적 약자, 모두를 아우르는 ‘소수’보다는 ‘모두’를 위한 체육시설로 중점을 두었다.

다. 비전목표

- (자연과 건강, 치유와 행복)체육복지는 서울시민 모두의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로서 ‘사람 중심’, ‘삶의 질 향상’의 가치를 두고 체육활동을 소비하는 시민 모두가 공정하고 공평하게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서울시가 책임지고 조성한다.
- (참여와 실천, 체계적 운동)체육활동 참여의 양적, 질적 성장과 함께 운동을 통한 협동과 경쟁, 배려와 존중, 경쟁과 도전 등 일상에서의 ‘건강한 공동체’가 구현되도록 운동의 가치를 확산시킨다.
- (지역연계 고도화)건강하고 안전하게 일상속에서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인별 맞춤형 운동을 위한 ‘스포츠 시스템’과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기 위해 지역의 스포츠 시설과 체육지도자가 연계되는 환경을 구축한다.

라. 전략방향

- 한강공원 내 체육시설 이용 확대를 위해 ‘체육복지 강화’를 위한 스포츠바우처사업과의 연계와 ‘한강공원 지구별 체육시설의 연계활용 강화’를 위해 권역별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 또한, ‘체육활동 저변확대’를 위해 청·장년층과 고령층이 체육시설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 한강은 양안이 자동차전용도로로 일상적인 생활권과 구분되어 있어, 일부 지구를 제외하고는 대중교통과 도보를 이용한 접근에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환경보존과 생태계 안정을 위해 친환경 에너지를 동력원으로 하는 이동수단의 도입도 요구된다. 그러나 많은 이해관계자로 인해 의견을 조율하며 실행하기 위한 민·관 거버넌스 체계 구축도 필요하다.
- 한강공원 내 체육시설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강공원에 설치할 수 있지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과 하천법의 제한으로 운영과 관리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 규격시설과 야외운동기구로 구분하여 ‘효율적 관리·운영방안’을 수립하여 ‘예산 효율화’를 실현한다.

〈그림 4-2〉 비전 및 목표설정



3. 활성화 방안

가. 권역별 활성화 구상

- 2030 서울플랜의 공간계획에 의하면 서울 전역을 대상으로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을 토대로 5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 현재의 한강은 치수와 수자원 확보를 목적으로 정비한 1차(1978), 2차(1986) 한강종합개발계획 이후 기본틀이 유지되고 있다.
- 한강공원 내 체육시설 활성화를 위한 권역 구상은 상위계획의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한강변관리기본계획(2015)인 ‘자연성’, ‘토지이용’, ‘접근성’, ‘도시경관’의 4대부문 12개 관리원칙에 따른 7개 수변활동권역을 중심으로 설정하였다.
- 친환경 생태·휴식권역인 ‘강서~난지권’은 생태환경 개선과 맑은 물 회복, 친환경 이용에 맞게 체육시설 설치를 지양하고 생활체조, 요가 등 기구를 사용하지 않는 휴식과 운동이 가능한 곳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친환경체육 활성화 권역’으로 설정한다.
- 수변 창조문화권역인 ‘합정~당산권’은 녹색교통 접근성 강화와 보행 접근성 개

선, 주변과의 녹지연계가 강화되는 권역으로 지역의 공공스포츠 시설, 민간 스포츠 시설 등과 연계시켜 스포츠바우처사업이 가능하도록 하며 체육지도자 중심의 개인별 맞춤형 체육활동이 가능하도록 ‘스포츠바우처, 체육지도자 활성화 권역’으로 설정한다.

- 국제적 수변업무 활동권역인 ‘여의도~용산권’은 다양한 수변 활동 특화와 역사·문화자원의 복원과 연계되는 시민 이용 공간으로 확충됨으로 인근 기업체 종사자와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의 양호한 접근성을 고려하여 모임이나 단체활동, 스포츠클럽 동호인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사용하게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인터넷을 활용한 연계시설에 대한 정보제공, 사물인터넷(IoT) 운동 시설의 보급을 통한 관련 산업발전 기여할 수 있도록 ‘스포츠클럽, IoT 체육시설 활성화 권역’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 국가적 문화·여가권역인 ‘반포~한남권’은 다양한 수상레저와 휴식 시설이 혼재되어 있다. 녹색교통 접근성 강화와 보행 접근성 개선, 주변과의 녹지연계가 강화되는 권역으로 지역의 공공스포츠 시설, 민간 스포츠 시설 등과 연계시켜 스포츠바우처사업이 가능하도록 하며 체육지도자 중심의 개인별 맞춤형 체육활동이 가능하도록 ‘스포츠바우처, 체육지도자 활성화 권역’으로 설정한다.
- 수변조망 활동권역인 ‘압구정~성수권’은 서울숲, 한강합수부 및 굴곡부로서 입지적 상징성을 보유하고 있으나 배후 잠재력 대비 수변공간이 부족하다. 그러나 아파트지구 및 노후 주거입지 밀집지역으로 쇼핑·산업의 배후 활동과 한강지구 간 접근성을 강화하여 지역의 공공스포츠 시설, 민간 스포츠 시설 등과 연계시켜 스포츠바우처사업이 가능하도록 하며 체육지도자 중심의 개인별 맞춤형 체육활동이 가능하도록 ‘스포츠바우처, 체육지도자 활성화 권역’으로 설정한다.
- 국제교류 및 스포츠 관광권역인 ‘잠실·청담~자양권’은 국제무역센터와 잠실운동장을 중심으로 국제적 쇼핑센터와 관광중심지, 건국대를 기반으로 하는 동북부 상업·위락 중심지 들이 혼재되어 위치하고 있다. 또한, 뚝섬은 수변오프스페이스로 수상스포츠가 활발한 곳이다. 이러한 특징점을 살려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의 양호한 접근성을 고려하여 모임이나 단체활동, 스포츠클럽 동호인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사용하게 할 공간으로 구상하며 인터넷을 활용한 연계시설에 대한 정보제공, 사물인터넷(IoT) 운동 시설의 보급을 통한 관련 산업발전 기여할 수 있도록 ‘스포츠클럽, IoT 체육시설 활성화 권역’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 한강 역사문화·생태권역인 ‘암사~광장권’은 풍납토성, 몽촌토성, 아차산성, 선사유적지 등 한강변 역사와 문화유적지가 분포하고 있다. 생태환경 개선과 맑은 물 회복, 친환경 이용에 맞게 체육시설 설치를 지양하고 생활체조, 요가 등 기

구를 사용하지 않는 휴식과 운동이 가능한 곳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친환경 체육 활성화 권역’으로 설정한다.

〈그림 4-3〉 한강공원 권역별 활성화 구상



〈표 4-2〉 한강양안 통합 7대권역 체육활성화 방안

권역	해당 공원	권역 활성화 방향
강서~난지권	강서, 난지	서울 최고의 수변공원에 기반한 친환경 체육 활성화
합정~당산권	양화, 망원	지역주민과 지역 체육시설 연계 기반 스포츠바우처, 체육지도자 배치, 체력측정 등을 통한 활성화
여의도~용산권	여의도, 이촌	한강 및 서울의 중심지역을 연계하는 국제적 수변업무·활동 권역에 부응하며 스포츠클럽 육성과 IoT체육시설 기반 활성화
반포~한남권	반포	지역주민과 지역 체육시설 연계 기반 스포츠바우처, 체육지도자 배치, 체력측정 등을 통한 활성화
압구정~성수권	잠원	구릉지·굴곡부 한강조망과 배후 도심활력이 함께하는 스포츠클럽 육성과 IoT체육시설 기반 활성화
영동·잠실~자양권	잠실, 뚝섬	잠실운동장 재생, 배후 중심지역과의 연계강화를 통한 스포츠클럽 육성과 IoT체육시설 기반 활성화
암사~광장권	광나루	서울외곽 환상녹지축 및 선사~삼국시대를 연결하는 역사·전통 체육 활성화

나. 초고령화 적극적 대응

- UN은 65세 이상의 인구가 한 국가의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구분하고 있다³⁴⁾).

-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인구통계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전체인구는 2022년 8월말 현재 5,155만여명이며 서울의 인구는 약 18.4%인 948만여명이다. 전체인구의 17.8%인 914만여명이 65세 이상으로 우리나라는 UN 분류에 의하면 고령사회이다. 통계청 보도자료³⁵⁾에 의하면 2025년이면 65세 이상의 인구비율이 20.3%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한다고 하였다.
- 서울의 전체 인구는 949만여명으로 17.4%인 163만여명이 65세이상 인구로 이미 고령사회이며 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고령인구 비율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한강공원 내 체육시설 관리·운영방안계획 마련이 시급하다.
- 문화관광부가 발표한 ‘2021 국민생활체육조사’에 의하면 60대 이상 평균 47.2%가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동수단은 도보이동으로 15분 이내에서 운동한다는 응답자가 89.9%로 조사되었다.
- 앞으로 다가올 미래 초고령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해 신체적 약자인 고령층의 운동생활 습관화가 지속될 수 있도록 도보권 내로의 야외운동기구 재배치와 맞춤형 돌봄형 운동서비스 도입으로 한강공원 내 체육시설을 활성화한다.
- 또한, 고령층의 한강공원 내 체육시설 이용실태와 선호하는 운동시설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여 건강한 삶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표 4-3〉 생활권 주변 체육시설 이용여부 연령별 비교

연령별	(%)						
	공공 체육시설	민간 체육시설	기타 체육시설	학교 체육시설	자가시설	직장 체육시설	기타
10대	33.6	27.2	18.2	53.3	9.9	0.6	1.4
20대	37.5	63.9	16.5	8.2	8.3	1.3	3.0
30대	30.2	54.8	20.9	5.3	14.4	1.9	6.6
40대	38.2	48.2	21.0	8.7	8.5	1.8	9.2
50대	45.1	33.8	28.0	6.3	6.9	0.4	15.4
60대	45.8	15.6	37.3	9.7	5.6	0.6	15.8
70대 이상	48.6	5.3	48.2	7.2	6.9	0.4	5.8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생활체육조사, 2021

34) 박정호,

35) 통계청, 2020 고령자 통계 보도자료, 2020.9.28

〈그림 4-4〉 고령자가 주로 참여하는 체육활동 이용시설

(규칙적 체육활동 참여자, 단위: %, 분)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생활체육조사, 2021

〈그림 4-5〉 고령자가 주로 참여하는 체육활동 이동수단

(규칙적 체육활동 참여자, 단위: %, 분)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생활체육조사, 2021

〈그림 4-6〉 고령자의 규칙적 체육활동 참여율(주2회 이상)

(규칙적 체육활동 참여자, 단위: %, 분)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생활체육조사, 2021

다. 체력측정을 통한 빅데이터 구축

- 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의2(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 인증)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활체육에 관한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과학적 체력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에 대한 인증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 체력인증 대상자는 유소년기(만 11~12세)·청소년기(만 13~18세)·성인기(만 19~64세)·어르신(만 65세 이상)으로 구분되어 전국에 있는 체력인증센터에서 무료로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한강공원의 체육시설과 야외운동기구를 활용하여 계절별, 지구별 국가가 지정한 공인인증기관과의 출장소를 설치하여 체력측정과 체력평가, 운동처방, 체력인증을 병행하는 장소로 활용할 수 있다.
- 또한, 공무원(경찰, 소방 등)과 군인 등 체력검정을 받아야 하는 직종이나 유관된 체력검정에 대비한 장소로 활용이 가능하다.
- 나아가 체력측정에 대한 연령별, 직업별, 성별 등 신체조건과 건강상태 등 다양한 운동 데이터를 축적하여 더 효과적이며 효율적인 체육활동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그림 4-7〉 체육시설 이용에 따른 전문 체력측정 시스템 도입



라. 사물인터넷(IoT)적용 체육시설 도입

- 한강공원 내 체육시설 중 야외에 고정적으로 설치하여 자유롭게 접근 가능한 장치로 신체 부위를 단련하거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체육시설을 야외운동기구라 한다.
- 야외운동기구는 그 종류가 다양하나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친절한 안내, 작동 및 사용법 등에 대한 정보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QR코드나 NFC 태그(근거리 무선통신) 등을 활용한 운동기구 사용법 등을 확인 가능하게 할 필요가 있어 IoT 운동기구의 도입이 필요하다.
- 또한, IoT 운동기구 도입 시 운동할 때 측정되는 데이터로 사용자의 신체 상태를 자동으로 파악하고 실시간으로 적합한 운동과 운동방법 등을 지도하는 것이 가능해 진다.

〈그림 4-8〉 체육활동 지원 및 운동정보 제공



출처: <https://www.sportaus.gov.au/p41> (검색일: 2022. 9. 4)

〈그림 4-9〉 사물인터넷(IoT) 적용 체육시설 예시



마. 육상 및 수상 안전예보 시스템도입

- 야외활동을 위축하게 하는 요인으로 미세먼지, 오존, 자외선, 황사 등을 들 수 있다. 특정한 계절에 각각 나타나는 대기 오염물질은 건강을 위협하기 때문에 한강공원 주출입구에도 ‘미세먼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다.
- 그러나, 이러한 자료는 현장실측 자료라기보다 한국환경공단에서 제공받은 대기 오염도 자료로 야외활동 중에 필요한 실질적인 안전예보 시스템이 필요하다.
- 이를 위해 한강공원 내 체육시설이 조성되거나 설치된 곳에 육안으로 쉽게 관찰하고 대기오염 상태를 확인 할 수 있는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 또한, 한강의 특성상 만조일 경우 수상레포츠를 이용하는 시민들도 안전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조치 가능한 방안이 도입되어야 한다.

〈그림 4-10〉 육상 및 수상안전 예시



바. 야간체육활동 프로그램 도입

- 직장인 및 청소년 방과 후 수업(체육)등 지원을 위한 건강 생활체조교실,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 도입이 필요하다.
- 다만, 야간 안전사고예방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림 4-11〉 야간체육활동 프로그램 예시



V. 연구종합과 시사점

1. 연구종합

가. 한강의 특성

1) 역사적 특성

- 선사시대의 한강은 청동기시대의 발달된 문화를 거쳐 한강유역에서 고대국가가 발달하게 되는 기반 마련을 마련하였다.
- 청동기시대의 한강은 한강유역의 벼농사와 독특한 청동기 문화를 이룩하였다.
- 삼국시대의 한강은 한반도의 중심 무대지로 삼국이 번갈아 지배하며 한강유역의 점유가 나라의 흥망성쇠가 되는 계기가 되었다.
- 고려시대의 한강은 한강유역의 중요성이 인식되어 개경 및 서경과 함께 양주를 남경으로 하여 3대 요지가 되었다.
- 조선시대의 한강은 한양 천도에 따른 한양의 인문·지리적 위치의 중요성이 강조, 전국의 세곡이 조운을 통하여 한강에 모였고, 한양거주 지주층이 선박으로 소작물도 운반하며 도성 내 일반 생필품도 대부분 선박을 통해 한강에서 공급되었다.
- 근세의 한강은 1900년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철교가 놓이고 1975년 잠실동과 신천동을 매립하는 대공사가 준공되었다.

2) 문화적 특성

- 한강은 여가와 체육활동의 장소로 복잡한 현대 도시 생활에서 도시인들의 삶의 질을 풍성하게 할 수 있는 일상의 공간으로서 소중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 한강은 사회·문화적 활동장소로 서울의 고도성장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불평등과 소외 등으로 인하여 한강변에서 자살하여 사회적 논란을 불러 일으켰었으나, 개발시대에서의 한강 모래사장은 유명한 정치집회장으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나. 한강공원 내 체육시설의 특성

1) 발전적 특성

- 한강공원이 지금의 모습을 갖춘 2004년까지의 변화 내용을 살펴보면, 1992년 10월에는 한강공원 전체가 망원, 양화, 여의도, 이촌, 반포, 잠원, 뚝섬, 잠실, 광나루 등 9개 지구로 구분됐었고, 2003년 1월 15일에는 잠실과 광나루를 합쳐 8개 지구로 개편됐으나, 2004년 3월 5일에 잠실, 광나루, 뚝섬, 잠원, 반포, 이촌, 여의도, 선유도, 양화, 난지, 망원, 강서와 같이 현재의 12개 지구로 개편되었다.
- 2007년부터 2030년까지는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사업을 진행하며 도시매력을 재창조하고 한강을 원래의 주민인 시민들에게 되돌려 주고자 하여 서울을 수변도시로 개발하기 위한 배경을 가지고 테마가 있는 한강공원 조성과 한강으로의 접근성 개선 및 서해연결 주운 기반의 조성과 한강의 생태복원, 워터프런트타운 조성을 주요 사업으로 진행하였다.

2) 구성적 특성

- 수영, 수상스키, 윈드썰핑, 요트, 서프보드, 수상오토바이 등의 수상형과 번지 점프, 하강시설, KART, 인공암벽, ATV, 서바이벌, MTB, 파크골프장, 클레이 사격 등의 육상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 자전거, 인라인스케이트, 패러글라이딩, 스키 등의 레저형과 테니스, 승마, 수영, 배구, 야구, 농구, 요트 등의 전문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 단체종목으로 축구, 농구, 족구, 배구, 야구 등의 조직형과 개개인의 인내심과 체력이 요구되는 걸기, 달리기, 마라톤, 자전거, 수영, 인라인스케이트 등의 개인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다. 유사사례 검토

- 해외사례로 싱가포르의 리버파크는 업무·문화·관광시설을 활용한 지역 랜드마크로 조성하고 스페인의 빌바오는 역사·문화환경을 활용한 경관 랜드마크로 조성하였다.
- 국내사례로 구미시의 낙동강체육공원은 자연·생태환경을 활용한 친수공간 조성하였으며 부산시의 온천천시민공원은 도심속 자연환경을 활용한 친수공간 조성하고 삼락강변체육공원 도심속 여가·체육·생태환경의 조화를 이룬 친수공간으로 조성하였다.
- 시사점으로는 수변을 편하게 걸을 수 있는 산책로와 자연 친화적인 공간을 조성함으로 문화 보행과 친화 거리 및 친환경 체육시설로 구성함으로 시민들에게는 쉼터를 제공하고 관광객에게는 좋은 볼거리를 제공토록 하고 계획단계부터

주민과 기업, 행정이 함께하는 거버넌스체계를 도입하여 미래 지향적인 실제적 공간활용을 검토하며 구체적으로는 활용가능한 체육시설의 도입과 배치, 안전과 관리 및 운영의 실행계획을 구상하였다는 것과 수경녹지축과 연결되는 생태거점 및 각종 문화·체육시설과 여가시설로 어루러지는 친환경 복합체육여가공간으로 구성하였다는 것이다.

라. 한강공원관련 빅데이터 분석

- 언론에 비취진 한강공원 뉴스기사를 공공뉴스 아카이브인 빅카인즈를 통해 빅데이터 기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장소 개체명중 전 기간에 걸쳐 ‘여의도’가 한강공원에서 가장 중심적인 위상과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관 중에서는 ‘서울시’의 가중치가 높게 나타났고, 연관 키워드로는 ‘코로나 19’, ‘공무원’등이 분석되었다.
- 소셜미디어를 통한 빅데이터 수집을 위해 ‘Textom ver5.0’과 ‘R’프로그램을 활용하였으며, 소셜미디어를 분석하기 위한 시간적 범위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4월 30일까지로 하였다. 그리고 검색키워드는 ‘한강공원 체육시설’, ‘한강’, ‘한강 체육시설’, ‘한강공원’으로 설정하였다. 검색대상은 네이버(블로그, 카페, 뉴스, 웹문서, 지식IN, 학술정보 전체), 다음(블로그, 카페, 뉴스, 웹문서), 구글(웹문서, 뉴스, 페이스북), 유튜브로 한정하였으며, 총 19.25메가바이트의 단어를 추출하였으며 전처리 과정을 통하여 14,627개의 단어로 정제되어 워드클라우드를 분석하였다.

마. 체육시설현황

- 한강공원 체육시설은 한강사업본부에서 중점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고 있으며 중앙조직은 4부 17과로 구성되고 각 한강공원별로 11곳의 안내센터를 구축하고 있다.
- 한강사업본부의 한강 관리구역은 서울시 행정구역 전체면적 605.21 km^2 의 6.6%에 해당하는 39.9 km^2 면적으로 강동구 강일동에서 강서구 개화동까지의 연장 41.5 km^2 가 해당되고 이 중 수역은 30.8 km^2 이며, 둔치는 9.1 km^2 (강북 3.0 km^2 , 강남 6.1 km^2)이다.
- 한강공원은 총 11개 공원으로 강북이 뚝섬, 이촌, 망원, 난지지구로 4개 지구이며 강남은 광나루, 잠실, 잠원, 반포, 여의도, 양화, 강서의 7개 지구로 관리되고 있다.
- 한강공원 시설물은 접근시설, 편의시설, 운동시설, 녹지대 등의 공원시설과 유도선장 등의 수상시설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접근시설은 2018년 전체

239개에서 2022년 전체 255개로 1.63% 증가하였고 나들목과 보도육교, 교량접속시설, 승강기 위주로 증가하였다.

- 11개 한강공원에는 축구장 12곳, 테니스장 5곳, 배구장 11곳, 농구장 28곳, 족구장 13곳, 수영장 4곳, 야구장 5곳, 게이트볼장 11곳, 인라인스케이트광장 4곳, 스케이트보드장 1곳, 배드민턴장 15곳, 파크골프장 1곳, 씨름장 2곳, 기타 12곳 포함 전체 124곳의 체육시설이 있다.
- 최근 5개년(2016년~2020년) 동안 11개 한강공원 내 체육시설을 이용한 시민은 연평균 843만여명이며 2019년 코로나 사태로 감소하였다가 규제 완화 시점부터 다시 증가하여 연평균 0.01%가 증가하였으며 서울시민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은 뚝섬공원으로 연평균 216만여명이 이용하고 있고, 광나루공원은 연평균 119만여명이 찾아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으며 난지공원은 가장 적은 인원인 연평균 21만여명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최근 1년간 월별 체육시설 이용자를 분석해 보면 3월에서 6월까지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한강공원을 연 2회 이상 이용하는 만 15세 이상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에 의한 응답자 자기기입식 면접조사로 한 ‘2021년 한강공원 이용만족도 조사’결과, 한강공원별 체육시설 구비정도, 관리상태, 대중교통 접근성, 도보이용 편리성, 시설물 안정성에 대한 공원별 만족도에 평균값을 기준으로 만족도에 대한 종합평가는 뚝섬공원이 평균 81.2점으로 가장 우수하며, 강서공원이 평균 66.7점으로 가장 열악하였으며 한강공원 전체평균값은 74.8점으로 양화공원(69.5점), 난지공원(68.8점), 강서공원(66.7점)은 평균보다도 낮았다.
- 근린공원 내 체육시설과 비교 분석한 결과, 근린공원 내 설치된 체육시설은 거주 주민들의 접근 편리성과 기본 운동을 수행할 수 있는 필수 공원시설물로 체육시설 유치 거리가 짧고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규격이 정해져 있는 체육시설의 설치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간단한 운동기구인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야외운동기구는 개인 운동과 훈련시설로 도심의 많은 근린공원에 조성되어 지자체별로 관리·운영되고 있으나 전문적인 형태의 야외운동기구의 수는 미미한 실정이다. 최근 건강에 관한 국민적 관심과 정책으로 생활체육이 중요시되고 있어 근린공원 내의 야외운동기구와 한강공원 내의 야외운동기구를 차별화 할 필요가 있다.
- 한강공원 체육시설 활성화와 관련된 내부환경(강점, 약점)과 외부환경(기회, 위협)을 분석하여 강점(Strength)을 이용하여 기회(Opportunity)를 살리는 전략과 위협(Threat)을 피해 강점(Strength)을 부각할 수 있는 전략, 약점(Weakness)을

보완하여 위협(Threat)을 최소화하는 전략, 약점(Weakness)을 보완하여 기회(Opportunity)를 찾는 전략을 도출하였다.

바. 체육시설 활성화 전략 및 방향설정

- 전문가 F.G.I 조사를 실시한 결과, 한강공원 내 체육시설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설관리 분야의 '사용요금의 적정성'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도출되었으며 다음으로 교통 접근성 개선, 한강공원별 프로그램 구성, 체육단체를 통한 프로그램 개발, 아동·청소년 바우처 사업과 연계도 중요 요인으로 평가되었다. 이외에 시설관리분야에서는 시설이용의 형평성, 시설의 전문화, 시설의 질적 개선, 인력 및 행정체계 관리 효율화, 시설운영에 대한 행정지원, 편의시설, 시설관리상태가 중요하다고 인식되었다. 프로그램 분야에서는 고려자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과 시설 및 기구별 건강·체력측정평가 시스템 도입, 웨어러블 장비를 통한 프로그램도입, 노인바우처 맞춤형 운동서비스 도입, 스포츠바우처 사업과 연계 등이 중요 요인으로 평가되었다. 체육시설의 올바른 이용과 운동방법을 위한 체육지도 분야에서는 체육지도자의 운동관리, 전문성, 리더십이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한강공원 내 체육시설 활성화를 위해 '한강공원 체육시설 활성화를 통한 건강의 시작, 활력 중심 한강'으로 미션을 설정하고 비전은 '건강한 체육복지시설 한강공원'으로 '자연과 건강, 치유와 행복', '참여와 실천, 체계적 운동', '지역연계 고도화'는 비전목표로 하여 '체육복지 강화', '한강공원 지구별 체육시설의 연계활용 강화', '체육활동 저변확대', '스포츠 시스템 정착', '효율적 관리·운영방안' 등을 전략방향으로 수립하였다.

사. 활성화 방안

- 권역별 활성화를 위해 상위계획의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한강변관리기본계획(2015)인 '자연성', '토지이용', '접근성', '도시경관'의 4대부문 12개 관리원칙에 따른 7개 수변활동권역을 중심으로 설정하였다. 친환경 생태·휴식권역인 '강서~난지권'은 생태환경 개선과 맑은 물 회복, 친환경 이용에 맞게 '친환경체육 활성화 권역'으로 설정하고, 수변 창조문화권역인 '합정~당산권'은 녹색교통 접근성 강화와 보행 접근성 개선, 주변과의 녹지연계가 강화되는 권역으로 '스포츠바우처, 체육지도자 활성화 권역'으로, 국제적 수변업무 활동권역인 '여의도~용산권'은 다양한 수변 활동 특화와 역사·문화자원의 복원과 연계되는 '스포츠클럽, IoT 체육시설 활성화 권역'으로, 국가적 문화·여가권역인 '반포~한남권'은 녹색교통 접근성 강화와 보행 접근성 개선, 주변과의 녹지연계가 강화되는 권역

으로 ‘스포츠바우처, 체육지도자 활성화 권역’으로, 수변조망 활동권역인 ‘압구정~성수권’은 ‘스포츠바우처, 체육지도자 활성화 권역’으로, 국제교류 및 스포츠 관광권역인 ‘잠실·청담~자양권’은 ‘스포츠클럽, IoT 체육시설 활성화 권역’으로, 한강 역사문화·생태권역인 ‘암사~광장권’은 ‘친환경체육 활성화 권역’으로 설정하였다.

- 앞으로 다가올 미래 초고령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해 신체적 약자인 고령층의 운동생활 습관화가 지속될 수 있도록 도보권 내로의 야외운동기구 재배치와 맞춤형 돌봄형 운동서비스 도입으로 한강공원 내 체육시설을 활성화한다.
- 한강공원의 체육시설과 야외운동기구를 활용하여 계절별, 지구별 국가가 지정한 공인인증기관과의 출장소를 설치하여 체력측정과 체력평가, 운동처방, 체력인증을 병행하는 장소로 활용한 빅데이터 구축으로 활성화한다.
- 사물인터넷(IoT)적용 체육시설 도입을 통해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친절한 안내, 작동 및 사용법 등에 대한 정보를 QR코드나 NFC 태그(근거리 무선통신)를 활용하여 활성화한다.
- 육상 및 수상 안전예보 시스템을 도입하여 건강환 생활체육장소 구축으로 활성화한다.
- 직장인 및 청소년 방과 후 수업(체육)등 지원을 위한 건강 생활체조교실,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 도입을 통해 활성화한다.

2. 관련규정 및 제도정비방안

가. 공원관리와 체육시설관리의 일원화

- 서울시는 한강공원 관리를 위해 한강사업본부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나 이는 도시공원의 기능과 수변공원의 기능을 전제로 체육시설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 직제는 편성되어 있지 않다. 한강공원의 체육시설은 규격 체육시설과 야외 체육시설, 수상 체육시설로 구분할 수 있는데 서울시는 규격 체육시설 관리에 대하여 체육시설관리사업소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한강공원의 규격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통합관리방안을 구상해 볼 수 있다. 또한 야외운동기구는 한강공원 내 체육시설로 구분되지만 실질적으로 대다수의 이용자는 인근 지역주민들이 주로 사용함으로 관할 지자체 체육시설 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위탁 관리하는 협업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나. 일상생활 밀착형 시설 공급으로 체육시설 이용자 사각지대 해소

- 한강공원 이용 만족도 조사 결과보고서(2021)에 따르면 60대 이상의 고령자의 경우 주로 참여하는 체육활동 이동수단은 도보이용이 평균 94.75%로 나타났으며 이동에 소요되는 시간은 15분 이내라고 응답한 비율이 60.2%이다. 대중교통 이용 편리성이 전체응답자의 27.5%, 도보이용접근이 30.1%가 만족하고 있어 더 많은 시민이 활용하기 위해서는 접근체계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도보 및 전기순환버스 등을 활용하여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더라도 10분 내 한강공원이 접근가능하도록 이용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한강공원 체육시설 대중교통 이용 접근체계 개선계획’수립이 필요하다.

다. 초고령화시대를 준비하는 적극적 대응

- 통계청(2020)³⁶⁾은 2025년에 우리나라가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2040년에는 전체 내국인의 34%인 1천 660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였다. 서울시의 2022년 1월 인구는 약 9백5십만명으로 60세 이상 인구는 약 2백3십3만명으로 전체인구의 24.5%를 차지한다. 이들의 47.6%가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여 52.6%가 주2회 이상, 94.75%가 도보로 운동에 참여하고 있다³⁷⁾. 따라서 노년층 시설 이용실태 및 접근수단 개선이 필요하며 노령층의 운동생활 습관화가 지속될 수 있도록 도보권내 체육시설 재배치도 필요하다.

라. 스포츠바우처사업을 통한 체육지도자의 체력측정 시스템 도입

- 바우처는 정부에서 공공서비스 수급자의 실질적 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하고 동시에 공공서비스 공급의 시장원리 확대를 통해 서비스의 질적개선 및 성과 향상을 위해 도입·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³⁸⁾.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2009년부터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가정³⁹⁾의 자녀에게 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스포츠강좌이용권 가맹시설을 이용하여 2022년 현재 월 최대 8만 5천원의 스포츠 수강료를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중에 있다. 이러한 스포츠바우처 사업

36) 통계청, 내·외국인 인구전망, 2020.10.15

37)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생활체육조사, 2021

38) 김인, 사회서비스 바우처 프로그램의 효과성 및 고객만족도 영향요인, 지방정부연구 13(4), pp. 127~152, 2009

39)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으로 스포츠바우처 선정기준에 해당할 것.

이 체육활동에 대한 참여기회 제공보다는 실질적인 체육시설 이용에 따른 신체 발달과 그에 따른 올바른 정서함양이라는 양질의 서비스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한강공원의 체육시설을 활용한 운동 및 그에따른 전문 체력측정 시스템 도입을 제언한다. 나아가 아동·청소년의 체력발달 빅데이터를 구축하여 운동기구의 개발, 체육시설의 질적개선 연구 등 스포츠바우처사업을 고도화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강공원 인근 생활권역의 체육관과 연계한 체육지도자의 체력측정 시스템으로 비만예방과 올바른 신체발달에 이바지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마. 체육시설 활용정보, 사물인터넷(IoT)연계 강화를 통한 이용접근성 향상

- 한강공원 내 야외운동기구는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이용가능하다. 그러나 운동 자세, 운동방법, 운동효과에 대해 전문적으로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어 잘못 이용하기 쉽다. 건강을 위해 접근했지만 잘못된 오·남용으로 인해 신체에 무리가 갈 수도 있으며 안전사고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야외운동기구의 올바른 사용법과 운동효과등을 원격으로 지원하기 위한 체육활동 지원 홈페이지 또는 운동정보에 대한 Data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운동을 할 수 있는 시스템적 접근이 필요하다. 사물인터넷(IoT)은 각종 사물에 센서와 유·무선통신기능을 내장하여 인터넷에 연결하는 기술로 야외운동기구를 활용하는 이용자와 핸드폰 또는 웨어러블 장비와 무선으로 통신하며 운동정보에 대한 안내와 운동전과 운동후의 여러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이를통해 고령자 위주의 운동기구가 아닌 젊은 세대도 게임을 하듯 야외운동기구로 운동을 즐기며 건강을 관리할 수 있다.

바. 사물인터넷(IoT) 야외운동기구 보급위한 시설확충방안 마련

- 사물인터넷(IoT) 야외운동기구는 사용자를 자동인식하며 운동량을 측정하고 화면을 통해 출력이 가능하며 사용자의 스마트폰과의 통신을 통해 본인의 정보를 저장하고 열람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나아가 미세먼지신호등⁴⁰⁾을 부착할 수도 있으며 안전사고 등 위급상황을 관리자에게 알리는 버튼, 날씨정보 등이 가능하다. 또한, 설치년도와 관리주체, 이용빈도, 파손에 대한 자가진단 등의 정보 등도 확인가능하다. 운영·관리면에서도 효율적이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성 증대를 위해서도 스마트 야외운동기구의 시설확충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사. 야간체육활동 및 체육시설 이용 프로그램 도입

- 서울시민의 일과 여가가 있는 활동이 균형을 이루는 삶을 영위하기 위한 체육

40) 파랑: 좋음, 초록: 보통, 노랑: 나쁨, 빨강: 매우나쁨

-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제①항에 구체적인 한강공원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내용을 삽입함으로써 규격 체육시설과 서울특별시 야외운동기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의 목적달성을 이루게 할 수 있다.

현재	변경(안)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8.1.>	한강공원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계획(신설)

- 서울특별시 한강 수상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8조(한강 수상레저시설의 조성)의 구체화를 통해 뚝섬공원의 서울윈드썰빙장에 대한 운영 및 관리에 대하여 명기함으로써 시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다.

현재	변경(안)
제8조(한강 수상레저시설의 조성) 시장은 한강 수상레저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수상레저시설 및 관련 편의시설을 조성할 수 있다.	제8조(한강 수상레저시설의 조성 및 관리) 시장은 한강 수상레저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수상레저시설 및 관련 편의시설을 조성하고 시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수상레저시설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야외운동기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설치기준 등)에 '야외운동기구 심의위원회'를 두어 안전기준에 적합함은 물론, 운동효과와 운동방법, 사물인터넷(IoT) 적용제품 설치 등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추가한다. 이는 야외운동기구에 대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안전확인대상제품의 신고 등)제3항에 의한 안전확인시험을 통과한 제품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 야외운동기구의 설치와 관리에 있어서는 법제도가 미비되어 있기 때문이다.
- 서울특별시 야외운동기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안내문 게시 등)제1항에 Q.R코드 안내문을 통해 동영상 운동방법, 운동효과, 사용기록 등이 활용될 수 있도록 추가함으로써 이용자의 안전 및 젊은층도 쉽게 야외운동기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변경(안)
제6조(설치기준 등)	④ 야외운동기구의 신규설치 및 변경시에는 '야외운동기구 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안내문 게시 등)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에 별표의 시설 안내문을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6>	제7조(안내문 게시 등)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에 별표의 시설 안내문과 이용방법등을 확인할 수 있는 Q.R코드를 부착하여야 한다

- 서울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 제5조(시민 신체활동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등)제2항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스포츠바우처사업, 체육지도자 연계 체력검정을 통한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 등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한다.
- 서울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 제6조(연도별 신체활동 활성화 실행계획 수립 등)제2항 실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스포츠바우처사업, 체육지도자 연계 체력검정을 통한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 사물인터넷(IoT)적용 야외운동기구의 보급, 야외운동기구를 활용한 운동방법에 대한 인터넷 안내, 한강 수상스포츠 시민이용 활성화 계획 등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제시한다.
- 서울시는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강공원 체육시설의 활성화 목적으로 관련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

3. 시사점 및 향후과제

가. 한강공원 내 체육시설 현황

- 한강공원은 총 11개 공원으로 강북이 뚝섬, 이촌, 망원, 난지지구로 4개 지구이며 강남은 광나루, 잠실, 잠원, 반포, 여의도, 양화, 강서의 7개 지구로 관리되고 있으며 축구장 12곳, 테니스장 5곳, 배구장 11곳, 농구장 28곳, 족구장 13곳, 수영장 4곳, 야구장 5곳, 게이트볼장 11곳, 인라인스케이트광장 4곳, 스케이트보드장 1곳, 배드민턴장 15곳, 파크골프장 1곳, 씨름장 2곳, 기타 12곳 포함 전체 124곳의 체육시설이 있다.
- 이들 체육시설들이 모습을 갖춘 2004년까지의 체육시설 조성에는 1988년 서울올림픽 개최에 따라 1982년부터 1986년까지 4년여에 이루어진 '한강종합개발사업'이 있었다. 한강의 수질을 개선하고, 한강의 수로 폭을 넓혀 생성된 고수부지에 시민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주된 사업이었다. 아울러 수변 지역과 물

리적으로 단절을 시킨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도 이 당시 조성되었다. 한강공원 내 체육시설은 그 자체가 시민의 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준비된 공원시설이 아니라는 것이다. 현재 한강공원 체육시설은 연간 수백만이 이용하는 시설이 되었다. 이제는 국가나 서울시 중심에서의 체육복지 차원이 아닌 개인중심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체육활동은 서울시민 누구나가 행복하게 누려야 하는 보편적 권리이기 때문이다. 한강공원 내 체육시설이 도시공원의 체육시설이 아닌 전문체육시설로서 선진 생활체육 환경조성을 위한 시설, 프로그램, 생활체육 지도자의 육성이 되는 공간이 되어야 함으로 심도있는 체육시설 재배치 등 논의가 필요하다.

- 또한 65세 이상의 고령인구 증가와 청년 일자리 감소, 소득불균형으로 인한 세대 간의 갈등 해소를 위한 생활권 중심의 체육활동 장소로 특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나. 근린공원 생활체육시설과의 비교

- 서울시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와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시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사고 예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야외운동기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다. 한강사업본부는 서울시 조례에 준하여 야외운동기구의 운영·관리에 준용하고 있다.
- 아울러, 25개 자치구 중 이와 관련된 조례를 제정한 자치구는 강동구, 광진구, 금천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마포구, 서초구, 성동구, 성북구, 양천구, 영등포구, 은평구 등 52%에 해당하는 13곳에 불과하다.
- 내용을 살펴보면 설치장소는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공원, 쉼터 등 공공장소로 정하고 있는데 접근성과 편의성에 대한 객관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에 고려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운동이 가능한가와 체계적인 지도가 가능한가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무분별한 운동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으므로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전문가와의 협의와 설치 후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한 곳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 설치기준은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의 안전확인 대상 제품을 의미하고 있다. 야외운동기구는 토지에 부착하여 설치되는 건물 이외의 구조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2조41)에서는 건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

41) 제52조(건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
 사업주는 건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가를 하여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성을 미리 제거하여야 한다.

의 안전성 평가에 대하여 명확하게 그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야외운동기구의 안전문제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 안전점검과 관련해서도 야외운동기구 설치장소가 어딘가에 따라 소관부서가 달라진다. 한강공원과 지자체가 관리하는 장소 모두 관련 법에서 야외운동기구를 따로 체육시설로 하여 관리할 수 없는 법의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이다. 전문적인 시설을 전문적으로 관리하지 못하면 노후되고 낙후되어 방치될 수 있으므로 관련 조례의 개정으로 인해 명확한 관리 주체를 구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다. 한강공원 내 체육시설 활성화방안

- 본 연구는 한강공원 내 체육시설이 여타 공공 전문·생활 체육시설과는 달리 공원 내 시설로 구분되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운영됨에 따라 체육시설로서의 전문적인 관리 감독 범위 안에 있지 않아 서울시 관내 체육시설과 공원 내 체육시설간 관리 운영 주체가 상이하여 서울시의 효율적인 예산분배와 시민의 체육시설 이용 만족도 향상,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체육시설 운영 기본방향 등을 위한 정책의 어려움이 있어 이를 활성화 하기 위한 연구로서 문헌연구, 현장조사, 전문가 자문회의, 전문가 F.G.I조사 등을 실시해 통합적이고 종합적 차원에서 한강공원 내 체육시설 활성화 방안과 정책제언을 하였다. 그러나 서울의 중심을 가로지르는 11개 한강공원 지구 내 체육시설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매우 많은 관련법규와 계획도 있어 방대한 작업이 요구되었다. 특히 주어진 시간과 예산의 제약속에서 연구의 내용을 활성화 방안 연구에 적합하게 전체적인 현황조사와 관련계획 및 자료분석에 많은 지면을 할애하였으며 공원 내 체육시설을 어떠한 시각으로 접근해야 할지, 운영 및 관리를 어떻게 효율적이며 효과적으로 할지에 대한 방향성을 연구의 이론적 배경과 국내·외 사례와의 비교, 검토하고 SWOT분석을 통해 한강공원 내 체육시설 활성화를 위한 미션과 비전, 전략방향 등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서울시 7대 한강권역을 5대 생활권역으로 아우르며 수변여가체육공간으로 구상하고 지역과 유기적으로 연계되며 생활체육지도자들이 함께 노력할 수 있는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였다는것에 의의가 있으며, 향후에 다음과 후속 연구가 요구된다.
- 첫째, 한강공원의 경우 관련된 법제가 다양함으로 법제에 맞는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다. 한강 생태계를 활용한 체육시설 활성화 연구, 한강지구별 주변지역

-
1.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인근에서 굴착·항타작업 등으로 침하·균열 등이 발생하여 붕괴의 위험이 예상될 경우
 2.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지진, 동해(동해), 부동침하(불동침하) 등으로 균열·비틀림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3. 구조물, 건축물, 그 밖의 시설물이 그 자체의 무게·적설·풍압 또는 그 밖에 부가되는 하중 등으로 붕괴 등의 위험이 있을 경우
 4. 화재 등으로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내력(내력)이 심하게 저하되었을 경우
 5. 오랜 기간 사용하지 아니하던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재사용하게 되어 안전성을 검토하여야 하는 경우
 6. 그 밖의 잠재위험이 예상될 경우

체육시설과의 유기적 결합을 위한 연구, 초고령화 사회진입에 대비한 체육시설의 다양성 연구 등 전문분야별 심층연구가 필요하다.

- 둘째, 한강공원 내 체육시설은 규격시설과 야외운동기구로 구분하여 총괄 운영·관리 할 수 있는 기본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 11개 한강공원은 지구별 특성에 따라 계획되어 체육시설이 설치·관리되고 있다. 그러나 계획 및 관리측면에서는 전체적인 구상의 부재속에서 지구별로 관리되고 있어 지구별 지역특성 및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시설이 분류되고 각 지구별 특성이 유기적으로 결합되는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한강공원 내 체육 시설물에 대한 다양한 계층의 유인화를 위해 스포츠바우처사업과 연계될 필요가 있으며 IT 강국에 걸맞는 운동기구의 사물인터넷(IoT) 적용으로 관련 산업 육성에 이바지하며 나아가 수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도 병행되어야 한다.
- 셋째, 체육시설 핵심공원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한강공원 내 체육시설의 운영·관리에 대한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실행을 위한 우선 공원지구를 정할 수 있다. 체육시설 핵심공원은 체육활동을 활성화 시킬 뿐 아니라 인근지역의 생활체육환경에 대한 개선도 함께 이루어져 핵심공원 선정에 대한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특히 접근성 개선을 위한 대중교통이용과 도보이용에 대한 물리적 환경개선 사업이 진행 될 경우,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총합적인 구상속에서 실현가능한 연구가 이루어 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서울시의회의 역할

- 서울시의회는 서울시민을 대표해서 시민의 권리를 위해 시민 생활에 관계되는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최고의 의결기관으로 체육활동에 내재되어 있는 가치 철학 등을 반영하여 생활체육 뿐만 아니라 전문체육 분야에 이르기까지 체육복지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틀을 확립할 책임이 있다.
- 이러한 한강공원 내 체육시설 활성화를 위해서는 거버넌스체계 구축과 체육시설 안전관리 등을 위한 설치 및 운영관리를 위한 체육시설 및 야외운동기구 설치 심의위원회의 구성이 필요하다.
- 그리고 서울시의회는 야외운동기구 안전관리조례에 체육시설과 야외운동기구가 토지정착물로 설치되는 경우 건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대한 안전성 평가에 준하는 조례제정을 수행할 필요가 있으며 체육시설에 대한 선진화 방안으로 정보화 시설구축, 개인별 맞춤 프로그램 지원, 관련 산업 육성방안 등도 심도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 참고 문헌 〉

■ 연구논문

- 김용동, 공공체육시설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방안, 대전발전연구원, p12, 2010.
- 김사업, 스포츠 시설관리운영론, 21세기 교육사, p22, 2004.
- 김정숙, 빅데이터 활용과 관련기술 고찰, 한국콘텐츠학회지 Vol.10, No.1, pp.34-40, 2012.
- 성문정, 레저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연구, 체육과학연구원, p35, 2006.
- 성문정외, 수상레저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연구,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과학연구원, p.3 2005.
- 성문정외, 레저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연구, 국민체육진흥공단, pp94~95, 2006.
- 이병희, 도시공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평가기준 마련연구:근린공원을 대상으로, 박사학위 논문, p.1, 2021.
- 이은영외, 워드 클라우드 기법을 이용한 최근 소비자학 연구 트렌드 분석, vol.37, no.1, pp. 1-7, 2019.
- 이진현, 전문계 남자 고등학생의 여가를 이용한 스포츠활동과 사회성 형성의 관계,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p.7-8, 2008.
- 이형묵, 한강스포츠의 인지적, 정의적, 실천적 정체성 탐색, 한국체육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23-30, 2011.
- 임정미, 수상레저스포츠 참가자의 여가참여동기와 여가몰입, 여가만족, 심리적 웰빙의 관계,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p.16, 2014.
- 전채남외, 빅데이터 분석의 기술마케팅 활용에 관한 연구: 잠재 수요기업 발굴을 중심으로, 마케팅논집 Vol.21, No.2, pp.181-203, 2013.
- 정근하, 텍스트마이닝과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한 미래예측 방법 연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보고서, pp.13-14, 2010.
- 조운승, 민선지방자치시대 한강공원의 장소적 담론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p,2, 2021.
- 조운승외, 언론매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민선자치시대의 한강공원 정책과 사회적 담론 변화 연구, 한국지적정보학회지 제23권 제1호, pp173-187, 2021.
- 홍기혁, “민간체육시설의 안전에 관한 법·정책적 규제 문제와 현실 탐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7, 2021.

Callon, M. et al, From translations to problematic networks: An introduction to co-word analysis, Social science information Vol.22, No.2, pp.191-235, 1983.

■ 보고서

대한민국 정부, 제5차국토종합계획, 2019.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생활체육진흥 종합계획(안), 2013.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생활체육진흥 기본계획, 2018.
문화체육관광부, 2030스포츠 비전, 2018.
서울특별시,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 2014.
서울특별시, 2021 한강공원 백서, 2022.
관계부처·서울시 합동, 한강 자연성회복 및 관광자원화 추진방안, 2015.
서울특별시,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 2015.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한강공원 보전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결과보고서, 2018.
한강사업본부, 2021년 한강공원 이용 만족도 조사 결과보고서, 2021.
한강사업본부, 주요업무보고, 2022.
한강사업본부, 주요업무보고, 2021.
한강사업본부, 주요업무보고, 2020.
한강사업본부, 주요업무보고, 2019.
한강사업본부, 주요업무보고, 2018.
한강사업본부, 주요업무계획, 2022.
통계청, 2020 고령자 통계보도자료, 2020.

■ 기타 참고 문헌

< SITE >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검색일 : 2022.07.15.)
빅카인즈, <http://www.bigkinds.or.kr>(검색일: 2021.09.01.)
한강공원 이용객 현황, <https://hangang.seoul.go.kr>, (검색일: 2022.7.30.)
스포츠호주, <https://www.sportaus.gov.au/p41> (검색일: 2022. 9. 4.)
한강공원미세먼지, <https://news.seoul.go.kr/env/archives/501714> (검색일: 2022.08.12.)

국가정보법령센터 <https://www.law.go.kr/>서울시 야외운동기구 조례(검색일: 2022.09.02.)

통계청, kosis.kr, (검색일: 2021.08.10.)

KDI경제정보센터, <https://eiec.kdi.re.kr/>, (검색일: 2021.07.03.)

서울시 홈페이지 <https://news.seoul.go.kr/citybuild/archives/54763>

한강사업본부 <https://hangang.seoul.go.kr/>

서울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https://stadium.seoul.go.kr/>

〈신문기사〉

SBSBiz, 2022.07.18., '고령화 타격'...나이들어 경제활동 안하는 사람 250만명 육박

<https://biz.sbs.co.kr/article/20000072003?division=NAVER>(검색일: 2022.08.24.)

(판권지)

한강공원 내 체육시설 현황과 활성화 방안 연구

발행처 :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

발행인 :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장 김상인

주관부서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수석전문위원 주우철, 입법조사관 박지혜)

홈페이지 : <http://www.smc.seoul.kr>

연락처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전화) 02-2180-8117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과제제안 :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연구기관 : 한국산업경제연구소

책임연구 : 곽원규

연락처 : 전화) 02-888-8001

발간등록번호 : 00-0000000-00000-00

※ 본 학술연구용역보고서의 지식재산권은 서울특별시의회와 용역수행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내용은 서울특별시의회의 공식적인 견해와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식재산권은 서울특별시의회와 용역수행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되, 서울특별시의회가 해당 학술연구용역 보고서를 대국민 공개한 이후 용역수행자가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할 수 있음)